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열람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2 200 면적 산정표

| 구분 | 순번 |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 | 석회석부두 | 2,573.00 | 0.00 | 비과세대상 | 1. 평탄화 목적으로 토지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으로서 지번이 부여된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89).<br>2.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포함되는 시설물은 수조, 저유소,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제한되는 것임(본건 부과처분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석회석부두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 갑가제7호증 | 본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항만청으로부터 항만시설로 임차한 시설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 제2항)의 적용 시기가 2007.1.1이므로 동시설물은 2007년 귀속분부터 과세 제외 대상임.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을제3호증1: 항만시설 인수인계서<br>을제41호증: 항만시설 임대내역 | 선박에서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항만시설로서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2,573.00 |
| | 2 | 물양장 | 6,558.00 | 0.00 | 비과세대상 | 1. 회사가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58).<br>2. 물양장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 상동 | 상동 | 상동 | 하역한 자재 등을 적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야적장으로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6,558.00 |
| | 3 | 호 안 | 6,460.00 | 0.00 | 비과세대상 | 1. 인위적 가공없이 토지위에 돌을 얹어 놓은 것으로서 시설물아님.<br>2.호안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 상동 | 상동 | 상동 | 사업장 시설을 해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시설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6,460.00 |
| | 4 | 케이블터널 | 38,697.36 | 7,346.57 | 면적산출 오류 | 1.원고가 제출한 자산현황집계표상 숫자는 케이블 면적이 아니라 길이임.<br>2. 도면을 기초로 산출한 케이블터널 면적은 기제출한 케이블터널 현황대로 7,346.57임 | 케이블터널현황(갑가제14호증)<br>공문(갑가제25호증) |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고 당초 56,981.5로 계산되었다가 착오 면적(17,684.14)을 제외하고 증액경정(2011.4월)시38,697.36으로 정정과세 하였고, 산출도면과 현황사진 등을 통하여 구제적으로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 확인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음. | 을제25호증1:면적산출내역 및 집계표<br>을제25호증2내지4: 산출도면<br>을제25호증5내지220: 현황사진<br>을제29호증: 케이블터널도면<br>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면적 누락분<br>참고자료10: 복합배수케이블도면 | 을 제2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면적을 인정함. | 38,697.36 |
| | 5 | 케이블보호철판 | 1.50 | 0.00 | 비과세대상 | 1.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을 임시로 둘러둔 것임(정착구조물 아님)<br>2. 정착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임. | | 케이블보호를 위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로 과세대상에 이견이 없는 시설로 원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을제25호증14: 현황사진<br>참고자료1: 대법원2000두1744<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정착 구조물로 보이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상 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6 | EDB 맨홀 | 2.56 | 0.00 | 기과세 | 1.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br>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 갑가 제55호증 |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캐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캐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 담당자는 캐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br>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br>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br>*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 을제25호증35,36<br>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입증사진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7 | 케이블 트레이 | 110.00 | 0.00 | 면적중복 |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 제3호증의 3 제17면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산출 되어야 함. |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br>을제25호증37 | 컨베이어벨트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연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8 | EDB 맨홀 | 26.94 | 0.00 | 기과세 | 1. 기력 1~6호기 캐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br>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 갑가 제55호증 |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케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케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담당자는 케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br>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br>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br>*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 을제25호증101내지 103<br>을제25호증128<br>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사진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9 | 케이블시설 | 0.70 | 0.00 | 면적중복 | 1. 케이블 터널면적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과세<br>2. 케이블터널의 부속시설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 갑가제3호증 1내지3 |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기에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산출되어야 함. | 을제25호증104<br>을제45호증: 을제25호증 104위치 입증사진 | 별도의 시설물이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0 |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 | 1,487.62 | 0.00 | 면적중복 | 1.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br>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 따라, 구조적인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시설물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 갑가제3호증의 3 제17면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25호증37<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컨베이어벨트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연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1 | 케이블 터널 345kV | 0.00 | 898.36 | 면적산출오류 | 피고가 345kV케이블 터널을 13078.36㎡으로 과세하였으나, 898.36㎡임 | | 피고가 면적 실측을 통하여 재산정한 결과임. | 을제25호증의 1내지 221<br>*2015.11.17 석명명령 제출 자료에 따른 당초 13,078.36에서 0로 면적정정<br>(순번목록 4 케이블터널내 면적중복) | | 0 |
| | 12 | 취수장케이블 트레이 | 858.00 | 0.00 | 면적중복 |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br>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제3호증3 |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을제25호증15<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취수장과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연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3 | 취수장케이블 트레이 | 433.20 | 0.00 | 면적중복 |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br>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제3호증1 |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을제25호증208,209<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상동 | 0.00 |
| | 14 | CWP 케이블 트레이 | 30.00 | 0.00 | 면적중복 | 해당시설은 CWP 내부에 위치하여 CWP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제3호증3, 갑가제15호증 |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을제25호증84<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CWP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로 연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5 | 옹벽 1,2,3 등 | 19,173.62 | 0.00 | 비과세대상 | 사업장경계, 비탈 경계, 도로경계턱으로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부합물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 | | 정착구조물의 사전적의미는 '엮어서 만든 물건'으로 지방세실무해설에서도 담장,옹벽 등을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음.<br>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 이며 또한, 원고 자산관리대장에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임. | 을제26호증80내지88,을제26호증89내지92,을제26호증94내지97,을제26호증101내지105,을제116,117, 을제26호증116내지119, 을제26호증27내지129<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3,698.07에서 19,173.62로 면적 정정 | 사업장 시설이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담, 경계, 제방, 방파제 등의 시설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19,173.62 |
| | 16 | 옹벽24 | 1,040.00 | 0.00 | 비과세대상 | 사업장의 경계밖이며, 국가소유 구거의 옹벽임(영보리 741) | 갑가 제57호증,<br>갑가 제58호증 | 제방호안으로 공작물에 해당되어 안분계산대상임. 또한,을제47호증 1,2의 현황사진과 같이 해당구거는 원고가 수문시설까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에 대해서만 산출함. (구거는 사업장면적에 미포함) 또한 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어야 함. | 을제26호증106<br>을제47호증1,2: 수문시설현황사진<br>참고자료6: 지방세해설자료 |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대 한 민 국 법 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근거 규정 원고 주장의 허분 위법 사유 기재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7 | 옹벽25-27 | 3,194.12 | 0.00 | 비과세대상 | 버탄방지펜스의 기초로서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별도 시설물 아님 | | 동 시설은 발전연료인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과 석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 을제1호증4 9,10면: 원고법인장부<br>을제26호증107,108 |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의 외부 유출과 저탄장으로의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담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 3,194.12 |
| | 18 | 옹벽28-30 | 7,233.40 | 0.00 | 비과세대상 | 사업장 울타리 밖이며, 토지에 돌을 올려 덮어놓은 것임 | | 해안침식으로부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로 비탈면에 시설한 공작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 을제26호증109내지111<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자료 |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19 | 옹벽 31,32 | 13,185.00 | 0.00 | 비과세대상 | 충청남도가 소유 및 관리중인 제방(고정리 382, 송학리 996) | 갑가 제59호증, 갑가 제60호증 | 항만시설의 호안과 같은 시설로 공작물이며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자산관리대장상에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을제1호증4 24면: 회처리제방이용내역<br>을제26호증112,113 | 이 목록 순번 3번 기재 호안과 같은 용도의 시설물로, 원고가 충청남도로부터 이용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을 제1호증의2),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함. | 13,185.00 |
| | 20 | 옹벽34-1,34-2,54~56 | 8,290.65 | 0.00 | 비과세대상 |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br>※ 침전조 : 탄과 섞인 빗물이 발전소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탄을 침전시킴 | | 공작물인 저수조 호안으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임. 또한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구조물을 안분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임. | 을제26호증114,을제26호증130 | 저탄장 침전조를 만들기 위해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8,290.65 |
| | 21 | 옹벽57,58 | 1,581.20 | 0.00 | 비과세대상 |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br>2. 우수 방류구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 | 석탄 등이 우수로 인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 을제26호증131<br>참고자료: 대법원2000두1744 | 상동 | 1,581.20 |
| | 22 | 옹벽59~62 | 3,152.40 | 0.00 | 비과세대상 |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br>2. 회처리장에 쓰이는 물이 지나는 통로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 | 설계도면상에 return pond로 표기되어 있고, 회처리장은 원고사업장의 기간시설로 동 시설가동을 위해서 쓰이는 용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되는 정착구조물 임. | 을제26호증132<br>을제26호증133 | 상동 | 3,152.40 |
| | 23 | 옹벽63 | 27,280.00 | 0.00 | 비과세대상 | 국가소유 구거(영보리 741, 산36-2) | 갑가 제57,58호증 | 북부회처리장의 침식과 구거의 유속으로부터 회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벽을 축조한 제방형 호안인 공작물임.<br>※구거면적 산출한 것이 아님. | 을제26호증134<br>을제47호증: 원고회사수문시설<br>을제47호증2: 수문줄입구사진 |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4 | 옹벽11 | 304.92 | 0.00 | 비과세대상 | 복합후문앞 배수로로서 배수로는 전체 기과세됨 | 갑가제3호증의3 1면, 갑가제3호증의2 1면 갑가제3호증의3 5면 | 폭 30.2m, 길이 42.35m의 시설물로 배수로로 기과세되지 않았음. 배수로 적용시, 1,278.97㎡에 달하나 배수로 면적으로 산출된 내역이 없는 상황임.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급배수시설로 적용하지 못하고 시설물양옆 옹벽시설에 대해서만 적용 | 을제26호증93 을제60호증14: 외곽배수로 계통설명서 | 배수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으로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이 면적에는 배수로 면적과는 별도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 | 304.92 |
| | 25 | 옹벽17 | 23.46 | 0.00 | 기과세 | 옹벽이 아닌 케이블터널 시설임 | | 케이블터널시설과는 별도인 복합수조옆 공작물시설임. | 을제26호증98 을제46호증: 옹벽시설 사진 보완자료 | 사업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사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옹벽에 해당하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케이블터널 시설과 별도로 시공한 시설물로 보임. | 23.46 |
| | 26 | 옹벽64~66 | 3,570.00 | 0.00 | 기과세 | 우수배수로로 기과세됨 | | 원고주장 배수로는 구내도로변의 우수배수로와 저탄장내의 우수배수로 일부이며, 외곽배수로의 경우 폭 1.8m와 4.4m 및 1.5m로 기 과세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 없이 기과세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것 임. | 을제26호증135,136 | 배수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으로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우수배수로 면적과는 별도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 | 3,570.00 |
| | 27 | 2부두Air라인 | 11.50 | 0.00 | 오류 | 피고가 2005년부터 과세한 건임 | | 당초 원고가 공기배관으로서 2006년부터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한 시설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적용일이 2007.1.1이므로 2007년 귀속분부터 제외대상임. | 을제32호증5© 참고자료15: 법령적용 지방세실무해설 |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11.50 |
| | 28 | 스팀관 | 150.00 | 150.00 | | 다툼없음. | | | 을제32호증67,68 | | 150.00 |
| | 29 | 스팀관 | 819.00 | 819.00 | | 다툼없음. | | | 을제32호증23,24 | | 819.00 |
| | 30 | 법면 | 57,140.00 | 0.00 | 비과세대상 | 1. 법면은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산비탈은 토지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 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면은 별도 시설물이 없는 단순 산비탈임 | 갑가제72호증 | 을제37호증5내지6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상에 옹벽,반원흄관,블록시설을 하고 있어 단순 산비탈이라는 원고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동 시설은 빗물등에 의한 토사의 유출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착 구조물로 원고사업장에 직접사용되는 시설임. | 을제37호증2내지4: 계산면적 을제37호증5,6: 시설물시설내역 을제39호증1내지4: 옹벽,반원흄관 콘크리트 블록시설 현황 사진 | 법면 지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흄관, 배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사업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 57,14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1 | CWP 옆 구조물 | 6,045.20 | 0.00 | 비과세대상 | 1.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음.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님<br>2.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니며, 피고가 주장하는 면적은 당초 과세처분시 피고 스스로가 과세근거로 삼았던 면적보다도 증가한 것으로서 피고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추가한 면적임. | 갑가제15호증, 갑가제3호증 1내지3, 갑가제26호증 |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사용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시설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CWP옆 콘크리트 구조물과 취수장옆 구조물 및 옹벽시설과 기계장치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임. (을 제26호증1~137로 입증 완료) | 을제26호증1~137<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자료<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94,073.97에서 6,045.2로 면적 정정 | 시설물 보존과 사용을 위하여 타설하여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므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서 연면적에 포함.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계장치와 별개의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을 제15호증의 순번 17-19, 을제26호증의1) | 6,045.20 |
| | 32 | POND(연못) | 21,575.25 | 0.00 | 비과세대상 | 1. 피고가 주장하는 폰드는 저탄장 침전로로서 바닥도 흙이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br>2.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POND는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 | 저탄장에서 비산하는 탄과 외부로 유출되는 탄 및 연탄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에 의한 이송 중 떨어지는 낙탄 등을 등 시설로 유도 침전시켜 처리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물을 가두기 위해 견고한 옹벽 등으로 축조한 일종의 수조형태의 옥외저장시설물임.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POND (연못)시설은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함.(사진자료 등을 통해 기입증 완료함)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br>을제26호증129내지133<br>을제34호증 | 바닥 자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제방을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닥 면적 자체는 제외되어야 함. | 0.00 |
| | 33 | 공업용수저수지 | 115,153.00 | 0.00 | 비과세대상 | 피고가 주장하는 저수지는 인위적 시설물이 아닌 단순 저수지이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오프리 720잡). 마을에서는 깊은골 저수지라 칭하고 있음. | |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순수(원수)공급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축조한 옥외저장시설물로 송수관을 연결하여 전력생산시설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한 일종의 수조형태를 갖추고 있는 정착구조물임. 동시설과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동시설은 당연히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br>을제74호증1내지3 | 상동 | 0.00 |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근거 기재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3 | 남부회처리장 | 1,360,366.00 | 0.00 | 비과세대상 |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br>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 | 유연탄 연소후 발생되는 탄재를 물과함께 섞어 이송관을 통하여 배출후 저장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슬러지 형태의 유해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탄재가 바다와 인근 농경지 및 마을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옹벽과 견고한 제방을 축조하여 시설한 인위적 정착구조물임. 또한 동시설은 원고가 발전소 설립 단계부터 회처리장 건설계획(을제75호증)을 수립하고 건설 준공한 원고의 사업장 중 기간시설이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기준은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인적설비인 종업원과 물적설비인 사업장 연면적으로 사업장 연면적은 법인소득발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건물을 포함한 모든 정착물을 의미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대법원의 판단임. 동시설과 형태 및 이용적 측면에서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br>을제75호증 | 상동 | 0.00 |
| | 34 | 북부회처리장 | 1,072,596.00 | 0.00 | 비과세대상 |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br>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 | 상동 | 상동 | 상동 | 0.00 |
| | 다툼없는 기타시설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35 | 케이블 터널 154kV | 336.14 | 336.14 | | 다툼없음 | | |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36 | 함만시설(1부두) MT DOCK | 7,242.00 | 7,242.00 | | 다툼없음 | | | | | 7,242.00 |
| | 37 | ACESS ROAD | 1,322.00 | 1,322.00 | | 다툼없음 | | | | | 1,322.00 |
| | 38 | CAT WALK-1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및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기타 시설 | 39 | CAT WALK-2 | 78.00 | 78.00 | | 다툼없음 | | | | | 78.00 |
| | 40 | CAT WALK-3 | 40.00 | 40.00 | | 다툼없음 | | | | | 40.00 |
| | 41 | CAT WALK-4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42 | MD-1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 | 43 | MD-2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 | 44 | MD-3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 | 45 | MD-4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 | 46 | 항만시설(2부두) MT DOCK | 7,574.00 | 7,574.00 | | 다툼없음 | | | | | 7,574.00 |
| | 47 | ACESS ROAD | 1,206.00 | 1,206.00 | | 다툼없음 | | | | | 1,206.00 |
| | 48 | CAT WALK-1 | 136.00 | 136.00 | | 다툼없음 | | | | | 136.00 |
| | 49 | CAT WALK-2 | 40.00 | 40.00 | | 다툼없음 | | | | | 40.00 |
| | 50 | CAT WALK-3 | 63.00 | 63.00 | | 다툼없음 | | | | | 63.00 |
| | 51 | CAT WALK-4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52 | MD-5 | 200.00 | 200.00 | | 다툼없음 | | | | | 200.00 |
| | 53 | MD-6 | 200.00 | 200.00 | | 다툼없음 | | | | | 200.00 |
| | 54 | MD-7 | 200.00 | 200.00 | | 다툼없음 | | | | | 200.00 |
| | 55 | 회이송관받침대 | 28,396.00 | 28,396.00 | | 다툼없음 | | | | | 28,396.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및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6 | 케이블터널 | 481.00 | 481.00 | | 다툼없음 | | |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57 | 케이블터널 | 214.00 | 214.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 | 58 | 케이블터널 | 1,089.00 | 1,089.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 | 59 | 케이블터널 | 1,797.00 | 1,797.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 | 60 | 케이블터널 | 1,130.00 | 1,130.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 | 61 | BC-1A/B | | | | 다툼없음 | | | 이 목록 순번 341번 기재 1~6호기 컨베이어 설비에 중복되어 면적 삭제 | | |
| | 62 | BC-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3 | BC-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4 | BC-4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5 | BC-4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6 | BC-4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7 | BC-8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8 | BC-9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9 | BC-22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0 | BC-23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1 | BC-1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2 | BC-61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3 | BC-62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4 | BC-63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5 | BC-64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76 | BC-66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7 | BC-11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8 | BC-51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9 | BC-5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0 | BC-5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1 | BC-40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2 | BC-36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3 | BC-37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4 | BC-3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5 | BC-3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6 | 구조물(북부남쪽제방) | 5,040.00 | | 불특정 |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이 안됨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1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회처리장을 유지하는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5,040.00 |
| | 87 | 구조물(북부동쪽제방) | 14,25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2 | 상동. 다만 면적은 피고 제출 증거에 따라 6,256㎡(= 8m × 782m) 인정함. | 6,256.00 |
| | 88 | 구조물(북부서쪽제방) | 8,635.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3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회처리장을 유지하는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8,635.00 |
| | 89 | 구조물(남부서쪽제방) | 4,99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4 | 상동 | 4,992.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90 | 구조물(남부동쪽제방) | 5,836.7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5 | 상동 | 5,836.71 |
| | 91 | 저탄장 | 138,252.80 | | 불특정 | 상동 | | 저탄장시설은 외국에서 수입한 유연탄을 부두에서 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을 통하여 이송 저장 후 기계장치를 이용 보일러에 탄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바닥에는 철재 빔 시설을 하여 탄 저장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방지하였고 주위에는 견고한 옹벽으로 탄의 외부 유출 방지시설과 함께 유연탄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산탄 방지시설을 하는 등 동 시설은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됨은 다툼의 여지가 없음.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29~231, 1481p<br>을제83호증 6<br>*2015.11.17 석명명령자료 제출시, 변경 면적 220,761㎡으로 제출했으나 면적착오이기에 당초면적으로 수정.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매립지 침하를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철재 파이프를 바닥 면에 매설하여 만든 저탄장시설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138,252.80 |
| | 92 | 남부회사장선착장 | 175.00 | | 불특정 | 상동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p | 시설물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175.00 |
| | 93 | 북부회사장교량 | 24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7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교량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240.00 |
| | 94 | 공업용수제방 | 1,650.00 | | 불특정 | 상동 | | 사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 설계계산서 11-13P<br>을제83호증 8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1,650.00 |
| | 다툼없는 내부도로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95 | 해안도로<br>(기력1,2호기) | 24,000.00 | | |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 | 각종 기계장비의 이동과 운행, 종업원의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 원고가 사업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고, 또한 지방세실무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을제64호증 1내지48<br>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포장도로는 차량 운행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24,00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경제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96 | 주도로 (기력1,2호기) | 8,5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8,560.00 |
| | 97 | 간선도로 (기력1,2호기) | 22,4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2,400.00 |
| | 98 | 보조간선도로 (기력1,2호기) | 2,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080.00 |
| | 99 | 주도로 (기력3,4호기) | 2,9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960.00 |
| | 100 | 간선도로 (기력3,4호기) | 3,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080.00 |
| | 101 | 보조간선도로 (기력3,4호기) | 5,4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5,480.00 |
| | 102 | 주도로 (기력5,6호기) | 2,9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960.00 |
| | 103 | 간선도로 (기력5,6호기) | 3,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080.00 |
| | 104 | 보조간선도로 (기력5,6호기) | 5,4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5,480.00 |
| | 105 | 내부도로 (복합 유수분리기 옆) | 104.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04.00 |
| | 106 | 내부도로 (복합 터빈건물 뒤) | 1,6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680.00 |
| | 107 | 내부도로 (복합 경유탱크 옆) | 3,878.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878.00 |
| | 108 | 내부도로 (복합 1호기) | 411.6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411.60 |
| | 109 |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앞) | 8,257.46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8,257.46 |
| | 110 |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뒤) | 421.84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421.84 |
| | 111 |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원프랜트입구) | 1,7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760.00 |
| | 112 | 내부도로 (복합원프랜트입구~취수장입구) | 2,8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880.00 |
| | 113 |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입구~배수관로) | 4,0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4,000.00 |
| | 114 | 내부도로 (복합배수관로~후문앞) | 1,44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440.00 |
| | 115 | 내부도로 (복합후문앞~후문경비실) | 2,32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320.00 |
| | 116 | 내부도로 (복합후문입구~유수분리기옆) | 4,64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4,640.00 |
| | 117 | 내부도로 (본관입구~후문입구) | 5,6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5,600.00 |
| | 118 | 내부도로 (본관~식당입구) | 3,12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12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19 | 내부도로<br>(구본관앞~우회도로) | 1,9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960.00 |
| | 120 | 내부도로<br>(테니스장앞~횡단도로) | 1,6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680.00 |
| | 121 | 내부도로<br>(종합창고뒤~횡단도로) | 1,92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920.00 |
| | 122 | 내부도로<br>(종합창고~간선도로) | 1,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080.00 |
| | 다툼없는 주차장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123 | 주차장<br>(기력발전소 교육원) | 500.00 | | |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 | 주차장시설은 원고가 각종 기계장비의 주차와 종업원의 주차 등 원고의 사업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되고, 또한 지방세실무 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을제65호증 1내지23<br>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포장된 주차장은 차량 주, 정차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500.00 |
| | 124 | 주차장<br>(기력발전소 구본관앞) | 1,2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200.00 |
| | 125 | 주차장<br>(기력발전소 구본관뒤) | 1,575.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575.00 |
| | 126 | 주차장<br>(기력발전소 종합창고앞) | 1,2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200.00 |
| | 127 | 주차장<br>(기력발전소 종합창고옆) | 87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870.00 |
| | 128 | 주차장<br>(기력발전소 식당앞) | 3,0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000.00 |
| | 129 | 주차장<br>(기력발전소 본관옆) | 1,0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000.00 |
| | 130 | 주차장<br>(기력발전소 본관앞) | 2,7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700.00 |
| | 131 | 주차장<br>(기력1호기 변압기옆) | 382.32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82.32 |
| | 132 | 주차장<br>(기력2호기옆) | 946.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946.00 |
| | 133 | 주차장<br>(기력3호기옆) | 1,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080.00 |
| | 134 | 주차장<br>(기력3호기변압기옆) | 156.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56.00 |
| | 135 | 주차장<br>(사일로앞) | 6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600.00 |
| | 136 | 주차장<br>(기력6호기옆) | 1,477.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477.00 |
| | 137 | 주차장<br>(복합발전소옆) | 875.96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875.96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38 | 주차장 (복합 전력기술앞) | 134.64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34.64 |
| | 139 | 주차장 (복합 경유저장탱크옆) | 355.6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55.60 |
| | 140 | 주차장 (복합발전소옆) | 256.8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56.80 |
| | 141 | 주차장 (복합발전소앞) | 1,896.69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896.69 |
| | | **다툼없는 가스관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142 | N2저장조관련 가스관 | 2.04 | 2.04 | | 다툼없음 | | | | | 2.04 |
| | 143 | 가 스 관 | 504.51 | 504.51 | | 다툼없음 | | | | | 504.51 |
| | | **다툼없는 복개시설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144 | 복개시설(취수장다리) | 1,293.18 | 1,293.18 | | 다툼없음 | | | | | 1,293.18 |
| | 145 | 스팀배관맨홀 | 16.93 | 0.00 | 기과세 | 피고가 관련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는 을 제25호증의 33에서는 분명히 "케이블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 외에 을 제42호증에서도 정확히 어떤 시설물을 추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 기력2호기 연돌뒷편 및 기력1,2호기 저장탱크옆에 위치하고 있고 케이블 보관시설(맨홀)로 과세사실없음.(중복아님) | 을제25증33: 현황사진<br>을제42호증: 을제25호증33 보완사진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46 | 우수맨홀 | 8.05 | 0.00 | 기과세 | 갑가 제3호증의1 5면, 갑가 제3호증의2 1면,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각 우수배수관로(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 갑가제3호증의1내지3 | 중복되지 않은 맨홀임. | 을제25호증79,80, 을제25호증129<br>을제34호증6내지9<br>을제44호증3,4: 을제25호증79 보완사진<br>을제58호증1내지4: 원고주장오류입증자료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제25호증의 5의 62, 63, 107번), 제외함. | 0.00 |
| | 147 | 우수맨홀 | 7.50 | 0.00 | 기과세 |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 갑가제3호증의3 | 6호기 플라이애쉬펌프시설로 기계장치임. 중복사항이 아님. | 을제31호증30 | 기과세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7.50 |
| | 148 | 우수배수로 | 13,655.65 | 0.00 | 기과세 | 우수배수로로 기과세한 사안이며,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떤 시설물이 추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갑가제56호증의3, 14, 17, 21, 22 | 우수배수로와 전혀 다른 엉뚱한 도면에 해당시설물을 표기후 중복주장. | 을제34호증1내지16<br>을제58호증1내지4: 갑가제56호증이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입증하는 현황사진. | 을 제34호증의 1 기재 목록 중 소화관로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면적으로 기과세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 13,655.65 |
| | | **다툼없는 급배수시설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149 |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 2,637.00 | 2,637.00 | | 다툼없음 | | | | | 2,637.00 |
| | 150 | 냉각수 배수관로 | 30.10 | 30.10 | | 다툼없음 | | | | | 30.10 |
| | 151 | STRUCTURE (배수관로 말단구조물) | 327.58 | 327.58 | | 다툼없음 | | | | | 327.58 |
| | 152 | 배수관로 | 3,351.92 | 3,351.92 | | 다툼없음 | | | | | 3,351.92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허본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급배수시설 | 153 |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 8,672.00 | 8,672.00 | | 다툼없음 | | | | | 8,672.00 |
| | 154 |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 301.45 | 301.45 | | 다툼없음 | | | | | 301.45 |
| | 155 | 냉각수배수관로 (집수정포함) | 8,254.53 | 8,254.53 | | 다툼없음 | | | | | 8,254.53 |
| | 156 | STUCTURE(배수관로말단구조물) | 495.32 | 495.32 | | 다툼없음 | | | | | 495.32 |
| | 157 | 배수암거 | 2,869.32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4호증 11내지12 | 이 목록 순번 148번 기재 우수배수로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58 | 배수로(저탄장 앞,뒤) | 3,236.8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4호증 13내지14<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2,643.23에서 3,236.8로 면적 정정<br>(을제34호증 13: 1,694㎡,<br>을제34호증 14: 1,542.8㎡) | 이 목록 순번 148번 기재 우수배수로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59 | 외곽배수로 | 47,72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br>을제83호증 9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47,720.00 |
| | 160 | BOXCUIYERT | 1,68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br>을제83호증 10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680.00 |
| | 161 | 배수로 | 1,948.1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26호증 93 | 옹벽11에 의해 형성된 배수로임. 다만, 피고가 이 목록 순번 24번(옹벽 11)에서 옹벽11 면적 304.92㎡를 포함한 배수로 전체 면적이 1,278.97㎡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차이 면적인 974.05㎡를 초과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한도에서 면적 인정함. | 974.05 |
| | 162 | HUME PIPE | 118.9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br>을제83호증 11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18.92 |
| | 163 | 흡관 | 2,52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423p<br>을제83호증 12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52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근거 규정 및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64 | 1~6호기 연돌면적 | 3,350.16 | 622.90 | 면적산출오류 | 피고의 면적산출이 잘못되었음. 피고는 5247.6㎡으로 과세하였는데, 실제 면적은 622.90㎡임<br>※ 연돌 : 연소가스가 보일러에서 나와 대기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통로.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공작장치임. | 기력도면(갑가 제16호증),<br>복합도면(갑가 제27호증) | 지방세법상 기계장치는 『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는것으로, 연돌은 원고가 과거부터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해왔고 보조참가인(서천군)등에서도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상황임. | 을제8호증: 연돌설계도면<br>을제27호증1~12: 연돌내부기계장치 및 연돌평판 사진 등<br>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br>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장치안내서<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5,247.6에서 3,350.16로 면적 정정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돌의 지하 기초까지 포함하여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면적을 계산하면 면적 산출에 오류가 없음. | 3,350.16 |
| | 165 |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 연돌 | 3,320.64 | 0.00 | 기과세, 비과세대상 | 1. 피고가 2009.11월 복합연돌로 과세하고, 2011.4월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연돌로 다시 과세함.<br>또한 보일러연돌은 보일러 건물의 일부이며, 별도의 시설이 아님. 가스연돌 또한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연돌은 기계장치 아님).<br>2. 을 제42호증을 보더라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되며, 갑가 제61호증을 통해 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1호증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원고는 건물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것이라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건축물과 유사한 구조물임에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미포함되어 연돌은 생산시설의 일부인 기계장치로 포함되어야 함. | 을제27호증7내지11<br>을제42호증: 건물과 분리된 연돌사진<br>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안내서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3,320.64 |
| | 166 | 예비변압기 | 224.00 | 0.00 | 비과세대상 | 1. 야적된 자재임.<br>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갑가 제69호증을 보면 해당 예비변압기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9호증 | 스위치야드등어 시설되어 있어 현재 사용중이거나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변압기임. 또한, 기계장치의 경우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콘크리트로 받침대를 시설하고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시설하고 있는 변압기를 보관만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는 상황임. | 을제31호증101<br>을제53호증: 스위치야드 시설사진 | 예비용으로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기계장치이므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224.00 |
| | 167 | 연소용공기유입구 | 761.76 | 0.00 | 비과세대상 | 1. 연소용 공기유입구로서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가스터빈건물의 일부로서 건물 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을 제49호증의 1 내지 3에서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5호증 |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갑가제65호증은 해당기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현황도임.원고는 건축물입구를 기계장치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임. 건축물 도면 확인없는 주장에 불과함. | 을제31호증80<br>을제49호증1내지3: 건물과 별도로 시설된 기계장치 지지대 등 현황사진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761.76 |
| | 168 |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 | 8,245.23 | 0.00 | 비과세대상 | 피고가 2005년부터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이라는 명칭으로 과세한 건이므로 2004년 귀속분 다툼과는 관련없음 | | 펌프시설 기력1호기 옆에 시설되어 있으며 유인통풍기는 이미 도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콘크리트 구조물은 오폐수처리장의 기계실 출입구임을 증빙한 바 있으나 원고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없이 과세물건이 확인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임. | 을제31호증16, 을제31호증84<br>을제33호증55<br>을제50호증: 유인통풍기 위치도면<br>을제51호증: 유인통풍기 현황사진<br>을제57호증1내지6: 콘크리트구조물 현황사진 |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로서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7, 8호기 유인통풍기 2,360.9㎡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5,884.33 |
| | 169 | 기계장치 | 18.94 | 0.00 | 비과세대상 | 원고소유 시설물 아님 | | 보령댐으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우해 주산면 화평리 가압장내의 기계장치며 가압장 관리인이 원고소유 기계장치라 함. | 을제31호증36<br>을제60호증7: 가압장 취수설비계통 설명서 |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 170 | 송풍구 | 2.85 | 0.00 | 기과세 | 1. 7,8호기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2호증 | 을제31호증44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과 별개로 모터와 환풍장치가 시설된 기계장치임.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대로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44<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 |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 171 | 취수장내기계장치 | 21.84 | 0.00 | 기과세 | 1. 취수장으로 과세한 건임<br>2. 해당 시설은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br>따라서 취수장바닥면적과 별개로 시설된 레일등은 별개로 산출되어야 함. 중복되지 않음. | 을제31호증6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 | 별개의 기계장치와 시설물은 중첩되더라도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21.84 |
| | 172 | HRSG | 644.00 | 30.00 | 면적산출오류 | 1. 1GT 30㎡는 인정. HRSG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br>2. 건물에 연결된 기계장치로서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6호증 | 보일러 건물과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81: 현황사진 | |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644 |
| | 173 | 1,2호기<br>플라이애쉬<br>사일로백필터 | 116.92 | 0.00 | 기과세 | 1. 비회저장조로 과세한 건임<br>2. 비회저장조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 | 갑가제67호증 | 플라이애쉬 사일로 상단에 위치한 기계장치는 여러대의 모터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터는 사일로와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의거 구조물에 부착된 시설물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95,96<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 | 건축물 옥상에 위치한 기계장치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116.92 |
| | 174 | 증기배출구 | 745.82 | 0.00 | 비과세대상 | 1. 소음기이며, 복합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8호증 | 원고는 당초 해당시설물이 소음기가 아니라고 하다가 피고가 증빙을 통해 입증하자 또다시 건물외부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방세법에서 건물안의 시설물은 건물로 과세하고 건물외의 시설물은 각각 과세토록하고 있어 원고주장은 근거없음. | 을제31호증99,100<br>을제31호증102, 을제31호증104<br>을제52호증1내지4: 소음기 입증사진 | |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745.82 |
| | 175 | 환풍구 | 168.48 | 0.00 | 비과세대상 | 1. 소음기이며,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 피고가 기계장치로 입증한 사진을 보면 해당시설물안에 기계장치가 시설되어 있고 전원장치등을 통해 구조물안의 기계장치가 가동되도록 시설된 장치임. 따라서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103,을제31호증105,<br>을제31호증10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다만 7, 8호기 부분 40.48㎡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128 |
| | 176 | 내부공기배출구 | 328.56 | 0.00 | 비과세대상 | 1.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 모터와 배전반 스위치가 있는 건물과 별개의 기계장치임.<br>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106,107,10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328.56 |
| 다툼없는 기계장치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
| | 177 | 취수펌프시설지역 | 1,392.93 | 1,392.93 | | 다툼없음 | | | | | | | 1,392.93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78 | CWP STRUCTURE | 960.00 | 960.00 | | 다툼없음 | | | | | 960.00 |
| | 179 | CWP크레인 | 392.70 | 392.70 | | 다툼없음 | | | | | 392.70 |
| | 180 | SLP크레인 | 896.04 | 896.04 | | 다툼없음 | | | | | 896.04 |
| | 181 | SLP크레인 레일 | 15.20 | 15.20 | | 다툼없음 | | | | | 15.20 |
| | 182 | CWP 크레인 레일 | 65.80 | 65.80 | | 다툼없음 | | | | | 65.80 |
| | 183 | 복합연소용필터 | 39.25 | 39.25 | | 다툼없음 | | | | | 39.25 |
| | 184 | 복합연돌 | 158.50 | 158.50 | | 다툼없음 | | | | | 158.50 |
| | 185 | 복합주변압기 | 257.44 | 257.44 | | 다툼없음 | | | | | 257.44 |
| | 186 | 복합 HRSGSUMP | 33.00 | 33.00 | | 다툼없음 | | | | | 33.00 |
| | 187 | 복합 GT7.8 변압기 | 37.72 | 37.72 | | 다툼없음 | | | | | 37.72 |
| | 188 | 복합경유가압펌프 | 91.00 | 91.00 | | 다툼없음 | | | | | 91.00 |
| | 189 | 복합질소저감순수공급펌프 | 69.00 | 69.00 | | 다툼없음 | | | | | 69.00 |
| | 190 | 취수펌프시설 | 3,260.07 | 3,260.07 | | 다툼없음 | | | | | 3,260.07 |
| | 191 | CWP STRUCTURE | 2,652.00 | 2,652.00 | | 다툼없음 | | | | | 2,652.00 |
| | 192 | 석회석이송탑(TT01) | 33.00 | 33.00 | | 다툼없음 | | | | | 33.00 |
| | 193 | 석회석이송탑(TT02) | 80.00 | 80.00 | | 다툼없음 | | | | | 80.00 |
| | 194 | 석회석이송탑(TT03) | 34.65 | 34.65 | | 다툼없음 | | | | | 34.65 |
| | 195 | 석회석이송탑(TT04) | 39.00 | 39.00 | | 다툼없음 | | | | | 39.00 |
| | 196 | 석회석이송설비(LP01) | 485.56 | 485.56 | | 다툼없음 | | | | | 485.56 |
| | 197 | 석회석이송설비(LP02) | 720.38 | 720.38 | | 다툼없음 | | | | | 720.3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 인정 면적(㎡) | |
| 기계장치 | 198 | 석회석이송설비(LP03) | 1,058.68 | 1,058.68 | | 다툼없음 | | | | | | 1,058.68 | |
| | 199 | 석회석이송설비(LP04) | 129.35 | 129.35 | | 다툼없음 | | | | | | 129.35 | |
| | 200 | 해수가압펌프 | 72.00 | 72.00 | | 다툼없음 | | | | | | 72.00 | |
| | 201 | 변압기 | 2,048.66 | 2,048.66 | | 다툼없음 | | | | | | 2,048.66 | |
| | 202 | 기동변압기 | 261.66 | 261.66 | | 다툼없음 | | | | | | 261.66 | |
| | 203 | 탈황기동변압기 | 7.79 | 7.79 | | 다툼없음 | | | | | | 7.79 | |
| | 204 | 탈황보조변압기 | 1,884.90 | 1,884.90 | | 다툼없음 | | | | | | 1,884.90 | |
| | 205 | CWP 크레인 레일 | 90.47 | 90.47 | | 다툼없음 | | | | | | 90.47 | |
| | 206 | 크레인 | 298.20 | 298.20 | | 다툼없음 | | | | | | 298.20 | |
| | 207 | 크레인 | 240.00 | 240.00 | | 다툼없음 | | | | | | 240.00 | |
| | 208 | 상탄기 | 672.00 | 672.00 | | 다툼없음 | | | | | | 672.00 | |
| | 209 | 상탄기 | 448.00 | 448.00 | | 다툼없음 | | | | | | 448.00 | |
| | 210 | 석탄하역기 | 1,250.00 | 1,250.00 | | 다툼없음 | | | | | | 1,250.00 | |
| | 211 | 석탄하역기 | 1,136.00 | 1,136.00 | | 다툼없음 | | | | | | 1,136.00 | |
| | 212 | 상탄기레일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 160.00 | |
| | 213 | 상탄기레일 | 339.20 | 339.20 | | 다툼없음 | | | | | | 339.20 | |
| | 214 | 석탄하역기레일 | 73.90 | 73.90 | | 다툼없음 | | | | | | 73.90 | |
| | 215 | 저탄장내컨베이어시설(S/R기초) | 22,539.00 | 22,539.00 | | 다툼없음 | | | | | | 22,539.00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근거 기재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16 | 고전압시설 | 177.12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1호증 81내지82 | 을제31호증의29의 영상과 같이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177.12 |
| | 217 | 가스장치 | 402.4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81내지82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402.48 |
| | 218 | 복합변압기 | 825.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의76, 제85호증 | 상동 | 825 |
| | 219 | DUST COLLECTOR SYSTEM(24기) | 586.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86, 을제86호증 | 상동 | 586.56 |
| | 220 | 기계장치 (플라이애쉬싸일로 위) | 89.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96 | 이 목록 순번 173번 기재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 |
| | 221 | 수문 | 742.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90p, 을제83호증의13 | 피고 증거로 특정됨. 다만 면적은 740.6㎡(= 32.2m×23m) 인정 | 740.6 |
| | 222 | 복합HRSG | 3,19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4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196 |
| | 223 | HP Drum | 153.4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5 | 이 목록 순번 222번 기재 복합 HRSG의 부속장치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하지 않음. | 0 |
| | 224 | IP Drum | 68.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6 | 상동 | 0 |
| | 225 | LP Drum | 62.4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 제83호증의 17 | 상동 | 0 |
| | 226 | 저장지역연료유썸프 | 1.4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중유)13p, 을제83호증의18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44 |
| | 227 | 중유서비스연료유썸프 | 4.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중유)15p |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허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28 | First stage Mist Eliminnator | 671.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 19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29 | Second stage Mist Eliminnator | 1,007.2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 20 | 상동 | 0 |
| | 230 | Booster Fan Innet Danper | 184.3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 21 | 상동 | 0 |
| | 231 | Booster Fan Outlet Danper | 255.3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 22 | 상동 | 0 |
| | 232 | Energency Danper | 130.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 23 | 상동 | 0 |
| | 233 | FGD Outlet Danper | 141.1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4 | 상동 | 0 |
| | 234 | 가스히터 | 864.8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5 | 상동 | 0 |
| | 235 | 여과수셈프 | 118.5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301p, 을제83호증의26 | 상동 | 0 |
| | 236 | 계량대 | 3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850p, 을제83호증의27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9 |
| | 237 | 전기집진기 | 10,37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p, 을제83호증의28 | 이 목록 순번 449 내지 460번 기재 전기집진기실 내지 집진기와 별도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인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38 | GIS(가스절연발전소) | 1,20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78p, 을제83호증의29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204 |
| | 239 | 집진판(Element Size, Ass' Y Size) | 4,870.6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87p, 을제83호증의30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원고 주장의 위법 사유 기재 출력일자 : 2017-08-23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40 | AIR PREHEATER INETDAMEER | 286.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41 | Expansion Joint | 302.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을제83호증의31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42 | 오폐수처리장기계실 | 205.5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57호증 1내지6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05.57 |
| | 243 | Scr탈질설비구조물 | 4,75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종합사업보고서 246,249p, 을제83호증의32 | 상동 | 4,752.00 |
| | 244 | 정화조 | 28.69 | 0.00 | 비과세대상 | 1.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임<br>2.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이며, 피고는 자의적으로 정화조를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있음 | | 단순저장기능인 정화조는 포함대상이며 또한 기계작동에 따라 정화하는 정화조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비과세대상아님. | 을제33호증56: 정화조조적반기계장치사진<br>을제33호증58: 단순정화조사진<br>을제33호증59: 정화조 조적반기계장치사진 |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28.69 |
| | 245 | 저장조 | 241.40 | 0.00 | 오류 | 피고가 2005년부터 과세한 건임 | | 을제33호증2내지60에 대한 면적집계표는 을제33호증1로 계산하고 있음. 해당 저장조에 대한 면적이 중복되지 않음이 을제33호증1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증빙자료에서 중복된 것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증빙자료는 중복되었으나 면적은 중복되지않음(중복과세된 것이 아님) | 을제33호증1: 면적집계표<br>을제33호증57,60: 같은 저장조가 2기있어 각각 입증위해 별도로 증빙한 것이나 면적산출은 중복되지 않음. | 2004년에도 과세대상임 | 241.4 |
| | **다툼없는 저장조.수조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246 | 심층취수로 | 1,351.48 | 1,351.48 | | 다툼없음 | | | | | 1,351.48 |
| | 247 | 냉각수 취수장 사다리꼴 | 549.89 | 549.89 | | 다툼없음 | | | | | 549.89 |
| | 248 | 냉각수 취수장 직사각형 | 148.94 | 148.94 | | 다툼없음 | | | | | 148.94 |
| | 249 | 취수장 옆 배수로 | 162.64 | 162.64 | | 다툼없음 | | | | | 162.64 |
| | 250 | 취수로 | 2,585.80 | 2,585.80 | | 다툼없음 | | | | | 2,585.80 |
| | 251 | 순수탱크 | 346.19 | 346.19 | | 다툼없음 | | | | | 346.19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경제적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52 | 복합 일상폐수조 | 401.98 | 401.98 | | 다툼없음 | | | | | 401.98 |
| | 253 | 오수정화조 | 108.00 | 108.00 | | 다툼없음 | | | | | 108.00 |
| | 254 | 복합 함유폐수조 | 163.40 | 163.40 | | 다툼없음 | | | | | 163.40 |
| | 255 | 냉각수 배수관로 1 | 273.01 | 273.01 | | 다툼없음 | | | | | 273.01 |
| | 256 | 냉각수 배수관로 2 | 511.57 | 511.57 | | 다툼없음 | | | | | 511.57 |
| | 257 | 냉각수 배수관로 | 409.05 | 409.05 | | 다툼없음 | | | | | 409.05 |
| | 258 | 심층취수로입구 (냉각수취수펌프 유입흡수구) | 221.76 | 221.76 | | 다툼없음 | | | | | 221.76 |
| | 259 | 심층취수관로 (냉각수취수펌프 유입수로) | 3,672.06 | 3,672.06 | | 다툼없음 | | | | | 3,672.06 |
| | 260 | 취수장 | 5,081.23 | 5,081.23 | | 다툼없음 | | | | | 5,081.23 |
| | 261 | 취수로 | 26,298.02 | 26,298.02 | | 다툼없음 | | | | | 26,298.02 |
| | 262 | 취수로 | 3,060.74 | 3,060.74 | | 다툼없음 | | | | | 3,060.74 |
| | 263 | 복수저장탱크 | 330.28 | 330.28 | | 다툼없음 | | | | | 330.28 |
| | 264 | 순수저장조 (DEMI WATER TANK) | 307.72 | 307.72 | | 다툼없음 | | | | | 307.72 |
| | 265 | 조절지 수조 | 304.00 | 304.00 | | 다툼없음 | | | | | 304.00 |
| | 266 | 가압장 수조 | 317.00 | 317.00 | | 다툼없음 | | | | | 317.00 |
| | 267 | 취수장 수조 | 50.00 | 50.00 | | 다툼없음 | | | | | 50.00 |
| | 268 | 원수탱크B | 2,147.20 | 2,147.20 | | 다툼없음 | | | | | 2,147.20 |
| | 269 | 원수탱크D | 6,358.50 | 6,358.50 | | 다툼없음 | | | | | 6,358.50 |
| | 270 | 재활용수조 | 48.00 | 48.00 | | 다툼없음 | | | | | 48.00 |
| | 271 | 염소저장조 | 14.12 | 14.12 | | 다툼없음 | | | | | 14.12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72 | 복합염산탱크 | 2.83 | 2.83 | | 다툼없음 | | | | | 2.83 |
| | 273 | 염산저장탱크 | 33.46 | 33.46 | | 다툼없음 | | | | | 33.46 |
| | 274 | 가성소다저장탱크 | 80.44 | 80.44 | | 다툼없음 | | | | | 80.44 |
| | 275 | 저회저장조 | 157.00 | 157.00 | | 다툼없음 | | | | | 157.00 |
| | 276 | 비회저장조 | 562.80 | 562.80 | | 다툼없음 | | | | | 562.80 |
| | 277 | 석고탈수탱크 | 54.00 | 54.00 | | 다툼없음 | | | | | 54.00 |
| | 278 | 석회석일일저장조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279 | 석회석슬러리탱크 | 46.50 | 46.50 | | 다툼없음 | | | | | 46.50 |
| | 280 | 석회석저장사일로 | 181.30 | 181.30 | | 다툼없음 | | | | | 181.30 |
| | 281 | 탈황비상저장탱크 | 165.00 | 165.00 | | 다툼없음 | | | | | 165.00 |
| | 282 | 석회석저장사일로 | 181.30 | 181.30 | | 다툼없음 | | | | | 181.30 |
| | 283 | 염기저장조 | 9.00 | 9.00 | | 다툼없음 | | | | | 9.00 |
| | 284 | 염기및산저장탱크 | 26.40 | 26.40 | | 다툼없음 | | | | | 26.40 |
| | 285 | 염기및산저장탱크 | 26.40 | 26.40 | | 다툼없음 | | | | | 26.40 |
| | 286 | 수조 | 1,164.38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2015.01.22.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 스스로 다툼없는 시설로 인정한 면적임. | 원고 인정 다툼없는 시설물 면적 내역<br>을제76호증6<br>을제33호증 2내지8, 10~11, 20~23, 44, 52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164.38 |
| | 287 | 저장조 | 1,475.6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9,12~15,18~19,24~28, 30,38~39,45~46,48~49,51,53~54<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475.55에서 1,475.61로 면적 정정 | 상동. 다만 7,8호기 저장조 703.3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을제38호증의38-39). | 772.29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법원의 판단 | |
|---|---|---|---|---|---|---|---|---|---|---|---|
| | | 근거 기재 | |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저장조및수조 | 288 | 펌프실(2-1)(2-2) | 30.2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16~17<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01.4에서 30.21로 면적 정정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0.21 |
| | 289 | 기력 LOSERVICE TANK | 276.3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47 | 상동 | 276.32 |
| | 290 | CPI유수분리기 | 48.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50 | 상동 | 48.76 |
| | 291 | 콘크리트구조물 | 13.8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55 | 이 목록 순번 168번 기재 시설물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 |
| | 292 | 원수탱크D(2기중 미과세1기) | 6,358.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53<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63.58로 수정했으나 당초면적 6,358.5으로 정정(면적산출 오류)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중복 산정 여부 알 수 없음. | 0.00 |
| | 293 | 복합유수분리기 | 309.8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 상동 | 0 |
| | 294 | 복합오폐수집수지 | 397.0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 상동 | 0 |
| | 295 | 기력복합일시(일상)폐수조 | 2,640.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222,223,304p<br>을제83호증 33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640.50 |
| | 296 | 폐수집수조(abnormal,normal) | 40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406p<br>을제83호증 34 | 상동 | 400 |
| | 297 | 경유저장탱크 | 530.6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경유계통9p<br>을제83호증 35 | 상동 | 530.66 |
| | 298 | 원수저장탱크 | 2,098.0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소화설비(공업원수)7p<br>을제83호증 36 | 상동 | 2,098.08 |
| | 299 | 1차침전조 | 1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00 | 1차반응탱크 | 1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1 | 2차반응탱크 | 1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02 | 3차반응탱크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3 | 1차체류조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4 | 1차응집탱크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5 | 2차침전조 | 56.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6 | 2차체류조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7 | 2차응집탱크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8 | 3차침전조 | 56.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9 | 1차처리수조 | 62.7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0 | 압력여과기 | 3.7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1 | 활성탄여과기 | 12.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2 | 1차PH조정조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3 | 2차PH처리수조 | 4.9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4 | 불소흡착탑 | 6.2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5 | 2차PH조정조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6 | 방류수조 | 6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상 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17 | 농축조 | 4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8 | 슬러지저장조 | 1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9 | 케이크호퍼 | 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0 | 세척수탱크 | 1.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1 | 황산알루미늄호퍼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2 | 탄산나트륨호퍼 | 2.5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3 | 용해주입탱크 | 5.3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4 | 호퍼공기저장탱크 | 0.8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5 | 용해탱크 | 0.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6 | 길레이트주입탱크 | 0.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7 | 폴리머용해탱크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8 | 폴리머주입탱크 | 4.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9 | 염산주입탱크 | 4.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0 | 염산가스실포트 | 0.1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1 | 수산화나트륨주입탱크 | 3.1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상 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 332 | 치아염산탱크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 | 상동 | 0.00 |
| | 333 | 아황산용해탱크 | 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 | 상동 | 0.00 |
| | 334 | MXINGTANK | 4.8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종합용역보고서112p | |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35 | 취수펌프장 | 37.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설계계산서11-13p<br>을제83호증 37 | |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7.50 |
| | 336 | 용수저장탱크 | 1,017.3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설계계산서11-14p<br>을제83호증 38 | | | 상동 | 1,017.36 |
| 저유조 | | 다툼없는 저유조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 337 | 복합 DO Storage tank | 1,118.10 | 1,118.10 | | 다툼없음 | | | | | | | 1,118.10 |
| | 338 | Clean&Dirty Oil tank | 20.50 | 20.50 | | 다툼없음 | | | | | | | 20.50 |
| | 339 | LIGHTOILSERVICE 탱크<br>(1호기 서쪽) | 88.20 | 88.20 | | 다툼없음 | | | | | | | 88.20 |
| | 340 | LIGHTOILSERVICE 탱크<br>(2발 건너편) | 88.00 | 88.00 | | 다툼없음 | | | | | | | 88.00 |
| 공작물 | 341 | 1~6호기<br>컨베이어설비 | 23,670.36 | 0.00 | 비과세대상 | 본 시설은 2008년도에 취득한 시설물임 | | 시설물명에서 7,8호기 컨베이어설비라 한것은 1~8호기 컨베이어설비의 오류로 설계도면과 실측을 통하여 컨베이어 시설면적을 수평투영면적으로 재산정 한 결과 합계면적이 34,155.78㎡이며 발전소별 면적을 구분하면, 1~6호기: 23,670.56㎡, 7~8호기: 10,485.22㎡임.<br>원고가 당초 주장한 면적(17,111㎡)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작물축조신고없이 불법으로 시설한 컨베이어면적이 미산정됨. | 을제3호증3: 석탄취급설비계통도<br>을제24호증1: 면적집계표<br>을제24호증2내지59: 현황사진 및 면적산출내역<br>참고자료7: 행자부심사결정서(2007-427) | | 1-6호기 컨베이어 설비는 2004년 이전부터 사용되던 시설임. 하단컨베이어나 take-up 장치는 별개의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면적 합계 23,670.36㎡ 중 갑가제43, 44호증, 을제24호증의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면서 수평 길이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계를 잘못 한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341번)' 기재와 같고 잘못 추가된 면적 합계가 1,503.88㎡이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면적 22,166.48㎡만 인정한다. | 22,166.4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 원고 주장의 허본 위법 사유 기재 출력일자 : 2017-08-23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42 | 급수탱크관련 송수관 및 경유배관 | 2,944.14 | 0.00 | 기과세 | 급수탱크 관련 송수관 및 경유배관은 2009.11월 기과세하고(복합송수관 및 송유관), 2011.4월 다시 과세한 물건임 | 갑가제3호증의1 3면 및 11면 | 급수탱크관련 송수관이 다수의 장소에 시설되어 있으나 송수관의 길이 및 위치에서 기과세된 송수관이 아님. 송수관 일부에 대해서 제출하고 피고가 추가로 송수관을 찾아 과세하자 증빙없이 중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 을제32호증6내지18 | 기과세된 증거가 없음 | 2,944.14 |
| | **다툼없는 송수관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343 | CWP~보일러건물 송수관 | 2,076.80 | 2,076.80 | | 다툼없음 | | | | | 2,076.80 |
| | 344 | 취수관로 | 902.00 | 902.00 | | 다툼없음 | | | | | 902.00 |
| | 345 | SCW PIPE | 256.00 | 256.00 | | 다툼없음 | | | | | 256.00 |
| | 346 | 급수탱크관련송수관 | 691.75 | 691.75 | | 다툼없음 | | | | | 691.75 |
| | 347 | 순수공급펌프실송수관 | 19.18 | 19.18 | | 다툼없음 | | | | | 19.18 |
| | 348 | 급수펌프실관련송수관 | 835.00 | 835.00 | | 다툼없음 | | | | | 835.00 |
| | 349 | 폐수 집수조관련송수관 | 298.20 | 298.20 | | 다툼없음 | | | | | 298.20 |
| | 350 | 오수정화조관련송수관 | 5.00 | 5.00 | | 다툼없음 | | | | | 5.00 |
| | 351 | 해수취수펌프실관련 송수관 | 5.00 | 5.00 | | 다툼없음 | | | | | 5.00 |
| | 352 |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 31.00 | 31.00 | | 다툼없음 | | | | | 31.00 |
| | 353 |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 389.00 | 389.00 | | 다툼없음 | | | | | 389.00 |
| | 354 | 취수장옆 HUME PIPE | 2.57 | 2.57 | | 다툼없음 | | | | | 2.57 |
| | 355 |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 1,106.09 | 1,106.09 | | 다툼없음 | | | | | 1,106.09 |
| | 356 | CWP 배관(CWP~보일러건물) | 768.00 | 768.00 | | 다툼없음 | | | | | 768.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근거 기재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송수관 | 357 | CWP PIPE(CWP~보일러건물) | 3,840.00 | 3,840.00 | | 다툼없음 | | | | | 3,840.00 |
| | 358 | 수처리 건물 관련 | 2.04 | 2.04 | | 다툼없음 | | | | | 2.04 |
| | 359 | 해수가압펌프 송수관 | 0.39 | 0.39 | | 다툼없음 | | | | | 0.39 |
| | 360 | 공업용수관로(보령댐~보령화력) | 15,750.00 | 15,750.00 | | 다툼없음 | | | | | 15,750.00 |
| | 361 | 옥외소화관 | 2,932.88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60호증 1내지14<br>을제61호증 1내지 11<br>1~2호기건설지 599p,복합건설지 392p<br>을제83호증 39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932.88 |
| | 362 | 공업용수도수관 | 150.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224p<br>매설(주교면 송학리에서 발전소 연장구간)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63 | 공업용수유공관 | 143.0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1283p<br>매설(주산면 화평리 웅천천에서 집수정 구간) | 상동 | 0.00 |
| | 364 | 재순환수관 | 2,847.2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311p<br>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5p<br>을제83호증 40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65 | 전처리배관(강관,PEM 수도관) | 1,08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783p<br>을제83호증 41 | 상동 | 0.00 |
| | 366 | 에쉬라인 | 4,32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5-6호기종합용역보고서1-7p<br>을제83호증 42 |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다만 면적은 1,440㎡(= 0.3m×2,400m×2) | 1,440.00 |
| | 367 | 폐수배관 | 134.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폐수재이용설비공사설계서<br>*지하매설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68 | 회이송관 | 1,857.1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3p(3~6호기)<br>을제83호증 43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857.17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69 | 섬프펌프관 | 1.2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저리장설비용역<br>보고서2-16p<br>을제83호증 44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70 | 송수관<br>(취수펌프장과응수저장사이) | 15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1~4호기설계계산서 11~14p<br>*지하매설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71 | 경유배관 | 792.00 | 0.00 | 비과세대상 |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 갑가 제80호증 | 원고는 해당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송유관으로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송유관에 호스장치를 시설한 후 드럼통을 통해 기름을 뽑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경유배관에는 기름보관이 가능토록 배관을 융접한 것으로 배관을 끊어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님. | 을제32호증2 |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 0 |
| | 372 | 1부두경유배관 | 4.95 | 0.00 | 비과세대상 |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 | 지방세법에서 정한 '직접사용'의 의미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법인 등에게 임차한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로 시설된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안된다를 가리는 것이 아님. | 을제32호증3B |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 0 |
| | 373 | 도관(회이송관) | 3,486.88 | 0.00 | 기과세 | 회이송관받침대로 과세한 면적에 포함됨 | 갑가제3호증의3 16면 | 회이송받침대는 트러스로 명칭되며 송유관 등은 각각 별개로 과세되어야 함.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일이 2007.1.1일이므로 2006년까지는 포함되어야 함. | 을제32호증53내지57<br>을제54호증1내지2: 트러스트설명서<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회이송관받침대와 별개의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 | 3,486.88 |
| | **다툼없는 송유관 및 도관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374 | 기름분리조관련송유관 | 9.00 | 9.00 | | 다툼없음 | | | | | 9.00 |
| | 375 | 경유저장탱크송유관 | 3.50 | 3.50 | | 다툼없음 | | | | | 3.50 |
| | 376 | 오일탱크관련 송유관 | 1.50 | 1.50 | | 다툼없음 | | | | | 1.50 |
| | 377 | 연료공급실송유관 | 41.20 | 41.20 | | 다툼없음 | | | | | 41.20 |
| 송유관 및 | 378 | 오일탱크관련송유관 | 1.50 | 1.50 | | 다툼없음 | | | | | 1.5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도관 | 379 | LO SERVICE PUMP TO BOILER | 24.36 | 24.36 | | 다툼없음 | | | | | 24.36 |
| | 380 | LO SERVICE PUMP TO BOILER | 3.57 | 3.57 | | 다툼없음 | | | | | 3.57 |
| | 381 | LO SERVICE PUMP TO BOILER | 0.59 | 0.59 | | 다툼없음 | | | | | 0.59 |
| | 382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2.03 | 2.03 | | 다툼없음 | | | | | 2.03 |
| | 383 |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 2.00 | 2.00 | | 다툼없음 | | | | | 2.00 |
| | 384 |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 38.58 | 38.58 | | 다툼없음 | | | | | 38.58 |
| | 385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1.60 | 1.60 | | 다툼없음 | | | | | 1.60 |
| | 386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138.56 | 138.56 | | 다툼없음 | | | | | 138.56 |
| | 387 | LO SERVICE PUMP TO BOILER | 59.78 | 59.78 | | 다툼없음 | | | | | 59.78 |
| | 388 | LO SERVICE PUMP TO BOILER | 45.57 | 45.57 | | 다툼없음 | | | | | 45.57 |
| | 389 | 도관시설 | 13,905.19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2호증 1, 3~5, 19~45, 48~49, 58~74, 76~83<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4,427.48에서 13,905.19로 면적 정정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다만 2부두air라인(을제32호증의5 'c') 11.5㎡는 이 목록 순번 제27번 기재 시설물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13,893.69 |
| | 390 | 중유이송배관 | 77.83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806p<br>*2013년 폐기시설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다툼없는 건물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391 | 건설 사무소 | 479.24 | 479.24 | | 다툼없음 | | | | | 479.24 |
| | 392 | 기상관측소 | 7.29 | 7.29 | | 다툼없음 | | | | | 7.29 |
| | 393 | 모의제어반 | 1,569.86 | 1,569.86 | | 다툼없음 | | | | | 1,569.86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경제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94 | 무기고 | 66.96 | 66.96 | | 다툼없음 | | | | | 66.96 |
| | 395 | 소각로 | 259.18 | 259.18 | | 다툼없음 | | | | | 259.18 |
| | 396 | 온실 | 72.00 | 72.00 | | 다툼없음 | | | | | 72.00 |
| | 397 | 이륜차고 | 135.00 | 135.00 | | 다툼없음 | | | | | 135.00 |
| | 398 | 종합사무실 | 7,486.62 | 7,486.62 | | 다툼없음 | | | | | 7,486.62 |
| | 399 | 종합사무실-건설소 | 3,291.08 | 3,291.08 | | 다툼없음 | | | | | 3,291.08 |
| | 400 | 차고 | 318.00 | 318.00 | | 다툼없음 | | | | | 318.00 |
| | 401 | 홍보관 | 340.20 | 340.20 | | 다툼없음 | | | | | 340.20 |
| | 402 | 홍보관 화장실 | 57.40 | 57.40 | | 다툼없음 | | | | | 57.40 |
| | 403 | #1 외부화장실-2호기뒤 | 7.28 | 7.28 | | 다툼없음 | | | | | 7.28 |
| | 404 | 배양장 | 562.50 | 562.50 | | 다툼없음 | | | | | 562.50 |
| | 405 | (종묘)배양장창고 | 96.00 | 96.00 | | 다툼없음 | | | | | 96.00 |
| | 406 | 온배수양식동 | 504.00 | 504.00 | | 다툼없음 | | | | | 504.00 |
| | 407 | 온배수양식장펌프실 | 21.60 | 21.60 | | 다툼없음 | | | | | 21.60 |
| | 408 | 웅천 가압장 | 162.00 | 162.00 | | 다툼없음 | | | | | 162.00 |
| | 409 | 웅천 사택 | 43.65 | 43.65 | | 다툼없음 | | | | | 43.65 |
| | 410 | 주산 사택 | 55.72 | 55.72 | | 다툼없음 | | | | | 55.72 |
| | 411 | 주산 취수장 | 161.00 | 161.00 | | 다툼없음 | | | | | 161.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및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허본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12 | 경비실(구정문수위실) | 100.23 | 100.23 | | 다툼없음 | | | | | 100.23 |
| | 413 | 정문경비실 | 64.04 | 64.04 | | 다툼없음 | | | | | 64.04 |
| | 414 | 후문경비실 | 54.98 | 54.98 | | 다툼없음 | | | | | 54.98 |
| | 415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16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17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18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19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20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21 | 망루1형 | 12.35 | 12.35 | | 다툼없음 | | | | | 12.35 |
| | 422 | 초소1형 | 12.50 | 12.50 | | 다툼없음 | | | | | 12.50 |
| | 423 | 초소1형 | 12.50 | 12.50 | | 다툼없음 | | | | | 12.50 |
| | 424 | 초소2형(망루) | 18.83 | 18.83 | | 다툼없음 | | | | | 18.83 |
| | 425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426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427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428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429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30 | 간이초소 NO-1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31 | 간이초소 NO-2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32 | 간이초소 NO-3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33 | 간이초소 NO-4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34 | 벙커 | 7.20 | 7.20 | | 다툼없음 | | | | | 7.20 |
| | 435 | #1 터빈및주제어실 | 7,231.50 | 7,231.50 | | 다툼없음 | | | | | 7,231.50 |
| | 436 | #2 터빈및주제어실 | 7,231.50 | 7,231.50 | | 다툼없음 | | | | | 7,231.50 |
| | 437 | #3,4 터빈및주제어건물-1 | 27,055.48 | 27,055.48 | | 다툼없음 | | | | | 27,055.48 |
| | 438 | #5,6 터빈및주제어건물 | 26,096.71 | 26,096.71 | | 다툼없음 | | | | | 26,096.71 |
| | 439 | #1 보일러실 | 2,904.49 | 2,904.49 | | 다툼없음 | | | | | 2,904.49 |
| | 440 | #2 보일러실 | 2,904.49 | 2,904.49 | | 다툼없음 | | | | | 2,904.49 |
| | 441 | #3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42 | #4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43 | #5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44 | #6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45 | #1 보조보일러제어실 | 212.15 | 212.15 | | 다툼없음 | | | | | 212.15 |
| | 446 | #2 보조보일러전원실 | 102.48 | 102.48 | | 다툼없음 | | | | | 102.48 |
| | 447 | #1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 484.78 | 484.78 | | 다툼없음 | | | | | 484.7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48 | #2 전기집진기소위치 기어조정실 | 484.78 | 484.78 | | 다툼없음 | | | | | 484.78 |
| | 449 | #1 전기집진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50 | #2 전기집진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51 | #3 전기집진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52 | #4 전기집진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53 | #3 집진기 NO-1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54 | #3 집진기 NO-2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55 | #4 집진기 NO-3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56 | #4 집진기 NO-4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57 | #5 집진기 NO-5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58 | #5 집진기 NO-6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59 | #6 집진기 NO-7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60 | #6 집진기 NO-8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61 | 누유방제자재보관창고 | 72.00 | 72.00 | | 다툼없음 | | | | | 72.00 |
| | 462 | #1,2 물처리실 | 1,260.80 | 1,260.80 | | 다툼없음 | | | | | 1,260.80 |
| | 463 | #3~4 물처리건물 | 2,992.62 | 2,992.62 | | 다툼없음 | | | | | 2,992.62 |
| | 464 | 보조보일러약품주입실 | 18.56 | 18.56 | | 다툼없음 | | | | | 18.56 |
| | 465 | 산소저장창고 | 35.00 | 35.00 | | 다툼없음 | | | | | 35.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66 | (산업폐기물)저장창고 | 141.12 | 141.12 | | 다툼없음 | | | | | 141.12 |
| | 467 | #1,2 사워장 | 395.18 | 395.18 | | 다툼없음 | | | | | 395.18 |
| | 468 | 염소주입실 | 622.16 | 622.16 | | 다툼없음 | | | | | 622.16 |
| | 469 | #1,2 유지창고 | 350.00 | 350.00 | | 다툼없음 | | | | | 350.00 |
| | 470 | 정비고 | 611.00 | 611.00 | | 다툼없음 | | | | | 611.00 |
| | 471 | #1,2 종합창고 | 3,706.20 | 3,706.20 | | 다툼없음 | | | | | 3,706.20 |
| | 472 | #3,4 종합창고 | 3,706.20 | 3,706.20 | | 다툼없음 | | | | | 3,706.20 |
| | 473 | 폐기물저장창고 | 230.67 | 230.67 | | 다툼없음 | | | | | 230.67 |
| | 474 | 폐수처리관리실 | 206.36 | 206.36 | | 다툼없음 | | | | | 206.36 |
| | 475 | 폐수처리건물 | 546.83 | 546.83 | | 다툼없음 | | | | | 546.83 |
| | 476 | 부두접안정보실 | 15.12 | 15.12 | | 다툼없음 | | | | | 15.12 |
| | 477 | #1 비회제어실 | 47.00 | 47.00 | | 다툼없음 | | | | | 47.00 |
| | 478 | #2 비회제어실 | 47.00 | 47.00 | | 다툼없음 | | | | | 47.00 |
| | 479 | #1 사일로 전원실 | 52.00 | 52.00 | | 다툼없음 | | | | | 52.00 |
| | 480 | 상탄살포제실 | 54.00 | 54.00 | | 다툼없음 | | | | | 54.00 |
| | 481 | 저탄살포제실 | 54.00 | 54.00 | | 다툼없음 | | | | | 54.00 |
| | 482 | 석탄분쇄실 1 | 802.75 | 802.75 | | 다툼없음 | | | | | 802.75 |
| | 483 | 석탄분쇄실 2 | 814.00 | 814.00 | | 다툼없음 | | | | | 814.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및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84 | 석탄분쇄 동력제어실 | 55.50 | 55.50 | | 다툼없음 | | | | | 55.50 |
| | 485 | 석탄분쇄 소화가스실 | 11.00 | 11.00 | | 다툼없음 | | | | | 11.00 |
| | 486 | 석탄하역건물 | 135.00 | 135.00 | | 다툼없음 | | | | | 135.00 |
| | 487 | 운탄설비 동력제어실 | 45.00 | 45.00 | | 다툼없음 | | | | | 45.00 |
| | 488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 5.30 | 5.30 | | 다툼없음 | | | | | 5.30 |
| | 489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1 | 7.93 | 7.93 | | 다툼없음 | | | | | 7.93 |
| | 490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2 | 7.15 | 7.15 | | 다툼없음 | | | | | 7.15 |
| | 491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3 | 6.37 | 6.37 | | 다툼없음 | | | | | 6.37 |
| | 492 | 유연탄하역조정실 | 320.00 | 320.00 | | 다툼없음 | | | | | 320.00 |
| | 493 | 유연탄작업관리실 | 694.02 | 694.02 | | 다툼없음 | | | | | 694.02 |
| | 494 | 입하탄시료채취실 | 287.10 | 287.10 | | 다툼없음 | | | | | 287.10 |
| | 495 | 회처리전원실 | 67.51 | 67.51 | | 다툼없음 | | | | | 67.51 |
| | 496 | 조탄실 1 | 140.00 | 140.00 | | 다툼없음 | | | | | 140.00 |
| | 497 | 조탄실 2 | 301.75 | 301.75 | | 다툼없음 | | | | | 301.75 |
| | 498 | 조탄실 3 | 414.40 | 414.40 | | 다툼없음 | | | | | 414.40 |
| | 499 | 조탄실 4 | 240.00 | 240.00 | | 다툼없음 | | | | | 240.00 |
| | 500 | 조탄실 5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501 | 조탄실 6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건축물 | 502 | 조탄실 NO-1 | 257.57 | 257.57 | | 다툼없음 | | | | | 257.57 |
| | 503 | 조탄실 NO-2 | 256.26 | 256.26 | | 다툼없음 | | | | | 256.26 |
| | 504 | 조탄실 NO-3 | 269.68 | 269.68 | | 다툼없음 | | | | | 269.68 |
| | 505 | 조탄실 NO-4 | 85.08 | 85.08 | | 다툼없음 | | | | | 85.08 |
| | 506 | 조탄실 NO-5 | 85.85 | 85.85 | | 다툼없음 | | | | | 85.85 |
| | 507 | 조탄실 NO-6 | 127.07 | 127.07 | | 다툼없음 | | | | | 127.07 |
| | 508 | 조탄실 NO-7 | 1,143.42 | 1,143.42 | | 다툼없음 | | | | | 1,143.42 |
| | 509 | 조탄실 NO-8 | 1,598.88 | 1,598.88 | | 다툼없음 | | | | | 1,598.88 |
| | 510 | 조탄실 NO-9 | 398.23 | 398.23 | | 다툼없음 | | | | | 398.23 |
| | 511 | 조탄실 NO-10 | 116.80 | 116.80 | | 다툼없음 | | | | | 116.80 |
| | 512 | 조탄실 | 147.11 | 147.11 | | 다툼없음 | | | | | 147.11 |
| | 513 | 조탄실 | 253.52 | 253.52 | | 다툼없음 | | | | | 253.52 |
| | 514 | 트랜스퍼타워 18 | 217.18 | 217.18 | | 다툼없음 | | | | | 217.18 |
| | 515 | 트랜스퍼타워 19 | 224.71 | 224.71 | | 다툼없음 | | | | | 224.71 |
| | 516 | 트랜스퍼타워 20 | 1,323.18 | 1,323.18 | | 다툼없음 | | | | | 1,323.18 |
| | 517 | 트랜스퍼타워 21 | 226.19 | 226.19 | | 다툼없음 | | | | | 226.19 |
| | 518 | 회처리펌프제어실 | 23.80 | 23.80 | | 다툼없음 | | | | | 23.80 |
| | 519 | 회처리순환펌프실 | 95.20 | 95.20 | | 다툼없음 | | | | | 95.20 |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원고 주장의 허본 위법 사유 기재 출력일자 : 2017-08-23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20 | 희처리순환펌프실 | 408.00 | 408.00 | | 다툼없음 | | | | | 408.00 |
| | 521 | 소화수및원수펌프실 | 380.25 | 380.25 | | 다툼없음 | | | | | 380.25 |
| | 522 | 순환수보조펌프실 | 299.75 | 299.75 | | 다툼없음 | | | | | 299.75 |
| | 523 | 송유및소화수펌프실 | 383.00 | 383.00 | | 다툼없음 | | | | | 383.00 |
| | 524 | 해수소화펌프실 | 25.39 | 25.39 | | 다툼없음 | | | | | 25.39 |
| | 525 | 해수인양펌프조작실 | 320.00 | 320.00 | | 다툼없음 | | | | | 320.00 |
| | 526 | 유류가압펌프실 | 336.00 | 336.00 | | 다툼없음 | | | | | 336.00 |
| | 527 | 연료유펌프실-#1,2호기 | 654.72 | 654.72 | | 다툼없음 | | | | | 654.72 |
| | 528 | 연료유공급펌프실 | 645.00 | 645.00 | | 다툼없음 | | | | | 645.00 |
| | 529 | #3,4연료조질펌프실 | 44.84 | 44.84 | | 다툼없음 | | | | | 44.84 |
| | 530 | #5,6연료조질펌프실 | 44.84 | 44.84 | | 다툼없음 | | | | | 44.84 |
| | 531 | 가스창고-#2호기옆 | 24.00 | 24.00 | | 다툼없음 | | | | | 24.00 |
| | 532 | 가스창고-2화학부옆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533 | 가스창고-2화학부옆 | 7.92 | 7.92 | | 다툼없음 | | | | | 7.92 |
| | 534 | 가스창고-고압 | 150.00 | 150.00 | | 다툼없음 | | | | | 150.00 |
| | 535 | 질소가스저장실 | 34.76 | 34.76 | | 다툼없음 | | | | | 34.76 |
| | 536 | #3,4 질소가스저장실 | 74.00 | 74.00 | | 다툼없음 | | | | | 74.00 |
| | 537 | 분석실가스저장고 | 17.64 | 17.64 | | 다툼없음 | | | | | 17.64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근거 기재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38 | #3 서비스가스창고-1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539 | #4 서비스가스창고-2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540 | #5 서비스가스창고-3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541 | #6 서비스가스창고-4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542 | 탈황설비 석회석슬러리 제조동 | 1,152.00 | 1,152.00 | | 다툼없음 | | | | | 1,152.00 |
| | 543 | 탈황설비 석고저장건물 | 2,072.90 | 2,072.90 | | 다툼없음 | | | | | 2,072.90 |
| | 544 | 탈황설비 석고반출장 | 155.15 | 155.15 | | 다툼없음 | | | | | 155.15 |
| | 545 | 탈황설비 석고탈수동 | 1,440.00 | 1,440.00 | | 다툼없음 | | | | | 1,440.00 |
| | 546 | 탈황설비 수처리건물 | 512.00 | 512.00 | | 다툼없음 | | | | | 512.00 |
| | 547 | 탈황설비 주제어동 | 2,303.67 | 2,303.67 | | 다툼없음 | | | | | 2,303.67 |
| | 548 | 탈환설비 주제어동 | 2,538.00 | 2,538.00 | | 다툼없음 | | | | | 2,538.00 |
| | 549 | 탈황설비 폐수처리동 | 1,575.23 | 1,575.23 | | 다툼없음 | | | | | 1,575.23 |
| | 550 | 탈황설비 터터(TT)-01 | 107.39 | 107.39 | | 다툼없음 | | | | | 107.39 |
| | 551 | 탈황설비 터터(TT)-02 | 313.57 | 313.57 | | 다툼없음 | | | | | 313.57 |
| | 552 | 탈황설비 터터(TT)-03 | 156.81 | 156.81 | | 다툼없음 | | | | | 156.81 |
| | 553 | 탈황설비 터터(TT)-04 | 417.29 | 417.29 | | 다툼없음 | | | | | 417.29 |
| | 554 | 탈황설비 터터터(TTT)-01 | 595.92 | 595.92 | | 다툼없음 | | | | | 595.92 |
| | 555 | 탈황설비 엘브이(LV)-02 | 145.54 | 145.54 | | 다툼없음 | | | | | 145.54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경제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56 | 탈황설비 #3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 | 557 | 탈황설비 #4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 | 558 | 탈황설비 #5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 | 559 | 탈황설비 #6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 | 560 | 복합 주제어건물-1 | 4,427.79 | 4,427.79 | | 다툼없음 | | | | | 4,427.79 |
| | 561 | 복합 주제어건물-2 | 4,427.79 | 4,427.79 | | 다툼없음 | | | | | 4,427.79 |
| | 562 | 복합 #1 가스터빈건물-1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563 | 복합 #2 가스터빈건물-1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564 | 복합 #3 가스터빈건물-2 | 1,190.35 | 1,190.35 | | 다툼없음 | | | | | 1,190.35 |
| | 565 | 복합 #4 가스터빈건물-2 | 1,190.35 | 1,190.35 | | 다툼없음 | | | | | 1,190.35 |
| | 566 | 복합 #5 가스터빈건물-3 | 1,093.45 | 1,093.45 | | 다툼없음 | | | | | 1,093.45 |
| | 567 | 복합 #6 가스터빈건물-3 | 1,093.45 | 1,093.45 | | 다툼없음 | | | | | 1,093.45 |
| | 568 | 복합 #7 가스터빈건물-4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569 | 복합 #8 가스터빈건물-4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570 | 복합 #1 스팀터빈-1 | 9,387.03 | 9,387.03 | | 다툼없음 | | | | | 9,387.03 |
| | 571 | 복합 #2 스팀터빈-1 | 9,387.02 | 9,387.02 | | 다툼없음 | | | | | 9,387.02 |
| | 572 | 복합 #3 스팀터빈-2 | 9,387.03 | 9,387.03 | | 다툼없음 | | | | | 9,387.03 |
| | 573 | 복합 #4 스팀터빈-2 | 9,387.02 | 9,387.02 | | 다툼없음 | | | | | 9,387.02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원고 주장의 허본 위법 사유 기재 게시일자 : 2017-08-23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 574 | 복합 #1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 | 998.51 |
| | 575 | 복합 #2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 | 998.51 |
| | 576 | 복합 #3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 | 998.51 |
| | 577 | 복합 #4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 | 998.51 |
| | 578 | 복합 #5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 | 998.51 |
| | 579 | 복합 #6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 | 998.51 |
| | 580 | 복합 #7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 | 998.51 |
| | 581 | 복합 #8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 | 998.51 |
| | 582 | 복합 공기압축기실및 비상발전기실 | 245.58 | 245.58 | | 다툼없음 | | | | | | | 245.58 |
| | 583 | 복합 종합창고 | 3,534.84 | 3,534.84 | | 다툼없음 | | | | | | | 3,534.84 |
| | 584 | 복합 유지창고 | 365.06 | 365.06 | | 다툼없음 | | | | | | | 365.06 |
| | 585 | 복합 염소주입실 | 252.58 | 252.58 | | 다툼없음 | | | | | | | 252.58 |
| | 586 | 복합 급수펌프실 | 76.78 | 76.78 | | 다툼없음 | | | | | | | 76.78 |
| | 587 | 복합 순수공급펌프실 | 92.81 | 92.81 | | 다툼없음 | | | | | | | 92.81 |
| | 588 | 복합 연료유공급펌프실 | 204.52 | 204.52 | | 다툼없음 | | | | | | | 204.52 |
| | 589 | 복합 해수취수펌프실 | 173.07 | 173.07 | | 다툼없음 | | | | | | | 173.07 |
| | 590 | 복합 #1,2 질소가스창고-1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 | 25.97 |
| | 591 | 복합 #3,4 질소가스창고-2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 | 25.97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92 | 복합 #5,6 질소가스창고-3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 | 593 | 복합 #7,8 질소가스창고-4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 | 594 | 복합경비실 | 57.86 | 57.86 | | 다툼없음 | | | | | 57.86 |
| | 595 | 복합 망루-1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596 | 복합 망루-2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597 | 복합 망루-3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598 | 복합 망루-4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599 | 복합 망루-5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600 | 콘테이너 | 36.00 | 36.00 | | 다툼없음 | | | | | 36.00 |
| | 601 | 탈황 #3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 | 602 | 탈황 #3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603 | 탈황 #4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 | 604 | 탈황 #4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605 | 탈황 #5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 | 606 | 탈황 #5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607 | 탈황 #6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 | 608 | 탈황 #6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609 | 복합발전용 가스분석기실 | 17.50 | 17.50 | | 다툼없음 | | | | | 17.5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재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610 | 방카 | 7.20 | 7.20 | | 다툼없음 | | | | | 7.20 |
| | 611 | 본진측정실 | 32.00 | 32.00 | | 다툼없음 | | | | | 32.00 |
| | 612 | 망루 | 7.90 | 7.90 | | 다툼없음 | | | | | 7.90 |
| | 613 | 경비실 | 10.00 | 10.00 | | 다툼없음 | | | | | 10.00 |
| | 614 | 주산면 화평리 정수장 | 132.19 | 132.19 | | 다툼없음 | | | | | 132.19 |
| | 615 | 기타건물 | 5,777.66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원고가 신고절차 없이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건물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많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18호증 1내지3<br>을제36호증 1<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5,838.95에서 5,777.66로 면적 정정 | 경비실 351.25㎡(을제18호증1)는 2005년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 컨테이너등(을제18호증2) 중 순번 25, 26 기재 건물 84.96㎡ 은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 나머지 건축물은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5,341.45 |
| 합계 | | | **3,772,874.92** | **471,826.48** | - | - | - | - | - | | **1,104,039.12**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근거 기재 | 원고 주장의 허부 위법 사유 기재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참고(순번341번)

| 컨베이어설비명 | 피고 면적 | 오류 내용 | 인정 면적 | 차이 |
|---|---|---|---|---|
| BC43A/B의 A | 1,142.10 | 수평투영 오류 | 1,057.50 | 84.6 |
| BC4A/B | 827.51 | 상동 | 788.5 | 39.01 |
| BC22 | 397.59 | 상동 | 365.6 | 31.99 |
| BC23 | 391.5 | 상동 | 360 | 31.5 |
| BC12A/B의 A | 2,071.30 | 상동 | 1,770.23 | 301.07 |
| BC61 | 531.81 | 상동 | 467.4 | 64.41 |
| BC62 | 330.72 | 상동 | 300.3 | 30.42 |
| BC63 | 396.4 | 상동 | 328 | 68.4 |
| BC64 컨베이어 | 402.3 | 상동 | 346.5 | 55.8 |
| BC66A/B | 598.98 | 상동 | 475.7 | 123.28 |
| BC53A/B의 C | 988.22 | 상동 | 904.62 | 83.6 |
| BC40A/B의 A | 2,302.30 | 상동 | 1,995 | 307.3 |
| BC33A/B | 973.44 | 합계 오류 | 802.42 | 171.02 |
| BC32A/B | 775.96 | 합계 오류 | 664.48 | 111.48 |
| | | | 합계 | 1503.8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별지3 2( 상 연관적 전정료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 | 석회석부두 | 2,573.00 | 0.00 | 비과세대상 | 1. 평탄화 목적으로 토지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으로서 지번이 부여된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89).<br>2.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포함되는 시설물은 수조, 저유소,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제한되는 것임(본건 부과처분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석회석부두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 갑가제7호증 | 본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항만청으로부터 항만시설로 임차한 시설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 제2항)의 적용 시기가 2007.1.1이므로 동시설물은 2007년 귀속분부터 과세 제외 대상임.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을제3호증1: 항만시설 인수인계서<br>을제41호증: 항만시설 임대내역 | 선박에서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항만시설로서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2,573.00 |
| | 2 | 물양장 | 6,558.00 | 0.00 | 비과세대상 | 1. 회사가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58).<br>2. 물양장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 상동 | 상동 | 상동 | 하역한 자재 등을 적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야적장으로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6,558.00 |
| | 3 | 호 안 | 6,460.00 | 0.00 | 비과세대상 | 1. 인위적 가공없이 토지위에 돌을 엎어 놓은 것으로서 시설물아님.<br>2.호안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 상동 | 상동 | 상동 | 사업장 시설을 해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시설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6,460.00 |
| | 4 | 케이블터널 | 38,697.36 | 7,346.57 | 면적산출 오류 | 1.원고가 제출한 자산현황집계표상 숫자는 케이블 면적이 아니라 길이임.<br>2. 도면을 기초로 산출한 케이블터널 면적은 기제출한 케이블터널 현황대로 7,346.57임 | 케이블터널현황(갑가제14호증)<br>공문(갑가제25호증) |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고 당초 56,981.5로 계산되었다가 착오 면적(17,684.14)을 제외하고 증액경정(2011.4월)시 38,697.36으로 정정과세 하였고, 산출도면과 현황사진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 확인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음. | 을제25호증1:면적산출내역 및 집계표<br>을제25호증2내지4: 산출도면<br>을제25호증5내지220: 현황사진<br>을제29호증: 케이블터널도면<br>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면적 누락분<br>참고자료10: 복합배수케이블도면 | 을 제2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면적을 인정함. | 38,697.36 |
| | 5 | 케이블보호철판 | 1.50 | 0.00 | 비과세대상 | 1.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을 임시로 둘러둔 것임(정착구조물 아님)<br>2. 정착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임. | | 케이블보호를 위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과세대상에 이견이 없는 시설로 원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을제25호증14: 현황사진<br>참고자료1: 대법원2000두1744<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정착 구조물로 보이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6 | EDB 맨홀 | 2.56 | 0.00 | 기과세 | 1.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br>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 갑가 제55호증 |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캐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캐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 담당자는 캐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br>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br>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br>*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 을제25호증35,36<br>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입증사진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7 | 케이블 트레이 | 110.00 | 0.00 | 면적중복 |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 제3호증의 3 제17면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산출되어야 함. |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br>을제25호증37 | 컨베이어벨트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연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8 | EDB 맨홀 | 26.94 | 0.00 | 기과세 | 1. 기력 1~6호기 캐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br>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 갑가 제55호증 |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캐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캐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담당자는 캐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br>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br>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br>*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 을제25호증101내지 103<br>을제25호증128<br>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사진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9 | 케이블시설 | 0.70 | 0.00 | 면적중복 | 1. 케이블 터널면적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과세<br>2. 케이블터널의 부속시설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 갑가제3호증 1내지3 |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기에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25호증104<br>을제45호증: 을제25호증 104위치 입증사진 | 별도의 시설물이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0 | 케이블트레이 및 전선관 | 1,487.62 | 0.00 | 면적중복 | 1.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br>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 따라, 구조적인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시설물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 갑가제3호증의 3 제17면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25호증37<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컨베이어벨트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연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1 | 케이블 터널 345kV | 0.00 | 898.36 | 면적산출오류 | 피고가 345kV케이블 터널을 13078.36㎡으로 과세하였으나, 898.36㎡임 | | 피고가 면적 실측을 통하여 재산정한 결과임. | 을제25호증의 1내지 221<br>*2015.11.17 석명명령 제출 자료에 따른 당초 13,078.36에서 0로 면적정정<br>(순번목록 4 케이블터널내 면적중복) | | 0 |
| | 12 | 취수장케이블 트레이 | 858.00 | 0.00 | 면적중복 |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산출과 중복됨<br>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제3호증3 |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을제25호증15<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취수장과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연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3 | 취수장케이블 트레이 | 433.20 | 0.00 | 면적중복 |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산출과 중복됨<br>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제3호증1 |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을제25호증208,209<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상동 | 0.00 |
| | 14 | CWP 케이블 트레이 | 30.00 | 0.00 | 면적중복 | 해당시설은 CWP 내부에 위치하여 CWP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제3호증3, 갑가제15호증 |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을제25호증84<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CWP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로 연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5 | 옹벽 1,2,3 등 | 19,173.62 | 0.00 | 비과세대상 | 사업장경계, 비탈 경계, 도로경계턱으로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부합물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 | | 정착구조물의 사전적의미는 '엮어서 만든 물건'으로 지방세실무해설에서도 담장,옹벽 등을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음.<br>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 이며 또한, 원고 자산관리대장에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임. | 을제26호증80내지88,을제26호증89내지92,을제26호증94내지97,을제26호증101내지105,을제116,117 , 을제26호증116내지119, 을제26호증27내지129<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3,698.07에서 19,173.62로 면적 정정 | 사업장 시설이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담, 경계, 제방, 방파제 등의 시설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19,173.62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 16 | 옹벽24 | 1,040.00 | 0.00 | 비과세대상 | 사업장의 경계밖이며, 국가소유 구거의 옹벽임(영보리 741) | 갑가 제57호증, 갑가 제58호증 | 제방호안으로 공작물에 해당되어 안분계산대상임. 또한,을제47호증 1,2의 현황사진과 같이 해당구거는 원고가 수문시설까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에 대해서만 산출함. (구거는 사업장면적에 미포함) 또한 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어야 함. | 을제26호증106<br>을제47호증1,2: 수문시설현황사진<br>참고자료6: 지방세해설자료 | |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17 | 옹벽25-27 | 3,194.12 | 0.00 | 비과세대상 | 비탄방지펜스의 기초로서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별도 시설물 아님 | | 동 시설은 발전연료인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과 석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 을제1호증4 9,10면: 원고법인장부<br>을제26호증107,108 | |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의 외부 유출과 저탄장으로의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담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 3,194.12 |
| | 18 | 옹벽28-30 | 7,233.40 | 0.00 | 비과세대상 | 사업장 울타리 밖이며, 토지에 돌을 올려 덮어놓은 것임 | | 해안침식으로부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로 비탈면에 시설한 공작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 을제26호증109내지111<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자료 | |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19 | 옹벽 31,32 | 13,185.00 | 0.00 | 비과세대상 | 충청남도가 소유 및 관리중인 제방(고정리 382, 송학리 996) | 갑가 제59호증, 갑가 제60호증 | 항만시설의 호안과 같은 시설로 공작물이며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자산관리대장상에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을제1호증4 24면: 회처리제방이용내역<br>을제26호증112,113 | | 이 목록 순번 3번 기재 호안과 같은 용도의 시설물로, 원고가 충청남도로부터 이용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을 제1호증의2),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함. | 13,185.00 |
| | 20 | 옹벽34-1,34-2,54~56 | 8,290.65 | 0.00 | 비과세대상 |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 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br>※ 침전조 : 탄과 섞인 빗물이 발전소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탄을 침전시킴 | | 공작물인 저수조 호안으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임. 또한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구조물을 안분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임. | 을제26호증114,을제26호증130 | | 저탄장 침전조를 만들기 위해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8,290.65 |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 인정 면적(㎡) | |
| | 21 | 옹벽57,58 | 1,581.20 | 0.00 | 비과세대상 |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br>2. 우수 방류구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 | 석탄 등이 우수로 인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 을제26호증131<br>참고자료: 대법원2000두1744 | 상동 | | 1,581.20 | |
| | 22 | 옹벽59~62 | 3,152.40 | 0.00 | 비과세대상 |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br>2. 회처리장에 쓰이는 물이 지나는 통로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 | 설계도면상에 return pond로 표기되어 있고, 회처리장은 원고사업장의 기간시설로 동 시설가동을 위해서 쓰이는 용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되는 정착구조물 임. | 을제26호증132<br>을제26호증133 | 상동 | | 3,152.40 | |
| | 23 | 옹벽63 | 27,280.00 | 0.00 | 비과세대상 | 국가소유 구거(영보리 741, 산36-2) | 갑가 제57,58호증 | 북부회처리장의 침식과 구거의 유속으로부터 회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벽을 축조한 제방형 호안인 공작물임.<br>※구거면적 산출한 것이 아님. | 을제26호증134<br>을제47호증: 원고회사수문시설<br>을제47호증2: 수문출입구사진 |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 0.00 | |
| | 24 | 옹벽11 | 304.92 | 0.00 | 비과세대상 | 복합후문앞 배수로로서 배수로는 전체 기과세됨 | 갑가제3호증의3 1면,<br>갑가제3호증의2 1면<br>갑가제3호증의3 5면 | 폭 30.2m, 길이 42.35m의 시설물로 배수로로 기과세되지 않았음. 배수로 적용시, 1,278.97㎡에 달하나 배수로 면적으로 산출된 내역이 없는 상황임.<br>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급배수시설로 적용하지 못하고 시설물양옆 옹벽시설에 대해서만 적용 | 을제26호증93<br>을제60호증14: 외곽배수로 계통설명서 | 배수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으로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이 면적에는 배수로 면적과는 별도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 | | 304.92 | |
| | 25 | 옹벽17 | 23.46 | 0.00 | 기과세 | 옹벽이 아닌 케이블터널 시설임 | | 케이블터널시설과는 별도인 복합수조옆 공작물시설임. | 을제26호증98<br>을제46호증: 옹벽시설 사진 보완자료 | 사업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사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옹벽에 해당하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케이블터널 시설과 별도로 시공한 시설물로 보임. | | 23.46 | |
| | 26 | 옹벽64~66 | 3,570.00 | 0.00 | 기과세 | 우수배수로로 기과세됨 | | 원고주장 배수로는 구내도로변의 우수배수로와 저탄장내의 우수배수로 일부이며, 외곽배수로의 경우 폭1.8m와 4.4m 및 1.5m로 기과세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 없이 기과세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것 임. | 을제26호증135,136 | 배수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으로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우수배수로 면적과는 별도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 | | 3,570.00 | |
| | 27 | 2부두Air라인 | 11.50 | 11.50 | | 다툼 없음 | | | | | | 11.50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8 | 스팀관 | 150.00 | 150.00 | | 다툼없음. | | | 을제32호증67,68 | | 150.00 |
| | 29 | 스팀관 | 819.00 | 819.00 | | 다툼없음. | | | 을제32호증23,24 | | 819.00 |
| | 30 | 법면 | 57,140.00 | 0.00 | 비과세대상 | 1. 법면은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br>산비탈은 토지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br>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면은 별도 시설물이 없는 단순 산비탈임 | 갑가제72호증 | 을제37호증5내지6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상에 옹벽,반원흄관,블록시설을 하고 있어 단순 산비탈이라는 원고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동 시설은 빗물등에 의한 토사의 유출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원고 사업장에 직접사용되는 시설임. | 을제37호증2내지4: 계산면적<br>을제37호증5,6: 시설물시설내역<br>을제39호증1내지4: 옹벽,반원흄관 콘크리트 블록시설 현황 사진 | 법면 지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흄관, 배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 57,140.00 |
| | 31 | CWP 옆 구조물 | 6,045.20 | 0.00 | 비과세대상 | 1.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음.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님<br>2.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니며, 피고가 주장하는 면적은 당초 과세처분시 피고 스스로가 과세근거로 삼았던 면적보다도 증가한 것으로서 피고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추가한 면적임. | 갑가제15호증, 갑가제3호증 1내지3, 갑가제26호증 |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사용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시설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CWP옆 콘크리트 구조물과 취수장옆 구조물 및 옹벽시설과 기계장치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임. (을제26호증1~137로 입증 완료) | 을제26호증1~137<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자료<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94,073.97에서 6,045.2로 면적 정정 | 시설물 보존과 사용을 위하여 타설하여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므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로서 연면적에 포함.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계장치와 별개의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을제15호증의 순번 17-19, 을제26호증의1) | 6,045.20 |
| | 32 | POND(연못) | 21,575.25 | 0.00 | 비과세대상 | 1. 피고가 주장하는 폰드는 저탄장 침전로로서 바닥도 흙이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br>2.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POND는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 | 저탄장에서 비산하는 탄과 외부로 유출되는 탄 및 연탄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에 의한 이송 중 떨어지는 낙탄 등을 동 시설로 유도 침전시켜 처리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물을 가두기 위해 견고한 옹벽 등으로 축조한 일종의 수조형태의 옥외저장시설물임. 수력발전소의 댐 시설을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POND (연못)시설은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함.(사진자료 등을 통해 기입증 완료함)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br>을제26호증129내지133<br>을제34호증 | 바닥 자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제방을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닥 면적 자체는 제외되어야 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3 | 공업용수저수지 | 115,153.00 | 0.00 | 비과세대상 | 피고가 주장하는 저수지는 인위적 시설물이 아닌 단순 저수지이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오포리 720잡). 마을에서는 깊은골 저수지라 칭하고 있음. | |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순수(원수)공급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축조한 옥외저장시설물로 송수관을 연결하여 전력생산시설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한 일종의 수조형태를 갖추고 있는 정착구조물임. 동시설과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동시설은 당연히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br>을제74호증1내지3 | 상동 | 0.00 |
| | 33 | 남부회처리장 | 1,360,366.00 | 0.00 | 비과세대상 |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br>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 | 유연탄 연소후 발생되는 탄재를 물과함께 섞어 이송관을 통하여 배출후 저장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슬러지 형태의 유해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탄재가 바다와 인근 농경지 및 마을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옹벽과 견고한 제방을 축조하여 시설한 인위적 정착구조물임. 또한 동시설은 원고가 발전소 설립 단계부터 회처리장 건설계획(을제75호증)을 수립하고 건설 준공한 원고의 사업장 중 기간시설이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기준은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인적설비인 종업원과 물적설비인 사업장 연면적으로 사업장 연면적은 법인소득발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건물을 포함한 모든 정착물을 의미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대법원의 판단임. 동시설과 형태 및 이용적 측면에서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br>을제75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4 | 북부회처리장 | 1,072,596.00 | 0.00 | 비과세대상 |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br>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 | 상동 | 상동 | 상동 | 0.00 |
| | 다툼없는 기타시설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35 | 케이블 터널 154kV | 336.14 | 336.14 | | 다툼없음 | | |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 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36 | 항만시설(1부두) MT DOCK | 7,242.00 | 7,242.00 | | 다툼없음 | | | | | 7,242.00 |
| | 37 | ACESS ROAD | 1,322.00 | 1,322.00 | | 다툼없음 | | | | | 1,322.00 |
| | 38 | CAT WALK-1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39 | CAT WALK-2 | 78.00 | 78.00 | | 다툼없음 | | | | | 78.00 |
| | 40 | CAT WALK-3 | 40.00 | 40.00 | | 다툼없음 | | | | | 40.00 |
| | 41 | CAT WALK-4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42 | MD-1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 | 43 | MD-2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 | 44 | MD-3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 | 45 | MD-4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기타 시설 | 46 | 항만시설(2부두) MT DOCK | 7,574.00 | 7,574.00 | | 다툼없음 | | | | | 7,574.00 |
| | 47 | ACESS ROAD | 1,206.00 | 1,206.00 | | 다툼없음 | | | | | 1,206.00 |
| | 48 | CAT WALK-1 | 136.00 | 136.00 | | 다툼없음 | | | | | 136.00 |
| | 49 | CAT WALK-2 | 40.00 | 40.00 | | 다툼없음 | | | | | 40.00 |
| | 50 | CAT WALK-3 | 63.00 | 63.00 | | 다툼없음 | | | | | 63.00 |
| | 51 | CAT WALK-4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52 | MD-5 | 200.00 | 200.00 | | 다툼없음 | | | | | 200.00 |
| | 53 | MD-6 | 200.00 | 200.00 | | 다툼없음 | | | | | 200.00 |
| | 54 | MD-7 | 200.00 | 200.00 | | 다툼없음 | | | | | 200.00 |
| | 55 | 회아송관받침대 | 28,396.00 | 28,396.00 | | 다툼없음 | | | | | 28,396.00 |
| | 56 | 케이블터널 | 481.00 | 481.00 | | 다툼없음 | | |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 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57 | 케이블터널 | 214.00 | 214.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 | 58 | 케이블터널 | 1,089.00 | 1,089.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 | 59 | 케이블터널 | 1,797.00 | 1,797.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60 | 케이블터널 | 1,130.00 | 1,130.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 | 61 | BC-1A/B | | | | 다툼없음 | | | 이 목록 순번 342번 기재 7, 8호기 컨베이어 설비에 중복되어 면적 삭제 | | |
| | 62 | BC-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3 | BC-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4 | BC-4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5 | BC-4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6 | BC-4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7 | BC-8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8 | BC-9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9 | BC-22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0 | BC-23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1 | BC-1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 인정 면적(㎡) | |
| | 72 | BC-61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 | 73 | BC-62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 | 74 | BC-63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 | 75 | BC-64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 | 76 | BC-66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 | 77 | BC-11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 | 78 | BC-51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 | 79 | BC-5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 | 80 | BC-5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 | 81 | BC-40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 | 82 | BC-36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 | 83 | BC-37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84 | BC-3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5 | BC-3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6 | 구조물(북부남쪽제방) | 5,040.00 | | 불특정 |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이 안됨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1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회처리장을 유지하는 제방으로 사업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5,040.00 |
| | 87 | 구조물(북부동쪽제방) | 14,25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2 | 상동. 다만 면적은 피고 제출 증거에 따라 6,256㎡(= 8m × 782m) 인정함. | 6,256.00 |
| | 88 | 구조물(북부서쪽제방) | 8,635.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3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회처리장을 유지하는 제방으로 사업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8,635.00 |
| | 89 | 구조물(남부서쪽제방) | 4,99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4 | 상동 | 4,992.00 |
| | 90 | 구조물(남부동쪽제방) | 5,836.7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5 | 상동 | 5,836.71 |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 | 91 | 저탄장 | 138,252.80 | | 불특정 | 상동 | | 저탄장시설은 외국에서 수입한 유연탄을 부두에서 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을 통하여 이송 저장 후 기계장치를 이용 보일러에 탄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바닥에는 철재 빔시설을 하여 탄 저장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방지하였고 주위에는 견고한 옹벽으로 탄의 외부 유출 방지시설과 함께 유연탄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산탄 방지시설을 하는 등 동 시설은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됨은 다툼의 여지가 없음.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29~231, 1481p<br>을제83호증 6<br>*2015.11.17 석명명령자료 제출시, 변경면적 220,761㎡으로 제출했으나 면적착오이기에 당초면적으로 수정.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매립지 침하를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철재 파이프를 바닥 면에 매설하여 만든 저탄장시설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138,252.80 | |
| | 92 | 남부회사장선착장 | 175.00 | | 불특정 | 상동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p | 시설물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175.00 | | |
| | 93 | 북부회사장교량 | 24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7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교량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240.00 | | |
| | 94 | 공업용수재방 | 1,650.00 | | 불특정 | 상동 | | 사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 설계계산서 11-13P<br>을제83호증 8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1,650.00 | | |
| | 다툼없는 내부도로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및 시기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95 | 해안도로<br>(기력1,2호기) | 24,000.00 | | |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 | 각종 기계장비의 이동과 운행, 종업원의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 원고가 사업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고, 또한 지방세실무 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을제64호증 1내지48<br>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포장도로는 차량 운행 등 사업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24,000.00 |
| | 96 | 주도로<br>(기력1,2호기) | 8,5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8,560.00 |
| | 97 | 간선도로<br>(기력1,2호기) | 22,4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2,400.00 |
| | 98 | 보조간선도로<br>(기력1,2호기) | 2,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080.00 |
| | 99 | 주도로<br>(기력3,4호기) | 2,9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960.00 |
| | 100 | 간선도로<br>(기력3,4호기) | 3,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080.00 |
| | 101 | 보조간선도로<br>(기력3,4호기) | 5,4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5,480.00 |
| | 102 | 주도로<br>(기력5,6호기) | 2,9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960.00 |
| | 103 | 간선도로<br>(기력5,6호기) | 3,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080.00 |
| | 104 | 보조간선도로<br>(기력5,6호기) | 5,4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5,480.00 |
| | 105 | 내부도로<br>(복합 유수분리기 옆) | 104.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04.00 |
| | 106 | 내부도로<br>(복합 터빈건물 뒤) | 1,6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680.00 |
| | 107 | 내부도로<br>(복합 경유탱크 옆) | 3,878.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878.00 |
| | 108 | 내부도로<br>(복합 1호기) | 411.6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411.6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 109 |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앞) | 8,257.46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8,257.46 |
| | 110 |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뒤) | 421.84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421.84 |
| | 111 |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원프랜트입구) | 1,7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1,760.00 |
| | 112 | 내부도로 (복합원프랜트입구~취수장입구) | 2,8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2,880.00 |
| | 113 |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입구~배수관로) | 4,0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4,000.00 |
| | 114 | 내부도로 (복합배수관로~후문앞) | 1,44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1,440.00 |
| | 115 | 내부도로 (복합후문앞~후문경비실) | 2,32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2,320.00 |
| | 116 | 내부도로 (복합후문입구~유수분리기옆) | 4,64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4,640.00 |
| | 117 | 내부도로 (본관입구~후문입구) | 5,6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5,600.00 |
| | 118 | 내부도로 (본관~식당입구) | 3,12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3,120.00 |
| | 119 | 내부도로 (구본관앞~우회도로) | 1,9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1,960.00 |
| | 120 | 내부도로 (테니스장앞~횡단도로) | 1,6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1,680.00 |
| | 121 | 내부도로 (종합창고뒤~횡단도로) | 1,92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1,920.00 |
| | 122 | 내부도로 (종합창고~간선도로) | 1,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 | 상동 | 1,080.00 |

다툼없는 주차장 면적 특정내역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 123 | 주차장 (기력발전소 교육원) | 500.00 | | |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 | 주차장시설은 원고가 각종 기계장비의 주차와 종업원의 주차 등 원고의 사업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되고, 또한 지방세설무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을제65호증 1내지23<br>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포장된 주차장은 차량 주, 정차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500.00 |
| | 124 | 주차장 (기력발전소 구본관앞) | 1,2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200.00 | |
| | 125 | 주차장 (기력발전소 구본관뒤) | 1,575.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575.00 | |
| | 126 | 주차장 (기력발전소 종합창고앞) | 1,2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200.00 | |
| | 127 | 주차장 (기력발전소 종합창고옆) | 87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870.00 | |
| | 128 | 주차장 (기력발전소 식당앞) | 3,0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000.00 | |
| | 129 | 주차장 (기력발전소 본관옆) | 1,0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000.00 | |
| | 130 | 주차장 (기력발전소 본관앞) | 2,7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700.00 | |
| | 131 | 주차장 (기력1호기 변압기옆) | 382.32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82.32 | |
| | 132 | 주차장 (기력2호기옆) | 946.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946.00 | |
| | 133 | 주차장 (기력3호기옆) | 1,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080.00 | |
| | 134 | 주차장 (기력3호기변압기옆) | 156.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56.00 | |
| | 135 | 주차장 (사일로앞) | 6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600.00 | |
| | 136 | 주차장 (기력6호기옆) | 1,477.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477.00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거기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 | 137 | 주차장 (복합발전소옆) | 875.96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875.96 | | |
| | 138 | 주차장 (복합 전력기술앞) | 134.64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34.64 | | |
| | 139 | 주차장 (복합 경유저장탱크옆) | 355.6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55.60 | | |
| | 140 | 주차장 (복합발전소옆) | 256.8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56.80 | | |
| | 141 | 주차장 (복합발전소앞) | 1,896.69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896.69 | | |
| | | **다툼없는 가스관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 142 | N2저장조관련 가스관 | 2.04 | 2.04 | | 다툼없음 | | | | | 2.04 | | |
| | 143 | 가 스 관 | 504.51 | 504.51 | | 다툼없음 | | | | | 504.51 | | |
| | | **다툼없는 복개시설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 144 | 복개시설(취수장다리) | 1,293.18 | 1,293.18 | | 다툼없음 | | | | | 1,293.18 | | |
| | 145 | 스팀배관맨홀 | 16.93 | 0.00 | 기과세 | 피고가 관련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는 을 제25호증의 33에서는 분명히 "케이블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 외에 을 제42호증에서도 정확히 어떤 시설물을 추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 기력2호기 연돌뒷편 및 기력1,2호기 저장탱크옆에 위치하고 있고 케이블 보관시설(맨홀)로 과세사실없음.(중복아님) | 을제25증33: 현황사진<br>을제42호증: 을제25호증33 보완사진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 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 | 146 | 우수맨홀 | 8.05 | 0.00 | 기과세 | 갑가 제3호증의1 5면, 갑가 제3호증의2 1면,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각 우수배수관로(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 갑가제3호증의1내지3 | 중복되지 않은 맨홀임. | 을제25호증79,80, 을제25호증129<br>을제34호증6내지9<br>을제44호증3,4: 을제25호증79 보완사진<br>을제58호증1내지4: 원고주장오류입증자료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 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제25호증의 5의 62, 63, 107번), 제외함. | 0.00 | | |
| | 147 | 우수맨홀 | 7.50 | 0.00 | 기과세 |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 | 6호기 플라이애쉬펌프시설로 기계장치임. 중복사항이 아님. | 을제31호증30 | 기과세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7.50 | | |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급배수시설 | 148 | 우수배수로 | 13,655.65 | 0.00 | 기과세 | 우수배수로로 기과세한 사안이며,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떤 시설물이 추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갑가제56호증의3, 14, 17, 21, 22 | 우수배수로와 전혀 다른 엉뚱한 도면에 해당시설물을 표기후 증복주장. | 을제34호증1내지16<br>을제58호증1내지4: 갑가제56호증이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입증하는 현황사진. | | | 을 제34호증의 1 기재 목록 중 소화관로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면적으로 기과세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 13,655.65 |
| | | **다툼없는 급배수시설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 149 |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 2,637.00 | 2,637.00 | | 다툼없음 | | | | | | | 2,637.00 |
| | 150 | 냉각수 배수관로 | 30.10 | 30.10 | | 다툼없음 | | | | | | | 30.10 |
| | 151 | STRUCTURE<br>(배수관로 말단구조물) | 327.58 | 327.58 | | 다툼없음 | | | | | | | 327.58 |
| | 152 | 배수관로 | 3,351.92 | 3,351.92 | | 다툼없음 | | | | | | | 3,351.92 |
| | 153 |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 8,672.00 | 8,672.00 | | 다툼없음 | | | | | | | 8,672.00 |
| | 154 | EXIST SANTARY WATER<br>(오수관) | 301.45 | 301.45 | | 다툼없음 | | | | | | | 301.45 |
| | 155 | 냉각수배수관로<br>(집수정포함) | 8,254.53 | 8,254.53 | | 다툼없음 | | | | | | | 8,254.53 |
| | 156 | STUCTURE(배수관로말단구조물) | 495.32 | 495.32 | | 다툼없음 | | | | | | | 495.32 |
| | 157 | 배수암거 | 2,869.32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4호증 11내지12 | | 이 목록 순번 148번 기재 우수배수로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58 | 배수로(저탄장 앞,뒤) | 3,236.8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4호증 13내지14<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2,643.23에서 3,236.8로 면적 정정<br>(을제34호증 13: 1,694㎡,<br>을제34호증 14: 1,542.8㎡) | | 이 목록 순번 148번 기재 우수배수로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59 | 외곽배수로 | 47,72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br>을제83호증 9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47,720.00 |
| | 160 | BOXCUIYERT | 1,68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br>을제83호증 10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680.00 |
| | 161 | 배수로 | 1,948.1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26호증 93 | 옹벽11에 의해 형성된 배수로임. 다만, 피고가 이 목록 순번 24번(옹벽 11)에서 옹벽11 면적 304.92㎡를 포함한 배수로 전체 면적이 1,278.97㎡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차이 면적인 974.05㎡를 초과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한도에서 면적 인정함. | 974.05 |
| | 162 | HUME PIPE | 118.9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br>을제83호증 11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18.92 |
| | 163 | 흄관 | 2,52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423p<br>을제83호증 12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520.00 |
| | 164 | 1~6호기 연돌면적 | 3,350.16 | 622.90 | 면적산출오류 | 피고의 면적산출이 잘못되었음. 피고는 5247.6㎡으로 과세하였는데, 실제 면적은 622.90㎡임<br>※ 연돌 : 연소가스가 보일러에서 나와 대기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통로.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공작장치임. | 기력도면(갑가 제16호증),<br>복합도면(갑가 제27호증) | 지방세법상 기계장치는 「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는것으로, 연돌은 원고가 과거부터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해 왔고 보조참가인(서천군)등에서도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상황임. | 을제8호증: 연돌설계도면<br>을제27호증1~12: 연돌내부기계장치 및 연돌평판 사진 등<br>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br>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장치안내서<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5,247.6에서 3,350.16로 면적 정정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돌의 지하 기초까지 포함하여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면적을 계산하면 면적 산출에 오류가 없음. | 3,350.16 |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 165 |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 연돌 | 3,320.64 | 0.00 | 기과세, 비과세대상 | 1. 피고가 2009.11월 복합연돌로 과세하고, 2011.4월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연돌로 다시 과세함. 또한 보일러연돌은 보일러 건물의 일부이며, 별도의 시설이 아님. 가스연돌 또한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연돌은 기계장치 아님). 2. 을 제42호증을 보더라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되며, 갑가 제61호증을 통해 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1호증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고는 건물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것이라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건축물과 유사한 구조물임에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미포함되어 연돌은 생산시설의 일부인 기계장치로 포함되어야 함. | 을제27호증7내지11 을제42호증: 건물과 분리된 연돌사진 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안내서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3,320.64 |
| | 166 | 예비변압기 | 224.00 | 0.00 | 비과세대상 | 1. 야적된 자재임. 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갑가 제69호증을 보면 해당 예비변압기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9호증 | 스위치야드등이 시설되어 있어 현재 사용중이거나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변압기임. 또한, 기계장치의 경우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콘크리트로 받침대를 시설하고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시설하고 있는 변압기를 보관만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는 상황임. | 을제31호증101 을제53호증: 스위치야드 시설사진 |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기계장치이므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224.00 |
| | 167 | 연소용공기유입구 | 761.76 | 0.00 | 비과세대상 | 1. 연소용 공기유입구로서 건물의 부속시설임. 2. 가스터빈건물의 일부로서 건물 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을 제49호증의 1 내지 3에서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5호증 |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갑가제65호증은 해당기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현황도임.원고는 건축물입구를 기계장치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임. 건축물 도면 확인없는 주장에 불과함. | 을제31호증80 을제49호증1내지3: 건물과 별도로 시설된 기계장치 지지대 등 현황사진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761.76 |
| | 168 | 유인통풍기 콘크리트구조물 | 8,245.23 | 0.00 | 특정필요 | 피고가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이라는 명칭으로 과세한 건이나, 피고의 호증만 보아서는 면적산출 근거를 알 수 없음. 또한 유인통풍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팬(fan)임. | | 펌프시설 기력1호기 옆에 시설되어 있으며 유인통풍기는 이미 도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콘크리트 구조물은 오폐수처리장의 기계실 출입구임을 증빙한 바 있으나 원고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없이 과세물건이 확인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임. | 을제31호증16, 을제31호증84 을제33호증55 을제50호증: 유인통풍기 위치도면 을제51호증: 유인통풍기 현황사진 을제57호증1내지6: 콘크리트구조물 현황사진 |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로서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7, 8호기 유인통풍기 2,360.9㎡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5,884.33 |
| | 169 | 기계장치 | 18.94 | 0.00 | 비과세대상 | 원고소유 시설물 아님 | | 보령댐으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우해 주산면 화평리 가압장 내의 기계장치며 가압장 관리인이 원고소유 기계장치라 함. | 을제31호증36 을제60호증7: 가압장 취수설비계통 설명서 |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70 | 송풍구 | 2.85 | 0.00 | 기과세 | 1. 7,8호기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2호증 | 을제31호증44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과 별개로 모터와 환풍장치가 시설된 기계장치임.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대로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44<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 171 | 취수장내기계장치 | 21.84 | 0.00 | 기과세 | 1. 취수장으로 과세한 건임<br>2. 해당 시설은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따라서 취수장바닥면적과 별개로 시설된 레일등은 별개로 산출되어야 함. 중복되지 않음. | 을제31호증6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기계장치와 시설물은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21.84 |
| | 172 | HRSG | 644.00 | 30.00 | 면적산출오류 | 1. 1GT 30㎡는 인정. HRSG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br>2. 건물에 연결된 기계장치로서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6호증 | 보일러 건물과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81: 현황사진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644 |
| | 173 | 1,2호기 플라이애쉬사일로백필터 | 116.92 | 0.00 | 기과세 | 1. 비회저장조로 과세한 건임<br>2. 비회저장조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 | 갑가제67호증 | 플라이애쉬 사일로 상단에 위치한 기계장치는 여러대의 모터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터는 사일로와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의거 구조물에 부착된 시설물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95,96<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건축물 옥상에 위치한 기계장치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116.92 |
| | 174 | 증기배출구 | 745.82 | 0.00 | 비과세대상 | 1. 소음기이며, 복합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8호증 | 원고는 당초 해당시설물이 소음기가 아니라고 하다가 피고가 증빙을 통해 입증하자 또다시 건물 외부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방세법에서 건물안의 시설물은 건물로 과세하고 건물외의 시설물은 각각 과세토록하고 있어 원고주장은 근거없음. | 을제31호증99,100<br>을제31호증102, 을제31호증104<br>을제52호증1내지4: 소음기 입증사진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745.82 |
| | 175 | 환풍구 | 168.48 | 0.00 | 비과세대상 | 1. 소음기이며,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 피고가 기계장치로 입증한 사진을 보면 해당시설물안에 기계장치가 시설되어 있고 전원장치등을 통해 구조물안의 기계장치가 가동되도록 시설된 장치임. 따라서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103,을제31호증105,<br>을제31호증10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다만 7, 8호기 부분 40.48㎡는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12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 인정 면적(㎡) | |
| | 176 | 내부공기배출구 | 328.56 | 0.00 | 비과세대상 | 1.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 모터와 배전반 스위치가 있는 건물과 별개의 기계장치임.<br>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106,107,10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 328.56 | |

## 다툼없는 기계장치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 |
|---|---|---|---|---|---|---|---|---|---|---|---|---|---|
| 177 | 취수펌프시설지역 | 1,392.93 | 1,392.93 | | 다툼없음 | | | | | | | 1,392.93 | |
| 178 | CWP STRUCTURE | 960.00 | 960.00 | | 다툼없음 | | | | | | | 960.00 | |
| 179 | CWP크레인 | 392.70 | 392.70 | | 다툼없음 | | | | | | | 392.70 | |
| 180 | SLP크레인 | 896.04 | 896.04 | | 다툼없음 | | | | | | | 896.04 | |
| 181 | SLP크레인 레일 | 15.20 | 15.20 | | 다툼없음 | | | | | | | 15.20 | |
| 182 | CWP 크레인 레일 | 65.80 | 65.80 | | 다툼없음 | | | | | | | 65.80 | |
| 183 | 복합연소용필터 | 39.25 | 39.25 | | 다툼없음 | | | | | | | 39.25 | |
| 184 | 복합연돌 | 158.50 | 158.50 | | 다툼없음 | | | | | | | 158.50 | |
| 185 | 복합주변압기 | 257.44 | 257.44 | | 다툼없음 | | | | | | | 257.44 | |
| 186 | 복합 HRSGSUMP | 33.00 | 33.00 | | 다툼없음 | | | | | | | 33.00 | |
| 187 | 복합 GT7.8 변압기 | 37.72 | 37.72 | | 다툼없음 | | | | | | | 37.72 | |
| 188 | 복합경유가압펌프 | 91.00 | 91.00 | | 다툼없음 | | | | | | | 91.00 | |
| 189 | 복합질소저감순수공급펌프 | 69.00 | 69.00 | | 다툼없음 | | | | | | | 69.00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의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기계장치 | 190 | 취수펌프시설 | 3,260.07 | 3,260.07 | | 다툼없음 | | | | | 3,260.07 |
| | 191 | CWP STRUCTURE | 2,652.00 | 2,652.00 | | 다툼없음 | | | | | 2,652.00 |
| | 192 | 석회석이송탑(TT01) | 33.00 | 33.00 | | 다툼없음 | | | | | 33.00 |
| | 193 | 석회석이송탑(TT02) | 80.00 | 80.00 | | 다툼없음 | | | | | 80.00 |
| | 194 | 석회석이송탑(TT03) | 34.65 | 34.65 | | 다툼없음 | | | | | 34.65 |
| | 195 | 석회석이송탑(TT04) | 39.00 | 39.00 | | 다툼없음 | | | | | 39.00 |
| | 196 | 석회석이송설비(LP01) | 485.56 | 485.56 | | 다툼없음 | | | | | 485.56 |
| | 197 | 석회석이송설비(LP02) | 720.38 | 720.38 | | 다툼없음 | | | | | 720.38 |
| | 198 | 석회석이송설비(LP03) | 1,058.68 | 1,058.68 | | 다툼없음 | | | | | 1,058.68 |
| | 199 | 석회석이송설비(LP04) | 129.35 | 129.35 | | 다툼없음 | | | | | 129.35 |
| | 200 | 해수가압펌프 | 72.00 | 72.00 | | 다툼없음 | | | | | 72.00 |
| | 201 | 변압기 | 2,048.66 | 2,048.66 | | 다툼없음 | | | | | 2,048.66 |
| | 202 | 기동변압기 | 261.66 | 261.66 | | 다툼없음 | | | | | 261.66 |
| | 203 | 탈황기동변압기 | 7.79 | 7.79 | | 다툼없음 | | | | | 7.79 |
| | 204 | 탈황보조변압기 | 1,884.90 | 1,884.90 | | 다툼없음 | | | | | 1,884.90 |
| | 205 | CWP 크레인 레일 | 90.47 | 90.47 | | 다툼없음 | | | | | 90.47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 인정 면적(㎡) | |
| | 206 | 크레인 | 298.20 | 298.20 | | 다툼없음 | | | | | | 298.20 | |
| | 207 | 크레인 | 240.00 | 240.00 | | 다툼없음 | | | | | | 240.00 | |
| | 208 | 상탄기 | 672.00 | 672.00 | | 다툼없음 | | | | | | 672.00 | |
| | 209 | 상탄기 | 448.00 | 448.00 | | 다툼없음 | | | | | | 448.00 | |
| | 210 | 석탄하역기 | 1,250.00 | 1,250.00 | | 다툼없음 | | | | | | 1,250.00 | |
| | 211 | 석탄하역기 | 1,136.00 | 1,136.00 | | 다툼없음 | | | | | | 1,136.00 | |
| | 212 | 상탄기레일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 160.00 | |
| | 213 | 상탄기레일 | 339.20 | 339.20 | | 다툼없음 | | | | | | 339.20 | |
| | 214 | 석탄하역기레일 | 73.90 | 73.90 | | 다툼없음 | | | | | | 73.90 | |
| | 215 | 저탄장내컨베이어시설(S/R기초) | 22,539.00 | 22,539.00 | | 다툼없음 | | | | | | 22,539.00 | |
| | 216 | 고전압시설 | 177.12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1호증 81내지82 | 을제31호증의29의 영상과 같이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 177.12 | |
| | 217 | 가스장치 | 402.4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81내지82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 402.48 | |
| | 218 | 복합변압기 | 825.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의76, 제85호증 | 상동 | | 825 | |
| | 219 | DUST COLLECTOR SYSTEM(24기) | 586.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86, 을제86호증 | 상동 | | 586.56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20 | 기계장치<br>(플라이애쉬싸일로 위) | 89.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96 | 이 목록 순번 173번 기재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 |
| | 221 | 수문 | 742.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90p, 을제83호증의13 | 피고 증거로 특정됨. 다만 면적은 740.6㎡(= 32.2m×23m) 인정 | 740.6 |
| | 222 | 복합HRSG | 3,19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4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196 |
| | 223 | HP Drum | 153.4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5 | 이 목록 순번 222번 기재 복합 HRSG의 부속장치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하지 않음. | 0 |
| | 224 | IP Drum | 68.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6 | 상동 | 0 |
| | 225 | LP Drum | 62.4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 제83호증의17 | 상동 | 0 |
| | 226 | 저장지역연료유썸프 | 1.4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중유)13p, 을제83호증의18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44 |
| | 227 | 중유서비스연료유썸프 | 4.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중유)15p |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28 | First stage<br>Mist Eliminnator | 671.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19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29 | Second stage<br>Mist Eliminnator | 1,007.2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20 | 상동 | 0 |
| | 230 | Booster Fan Innet Danper | 184.3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1 | 상동 | 0 |
| | 231 | Booster Fan Outlet Danper | 255.3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2 | 상동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32 | Energency Danper | 130.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3 | 상동 | 0 |
| | 233 | Fgd Fan Outlet Danper | 141.1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4 | 상동 | 0 |
| | 234 | 가스히터 | 864.8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5 | 상동 | 0 |
| | 235 | 여과수썸프 | 118.5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301p, 을제83호증의26 | 상동 | 0 |
| | 236 | 계량대 | 3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850p, 을제83호증의27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9 |
| | 237 | 전기집진기 | 10,37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p, 을제83호증의28 | 이 목록 순번 451 내지 462번 기재 전기집진기실 내지 집진기와 별도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인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38 | 가스절연발전소 | 1,20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78p, 을제83호증의29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204 |
| | 239 | 집진판(Element Size, Ass' Y Size) | 4,870.6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87p, 을제83호증의30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40 | AIR PREHEATER INETDAMEER | 286.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41 | Expansion Joint | 302.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을제83호증의31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42 | 오폐수처리장기계실 | 205.5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57호증 1내지6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05.57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43 | Scr탈질설비구조물 | 4,75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종합사업보고서 246,249p, 을제83호증의32 | 상동 | 4,752.00 |
| | 244 | 정화조 | 28.69 | 0.00 | 비과세대상 | 1.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임<br>2.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이며, 피고는 자의적으로 정화조를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있음 | | 단순저장기능인 정화조는 포함대상이며 또한 기계작동에 따라 정화하는 정화조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비과세대상아님. | 을제33호증56: 정화조조적반기계장치 사진<br>을제33호증58: 단순정화조사진<br>을제33호증59: 정화조 조적반기계장치 사진 |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28.69 |
| | 245 | 저장조 | 241.40 | 0.00 | 불특정 | 특정이 필요함. | | 을제33호증2내지60에 대한 면적 집계표는 을제33호증1로 계산하고 있음. 해당 저장조에 대한 면적이 중복되지 않음이 을제33호증1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증빙자료에서 중복된 것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증빙자료는 중복되었으나 면적은 중복되지않음(중복과세된 것이 아님) | 을제33호증1: 면적집계표<br>을제33호증57,60: 같은 저장조가 2기있어 각각 입증위해 별도로 증빙한 것이나 면적산출은 중복되지 않음.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241.4 |
| | | **다툼없는 저장조.수조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246 | 심층취수로 | 1,351.48 | 1,351.48 | | 다툼없음 | | | | | 1,351.48 |
| | 247 | 냉각수 취수장 사다리꼴 | 549.89 | 549.89 | | 다툼없음 | | | | | 549.89 |
| | 248 | 냉각수 취수장 직사각형 | 148.94 | 148.94 | | 다툼없음 | | | | | 148.94 |
| | 249 | 취수장 옆 배수로 | 162.64 | 162.64 | | 다툼없음 | | | | | 162.64 |
| | 250 | 취수로 | 2,585.80 | 2,585.80 | | 다툼없음 | | | | | 2,585.80 |
| | 251 | 순수탱크 | 346.19 | 346.19 | | 다툼없음 | | | | | 346.19 |
| | 252 | 복합 일상폐수조 | 401.98 | 401.98 | | 다툼없음 | | | | | 401.98 |
| | 253 | 오수정화조 | 108.00 | 108.00 | | 다툼없음 | | | | | 108.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부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54 | 복합 함유폐수조 | 163.40 | 163.40 | | 다툼없음 | | | | | 163.40 |
| | 255 | 냉각수 배수관로 1 | 273.01 | 273.01 | | 다툼없음 | | | | | 273.01 |
| | 256 | 냉각수 배수관로 2 | 511.57 | 511.57 | | 다툼없음 | | | | | 511.57 |
| | 257 | 냉각수 배수관로 | 409.05 | 409.05 | | 다툼없음 | | | | | 409.05 |
| | 258 | 심층취수로입구 (냉각수취수펌프 유입흡수구) | 221.76 | 221.76 | | 다툼없음 | | | | | 221.76 |
| | 259 | 심층취수관로 (냉각수취수펌프 유입수로) | 3,672.06 | 3,672.06 | | 다툼없음 | | | | | 3,672.06 |
| | 260 | 취수장 | 5,081.23 | 5,081.23 | | 다툼없음 | | | | | 5,081.23 |
| | 261 | 취수로 | 26,298.02 | 26,298.02 | | 다툼없음 | | | | | 26,298.02 |
| | 262 | 취수로 | 3,060.74 | 3,060.74 | | 다툼없음 | | | | | 3,060.74 |
| | 263 | 복수저장탱크 | 330.28 | 330.28 | | 다툼없음 | | | | | 330.28 |
| | 264 | 순수저장조 (DEMI WATER TANK) | 307.72 | 307.72 | | 다툼없음 | | | | | 307.72 |
| | 265 | 조절지 수조 | 304.00 | 304.00 | | 다툼없음 | | | | | 304.00 |
| | 266 | 가압장 수조 | 317.00 | 317.00 | | 다툼없음 | | | | | 317.00 |
| | 267 | 취수장 수조 | 50.00 | 50.00 | | 다툼없음 | | | | | 50.00 |
| | 268 | 원수탱크B | 2,147.20 | 2,147.20 | | 다툼없음 | | | | | 2,147.20 |
| | 269 | 원수탱크D | 6,358.50 | 6,358.50 | | 다툼없음 | | | | | 6,358.50 |
| | 270 | 재활용수조 | 48.00 | 48.00 | | 다툼없음 | | | | | 48.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 271 | 염소저장조 | 14.12 | 14.12 | | 다툼없음 | | | | | 14.12 | |
| | 272 | 복합염산탱크 | 2.83 | 2.83 | | 다툼없음 | | | | | 2.83 | |
| | 273 | 염산저장탱크 | 33.46 | 33.46 | | 다툼없음 | | | | | 33.46 | |
| | 274 | 가성소다저장탱크 | 80.44 | 80.44 | | 다툼없음 | | | | | 80.44 | |
| | 275 | 저회저장조 | 157.00 | 157.00 | | 다툼없음 | | | | | 157.00 | |
| | 276 | 비회저장조 | 562.80 | 562.80 | | 다툼없음 | | | | | 562.80 | |
| | 277 | 석고탈수탱크 | 54.00 | 54.00 | | 다툼없음 | | | | | 54.00 | |
| | 278 | 석회석일일저장조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 279 | 석회석슬러리탱크 | 46.50 | 46.50 | | 다툼없음 | | | | | 46.50 | |
| | 280 | 석회석저장사일로 | 181.30 | 181.30 | | 다툼없음 | | | | | 181.30 | |
| | 281 | 탈황비상저장탱크 | 165.00 | 165.00 | | 다툼없음 | | | | | 165.00 | |
| | 282 | 석회석저장사일로 | 181.30 | 181.30 | | 다툼없음 | | | | | 181.30 | |
| | 283 | 염기저장조 | 9.00 | 9.00 | | 다툼없음 | | | | | 9.00 | |
| | 284 | 염기및산저장탱크 | 26.40 | 26.40 | | 다툼없음 | | | | | 26.40 | |
| | 285 | 염기및산저장탱크 | 26.40 | 26.40 | | 다툼없음 | | | | | 26.40 | |
| | 286 | 복합소포제주입탱크 | 5.66 | 5.66 | | 다툼없음 | | | | | 5.66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원고 주장의 취본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내용 | 인정 면적(㎡) |
| | 287 | 수조 | 1,164.38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2015.01.22.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 스스로 다툼없는 시설로 인정한 면적임. | 원고 인정 다툼없는 시설물 면적 내역<br>을제76호증6<br>을제33호증 2내지8, 10~11, 20~23, 44, 52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164.38 |
| | 288 | 저장조 | 1,475.6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9,12~15,18~19,24~28, 30,38~39,45~46,48~49,51,53~54<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475.55에서 1,475.61로 면적 정정 | 상동. 다만 7,8호기 저장조 703.3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을제38호증의38-39). | 772.29 |
| | 289 | 펌프실(2-1)(2-2) | 30.2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16~17<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01.4에서 30.21로 면적 정정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0.21 |
| | 290 | 기력 LOSERVICE TANK | 276.3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47 | 상동 | 276.32 |
| | 291 | CPI유수분리기 | 48.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50 | 상동 | 48.76 |
| | 292 | 콘크리트구조물 | 13.8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55 | 이 목록 순번 168번 기재 시설물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 |
| | 293 | 원수탱크D(2기중 미과세1기) | 6,358.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53<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63.58로 수정했으나 당초면적 6,358.5으로 정정(면적산출 오류)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중복 산정 여부 알 수 없음. | 0.00 |
| | 294 | 복합유수분리기 | 309.8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 상동 | 0 |
| | 295 | 복합오폐수집수지 | 397.0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 상동 | 0 |
| | 296 | 기력복합일시(일상)폐수조 | 2,640.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222,223,304p<br>을제83호증 33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640.50 |
| | 297 | 폐수집수조(abnormal,normal) | 40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406p<br>을제83호증 34 | 상동 | 4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98 | 경유저장탱크 | 530.6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경유계통9p<br>을제83호증 35 | 상동 | 530.66 |
| | 299 | 원수저장탱크 | 2,098.0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소화설비(공업원수)7p<br>을제83호증 36 | 상동 | 2,098.08 |
| | 300 | 1차침전조 | 1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01 | 1차반응탱크 | 1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2 | 2차반응탱크 | 1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3 | 3차반응탱크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4 | 1차체류조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5 | 1차응집탱크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6 | 2차침전조 | 56.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7 | 2차체류조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8 | 2차응집탱크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9 | 3차침전조 | 56.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0 | 1차처리수조 | 62.7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및 시기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11 | 압력여과기 | 3.7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2 | 활성탄여과기 | 12.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3 | 1차PH조정조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4 | 2차PH처리수조 | 4.9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5 | 불소흡착탑 | 6.2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6 | 2차PH조정조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7 | 방류수조 | 6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8 | 농축조 | 4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9 | 슬러지저장조 | 1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0 | 케이크호퍼 | 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1 | 세척수탱크 | 1.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2 | 황산알루미늄호퍼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3 | 탄산나트륨호퍼 | 2.5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24 | 용해주입탱크 | 5.3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5 | 호퍼공기저장탱크 | 0.8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6 | 용해탱크 | 0.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7 | 길레이트주입탱크 | 0.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8 | 폴리머용해탱크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9 | 폴리머주입탱크 | 4.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0 | 염산주입탱크 | 4.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1 | 염산가스실포트 | 0.1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2 | 수산화나트륨주입탱크 | 3.1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3 | 차아염산탱크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4 | 아황산용해탱크 | 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5 | MXINGTANK | 4.8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종합용역보고서112p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36 | 취수펌프장 | 37.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설계계산서11-13p<br>을제83호증 37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7.5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37 | 용수저장탱크 | 1,017.3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설계계산서11-14p<br>을제83호증 38 | 상동 | 1,017.36 |
| 저유조 | | 다툼없는 저유조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338 | 복합 DO Storage tank | 1,118.10 | 1,118.10 | | 다툼없음 | | | | | 1,118.10 |
| | 339 | Clean&Dirty Oil tank | 20.50 | 20.50 | | 다툼없음 | | | | | 20.50 |
| | 340 | LIGHTOILSERVICE 탱크 (1호기 서쪽) | 88.20 | 88.20 | | 다툼없음 | | | | | 88.20 |
| | 341 | LIGHTOILSERVICE 탱크 (2발 건너편) | 88.00 | 88.00 | | 다툼없음 | | | | | 88.00 |
| 공작물 | 342 | 7,8호기 컨베이어설비 | 23,670.36 | 0.00 | 비과세대상 | 본 시설은 2008년도에 취득한 시설물임 | | 시설물명에서 7,8호기 컨베이어설비라 한것은 1~8호기 컨베이어설비의 오류로 설계도면과 실측을 통하여 컨베이어 시설면적을 수평투영면적으로 재산정 한 결과 합계면적이 34,155.78㎡이며 발전소별 면적을 구분하면, 1~6호기: 23,670.56㎡, 7~8호기: 10,485.22㎡임.<br>원고가 당초 주장한 면적(17,111㎡)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작물 축조신고없이 불법으로 시설한 컨베이어면적이 미산정됨. | 을제3호증3: 석탄취급설비계통도<br>을제24호증1: 면적집계표<br>을제24호증2내지59: 현황사진 및 면적산출내역<br>참고자료7: 행자부심사결정서 (2007-427) | 1~8호기 컨베이어 설비는 2004년 이전부터 사용되던 시설임. 하단컨베이어나 take-up 장치는 별개의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면적 합계 23,670.36㎡ 중 갑가제43, 44호증, 을제24호증의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면서 수평 길이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계를 잘못 한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342번)' 기재와 같고 잘못 추가된 면적 합계가 1,503.88㎡이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면적 22,166.48㎡만 인정한다. | 22,166.4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43 | 급수탱크관련송수관 및 경유배관 | 2,944.14 | 0.00 | 기과세 | 급수탱크 관련 송수관 및 경유배관은 2009.11월 기과세하고(복합송수관 및 송유관), 2011.4월 다시 과세한 물건임 | 갑가제3호증의1 3면 및 11면 | 급수탱크관련 송수관이 다수의 장소에 시설되어 있으나 송수관의 길이 및 위치에서 기과세된 송수관이 아님. 송수관 일부에 대해서 제출하고 피고가 추가로 송수관을 찾아 과세하자 증빙없이 중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 을제32호증6내지18 | 기과세된 증거가 없음 | 2,944.14 |
| | **다툼없는 송수관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344 | CWP~보일러건물 송수관 | 2,076.80 | 2,076.80 | | 다툼없음 | | | | | 2,076.80 |
| | 345 | 취수관로 | 902.00 | 902.00 | | 다툼없음 | | | | | 902.00 |
| | 346 | SCW PIPE | 256.00 | 256.00 | | 다툼없음 | | | | | 256.00 |
| | 347 | 급수탱크관련송수관 | 691.75 | 691.75 | | 다툼없음 | | | | | 691.75 |
| | 348 | 순수공급펌프실송수관 | 19.18 | 19.18 | | 다툼없음 | | | | | 19.18 |
| | 349 | 급수펌프실관련송수관 | 835.00 | 835.00 | | 다툼없음 | | | | | 835.00 |
| | 350 | 폐수 집수조관련송수관 | 298.20 | 298.20 | | 다툼없음 | | | | | 298.20 |
| | 351 | 오수정화조관련송수관 | 5.00 | 5.00 | | 다툼없음 | | | | | 5.00 |
| | 352 | 해수취수펌프실관련 송수관 | 5.00 | 5.00 | | 다툼없음 | | | | | 5.00 |
| | 353 |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 31.00 | 31.00 | | 다툼없음 | | | | | 31.00 |
| | 354 |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 389.00 | 389.00 | | 다툼없음 | | | | | 389.00 |
| | 355 | 취수장옆 HUME PIPE | 2.57 | 2.57 | | 다툼없음 | | | | | 2.57 |
| | 356 |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 1,106.09 | 1,106.09 | | 다툼없음 | | | | | 1,106.09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근거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송수관 | 357 | CWP 배관(CWP~보일러건물) | 768.00 | 768.00 | | 다툼없음 | | | | | 768.00 |
| | 358 | CWP PIPE(CWP~보일러건물) | 3,840.00 | 3,840.00 | | 다툼없음 | | | | | 3,840.00 |
| | 359 | 수처리 건물 관련 | 2.04 | 2.04 | | 다툼없음 | | | | | 2.04 |
| | 360 | 해수가압펌프 송수관 | 0.39 | 0.39 | | 다툼없음 | | | | | 0.39 |
| | 361 | 공업용수관로(보령댐~보령화력) | 15,750.00 | 15,750.00 | | 다툼없음 | | | | | 15,750.00 |
| | 362 | 옥외소화관 | 2,932.88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60호증 1내지14<br>을제61호증 1내지 11<br>1~2호기건설지 599p,복합건설지 392p<br>을제83호증 39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932.88 |
| | 363 | 공업용수도수관 | 150.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224p<br>매설(주교면 송학리에서 발전소 연장구간)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64 | 공업용수유공관 | 143.0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1283p<br>매설(주산면 화평리 웅천천에서 집수정구간) | 상동 | 0.00 |
| | 365 | 재순환수관 | 2,847.2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311p<br>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5p<br>을제83호증 40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66 | 전처리배관(강관,PEM 수도관) | 1,08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783p<br>을제83호증 41 | 상동 | 0.00 |
| | 367 | 애쉬라인 | 4,32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5-6호기종합용역보고서1-7p<br>을제83호증 42 |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다만 면적은 1,440㎡(= 0.3m×2,400m×2) | 1,44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공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및 사유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68 | 폐수배관 | 134.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폐수재이용설비공사설계서<br>*지하매설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69 | 회이송관 | 1,857.1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br>보고서2-13p(3~6호기)<br>을제83호증 43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857.17 |
| | 370 | 섬프펌프관 | 1.2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br>보고서2-16p<br>을제83호증 44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71 | 송수관<br>(취수펌프장과용수저장사이) | 15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1~4호기설계계산서 11-14p<br>*지하매설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72 | 광역분기구간(공업용수) | 1,588.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 IV 16-4p<br>*매설(주교면 주교리 가압장~송학고개) | 상동 | 0 |
| | 373 | 경유배관 | 792.00 | 0.00 | 비과세대상 |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 갑가 제80호증 | 원고는 해당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송유관으로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송유관에 호스장치를 시설한 후 드럼통을 통해 기름을 뽑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경유배관에는 기름보관이 가능토록 배관을 용접한 것으로 배관을 끊어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님. | 을제32호증2 |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 0 |
| | 374 | 1부두경유배관 | 4.95 | 0.00 | 비과세대상 |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 | 지방세법에서 정한 '직접사용'의 의미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법인 등에게 임차한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로 시설된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안된다를 가리는 것이 아님. | 을제32호증3B |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 인정 면적(㎡) | |
| 송유관 및 도관 | 375 | 도관(회이송관) | 3,486.88 | 0.00 | 기과세 | 회이송관받침대로 과세한 면적에 포함됨 | 갑가제3호증의3 16면 | 회이송관받침대는 트러스로 명칭되며 송유관 등은 각각 별개로 과세되어야 함.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일이 2007.1.1일이므로 2006년까지는 포함되어야 함. | 을제32호증53내지57<br>을제54호증1내지2: 트러스트설명서<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회이송관받침대와 별개의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 | | 3,486.88 | |
| | | **다툼없는 송유관 및 도관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 376 | 기름분리조관련송유관 | 9.00 | 9.00 | | 다툼없음 | | | | | | 9.00 | |
| | 377 | 경유저장탱크송유관 | 3.50 | 3.50 | | 다툼없음 | | | | | | 3.50 | |
| | 378 | 오일탱크관련 송유관 | 1.50 | 1.50 | | 다툼없음 | | | | | | 1.50 | |
| | 379 | 연료공급실송유관 | 41.20 | 41.20 | | 다툼없음 | | | | | | 41.20 | |
| | 380 | 오일탱크관련송유관 | 1.50 | 1.50 | | 다툼없음 | | | | | | 1.50 | |
| | 381 | LO SERVICE PUMP TO BOILER | 24.36 | 24.36 | | 다툼없음 | | | | | | 24.36 | |
| | 382 | LO SERVICE PUMP TO BOILER | 3.57 | 3.57 | | 다툼없음 | | | | | | 3.57 | |
| | 383 | LO SERVICE PUMP TO BOILER | 0.59 | 0.59 | | 다툼없음 | | | | | | 0.59 | |
| | 384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2.03 | 2.03 | | 다툼없음 | | | | | | 2.03 | |
| | 385 |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 2.00 | 2.00 | | 다툼없음 | | | | | | 2.00 | |
| | 386 |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 38.58 | 38.58 | | 다툼없음 | | | | | | 38.58 | |
| | 387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1.60 | 1.60 | | 다툼없음 | | | | | | 1.60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 388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138.56 | 138.56 | | 다툼없음 | | | | | | | 138.56 |
| | 389 | LO SERVICE PUMP TO BOILER | 59.78 | 59.78 | | 다툼없음 | | | | | | | 59.78 |
| | 390 | LO SERVICE PUMP TO BOILER | 45.57 | 45.57 | | 다툼없음 | | | | | | | 45.57 |
| | 391 | 도관시설 | 13,905.19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2호증 1, 3~5, 19~45, 48~49, 58~74, 76~83<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4,427.48에서 13,905.19로 면적 정정 |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다만 2부두air라인(을제32호증의5 'c') 11.5㎡는 이 목록 순번 제27번 기재 시설물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13,893.69 |
| | 392 | 중유이송배관 | 77.83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806p<br>*2013년 폐기시설 | |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 **다툼없는 건물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 393 | 망루 | 9.91 | 9.91 | | 다툼없음 | | | | | | | 9.91 |
| | 394 | 종합사무실 | 8,437.77 | 8,437.77 | | 다툼없음 | | | | | | | 8,437.77 |
| | 395 | 경비실(신축) | 351.25 | 351.25 | | 다툼없음 | | | | | | | 351.25 |
| | 396 | 기상관측소 | 7.29 | 7.29 | | 다툼없음 | | | | | | | 7.29 |
| | 397 | 모의제어반 | 1,569.86 | 1,569.86 | | 다툼없음 | | | | | | | 1,569.86 |
| | 398 | 무기고 | 66.96 | 66.96 | | 다툼없음 | | | | | | | 66.96 |
| | 399 | 소각로 | 259.18 | 259.18 | | 다툼없음 | | | | | | | 259.18 |
| | 400 | 이륜차고 | 135.00 | 135.00 | | 다툼없음 | | | | | | | 135.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01 | 구종합사육 | 7,474.12 | 7,474.12 | | 다툼없음 | | | | | 7,474.12 |
| | 402 | 종합사무실-건설소 | 3,291.08 | 3,291.08 | | 다툼없음 | | | | | 3,291.08 |
| | 403 | 홍보관 | 340.20 | 340.20 | | 다툼없음 | | | | | 340.20 |
| | 404 | 홍보관사무실 | 57.40 | 57.40 | | 다툼없음 | | | | | 57.40 |
| | 405 | #1 외부화장실-2호기뒤 | 7.28 | 7.28 | | 다툼없음 | | | | | 7.28 |
| | 406 | 배양장 | 562.50 | 562.50 | | 다툼없음 | | | | | 562.50 |
| | 407 | (종묘)배양장창고 | 96.00 | 96.00 | | 다툼없음 | | | | | 96.00 |
| | 408 | 온배수양식동 | 504.00 | 504.00 | | 다툼없음 | | | | | 504.00 |
| | 409 | 온배수양식장펌프실 | 21.60 | 21.60 | | 다툼없음 | | | | | 21.60 |
| | 410 | 웅천 가압장 | 162.00 | 162.00 | | 다툼없음 | | | | | 162.00 |
| | 411 | 웅천 사택 | 43.65 | 43.65 | | 다툼없음 | | | | | 43.65 |
| | 412 | 주산 사택 | 55.72 | 55.72 | | 다툼없음 | | | | | 55.72 |
| | 413 | 주산 취수장 | 161.00 | 161.00 | | 다툼없음 | | | | | 161.00 |
| | 414 | 경비실(구정문수위실) | 100.23 | 100.23 | | 다툼없음 | | | | | 100.23 |
| | 415 | 정문경비실 | 64.04 | 64.04 | | 다툼없음 | | | | | 64.04 |
| | 416 | 후문경비실 | 54.98 | 54.98 | | 다툼없음 | | | | | 54.9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본 이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17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18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19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20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21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22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23 | 망루1형 | 12.35 | 12.35 | | 다툼없음 | | | | | 12.35 |
| | 424 | 초소1형 | 12.50 | 12.50 | | 다툼없음 | | | | | 12.50 |
| | 425 | 초소1형 | 12.50 | 12.50 | | 다툼없음 | | | | | 12.50 |
| | 426 | 초소2형 | 18.83 | 18.83 | | 다툼없음 | | | | | 18.83 |
| | 427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428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429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430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431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432 | 간이초소 NO-1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33 | 긴이초소 NO-2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34 | 긴이초소 NO-3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35 | 긴이초소 NO-4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36 | 벙커 | 7.20 | 7.20 | | 다툼없음 | | | | | 7.20 |
| | 437 | #1 터빈및주제어실 | 7,231.50 | 7,231.50 | | 다툼없음 | | | | | 7,231.50 |
| | 438 | #2 터빈및주제어실 | 7,163.94 | 7,163.94 | | 다툼없음 | | | | | 7,163.94 |
| | 439 | #3,4 터빈및주제어건물-1 | 27,055.48 | 27,055.48 | | 다툼없음 | | | | | 27,055.48 |
| | 440 | #5,6 터빈및주제어건물-2 | 26,096.71 | 26,096.71 | | 다툼없음 | | | | | 26,096.71 |
| | 441 | #1 보일러실 | 2,904.49 | 2,904.49 | | 다툼없음 | | | | | 2,904.49 |
| | 442 | #2 보일러실 | 2,904.49 | 2,904.49 | | 다툼없음 | | | | | 2,904.49 |
| | 443 | #3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44 | #4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45 | #5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46 | #6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47 | #1 보조보일러제어실 | 212.15 | 212.15 | | 다툼없음 | | | | | 212.15 |
| | 448 | #2 보조보일러전원실 | 102.48 | 102.48 | | 다툼없음 | | | | | 102.4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부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49 | #1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 484.78 | 484.78 | | 다툼없음 | | | | | 484.78 |
| | 450 | #2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 484.78 | 484.78 | | 다툼없음 | | | | | 484.78 |
| | 451 | #1 전기집진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52 | #2 전기집진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53 | #3 전기집진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54 | #4 전기집진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55 | #3 집진기 NO-1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56 | #3 집진기 NO-2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57 | #4 집진기 NO-3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58 | #4 집진기 NO-4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59 | #5 집진기 NO-5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60 | #5 집진기 NO-6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61 | #6 집진기 NO-7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62 | #6 집진기 NO-8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63 | 종합창고 | 7,144.22 | 7,144.22 | | 다툼없음 | | | | | 7,144.22 |
| | 464 | 누유방제자재보관창고 | 72.00 | 72.00 | | 다툼없음 | | | | | 72.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65 | #1,2 물처리실 | 1,260.80 | 1,260.80 | | 다툼없음 | | | | | 1,260.80 |
| | 466 | #3~4 물처리건물 | 2,911.12 | 2,911.12 | | 다툼없음 | | | | | 2,911.12 |
| | 467 | 보조보일러약품주입실 | 18.56 | 18.56 | | 다툼없음 | | | | | 18.56 |
| | 468 | 산소저장창고 | 35.00 | 35.00 | | 다툼없음 | | | | | 35.00 |
| | 469 | (산업폐기물)저장창고 | 141.12 | 141.12 | | 다툼없음 | | | | | 141.12 |
| | 470 | #1,2 샤워장 | 395.18 | 395.18 | | 다툼없음 | | | | | 395.18 |
| | 471 | 염소주입실 | 622.16 | 622.16 | | 다툼없음 | | | | | 622.16 |
| | 472 | #1,2 유지창고 | 350.00 | 350.00 | | 다툼없음 | | | | | 350.00 |
| | 473 | 정비고 | 611.00 | 611.00 | | 다툼없음 | | | | | 611.00 |
| | 474 | 폐기물저장창고 | 230.67 | 230.67 | | 다툼없음 | | | | | 230.67 |
| | 475 | 폐수처리관리실 | 206.36 | 206.36 | | 다툼없음 | | | | | 206.36 |
| | 476 | 폐수처리건물 | 546.83 | 546.83 | | 다툼없음 | | | | | 546.83 |
| | 477 | 부두접안정보실 | 15.12 | 15.12 | | 다툼없음 | | | | | 15.12 |
| | 478 | #1 비회제어실 | 47.00 | 47.00 | | 다툼없음 | | | | | 47.00 |
| | 479 | #2 비회제어실 | 47.00 | 47.00 | | 다툼없음 | | | | | 47.00 |
| | 480 | #1 사일로 전원실 | 52.00 | 52.00 | | 다툼없음 | | | | | 52.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 인정 면적(㎡) | |
| | 481 | 상탄살포제실 | 54.00 | 54.00 | | 다툼없음 | | | | | | 54.00 | |
| | 482 | 저탄살포제실 | 54.00 | 54.00 | | 다툼없음 | | | | | | 54.00 | |
| | 483 | 석탄분쇄실 1 | 802.75 | 802.75 | | 다툼없음 | | | | | | 802.75 | |
| | 484 | 석탄분쇄실 2 | 814.00 | 814.00 | | 다툼없음 | | | | | | 814.00 | |
| | 485 | 석탄분쇄 동력제어실 | 55.50 | 55.50 | | 다툼없음 | | | | | | 55.50 | |
| | 486 | 석탄분쇄 소화가스실 | 11.00 | 11.00 | | 다툼없음 | | | | | | 11.00 | |
| | 487 | 석탄하역건물 | 135.00 | 135.00 | | 다툼없음 | | | | | | 135.00 | |
| | 488 | 운탄설비 동력제어실 | 45.00 | 45.00 | | 다툼없음 | | | | | | 45.00 | |
| | 489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 5.30 | 5.30 | | 다툼없음 | | | | | | 5.30 | |
| | 490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1 | 7.93 | 7.93 | | 다툼없음 | | | | | | 7.93 | |
| | 491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2 | 7.15 | 7.15 | | 다툼없음 | | | | | | 7.15 | |
| | 492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3 | 6.37 | 6.37 | | 다툼없음 | | | | | | 6.37 | |
| | 493 | 유연탄하역조정실 | 320.00 | 320.00 | | 다툼없음 | | | | | | 320.00 | |
| | 494 | 유연탄작업관리실 | 694.02 | 694.02 | | 다툼없음 | | | | | | 694.02 | |
| | 495 | 입하탄시료채취실 | 287.10 | 287.10 | | 다툼없음 | | | | | | 287.10 | |
| | 496 | 회처리전원실 | 67.51 | 67.51 | | 다툼없음 | | | | | | 67.51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건물 | 497 | 조탄실 1 | 140.00 | 140.00 | | 다툼없음 | | | | | | | 140.00 |
| | 498 | 조탄실 2 | 301.75 | 301.75 | | 다툼없음 | | | | | | | 301.75 |
| | 499 | 조탄실 3 | 414.40 | 414.40 | | 다툼없음 | | | | | | | 414.40 |
| | 500 | 조탄실 4 | 240.00 | 240.00 | | 다툼없음 | | | | | | | 240.00 |
| | 501 | 조탄실 5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 | 160.00 |
| | 502 | 조탄실 6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 | 160.00 |
| | 503 | 조탄실 NO-1 | 257.57 | 257.57 | | 다툼없음 | | | | | | | 257.57 |
| | 504 | 조탄실 NO-2 | 256.26 | 256.26 | | 다툼없음 | | | | | | | 256.26 |
| | 505 | 조탄실 NO-3 | 269.68 | 269.68 | | 다툼없음 | | | | | | | 269.68 |
| | 506 | 조탄실 NO-4 | 85.08 | 85.08 | | 다툼없음 | | | | | | | 85.08 |
| | 507 | 조탄실 NO-5 | 85.85 | 85.85 | | 다툼없음 | | | | | | | 85.85 |
| | 508 | 조탄실 N0-6 | 127.07 | 127.07 | | 다툼없음 | | | | | | | 127.07 |
| | 509 | 조탄실 N0-7 | 1,143.42 | 1,143.42 | | 다툼없음 | | | | | | | 1,143.42 |
| | 510 | 조탄실 N0-8 | 1,598.88 | 1,598.88 | | 다툼없음 | | | | | | | 1,598.88 |
| | 511 | 조탄실 N0-9 | 398.23 | 398.23 | | 다툼없음 | | | | | | | 398.23 |
| | 512 | 조탄실 N0-10 | 116.80 | 116.80 | | 다툼없음 | | | | | | | 116.8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 인정 면적(㎡) | |
| | 513 | 조탄실 | 147.11 | 147.11 | | 다툼없음 | | | | | | 147.11 | |
| | 514 | 조탄실 | 253.52 | 253.52 | | 다툼없음 | | | | | | 253.52 | |
| | 515 | 트랜스퍼타워 18 | 217.18 | 217.18 | | 다툼없음 | | | | | | 217.18 | |
| | 516 | 트랜스퍼타워 19 | 224.71 | 224.71 | | 다툼없음 | | | | | | 224.71 | |
| | 517 | 트랜스퍼타워 20 | 1,323.18 | 1,323.18 | | 다툼없음 | | | | | | 1,323.18 | |
| | 518 | 트랜스퍼타워 21 | 226.19 | 226.19 | | 다툼없음 | | | | | | 226.19 | |
| | 519 | 회처리펌프제어실 | 23.80 | 23.80 | | 다툼없음 | | | | | | 23.80 | |
| | 520 | 회처리순환펌프실 | 95.20 | 95.20 | | 다툼없음 | | | | | | 95.20 | |
| | 521 | 회처리순환펌프실 | 408.00 | 408.00 | | 다툼없음 | | | | | | 408.00 | |
| | 522 | 소회수및원수펌프실 | 380.25 | 380.25 | | 다툼없음 | | | | | | 380.25 | |
| | 523 | 순환수보조펌프실 | 299.75 | 299.75 | | 다툼없음 | | | | | | 299.75 | |
| | 524 | 송유및소화수펌프실 | 383.00 | 383.00 | | 다툼없음 | | | | | | 383.00 | |
| | 525 | 해수소화펌프실 | 25.39 | 25.39 | | 다툼없음 | | | | | | 25.39 | |
| | 526 | 해수인양펌프조작실 | 320.00 | 320.00 | | 다툼없음 | | | | | | 320.00 | |
| | 527 | 유류가압펌프실 | 336.00 | 336.00 | | 다툼없음 | | | | | | 336.00 | |
| | 528 | 연료유펌프실-#1,2호기 | 654.72 | 654.72 | | 다툼없음 | | | | | | 654.72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29 | 연료유공급펌프실 | 645.00 | 645.00 | | 다툼없음 | | | | | 645.00 |
| | 530 | #3,4연료조절펌프실 | 44.84 | 44.84 | | 다툼없음 | | | | | 44.84 |
| | 531 | #5,6연료조절펌프실 | 44.84 | 44.84 | | 다툼없음 | | | | | 44.84 |
| | 532 | 가스창고-#2호기옆 | 24.00 | 24.00 | | 다툼없음 | | | | | 24.00 |
| | 533 | 가스창고-2화학부옆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534 | 가스창고-2화학부옆 | 7.92 | 7.92 | | 다툼없음 | | | | | 7.92 |
| | 535 | 가스창고-고압 | 150.00 | 150.00 | | 다툼없음 | | | | | 150.00 |
| | 536 | 질소가스저장실 | 34.76 | 34.76 | | 다툼없음 | | | | | 34.76 |
| | 537 | #3,4 질소가스저장실 | 74.00 | 74.00 | | 다툼없음 | | | | | 74.00 |
| | 538 | 분석실가스저장고 | 17.64 | 17.64 | | 다툼없음 | | | | | 17.64 |
| | 539 | #3 서비스가스창고-1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540 | #4 서비스가스창고-2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541 | #5 서비스가스창고-3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542 | #6 서비스가스창고-4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543 | 탈황설비 석회석슬러리 제조동 | 1,152.00 | 1,152.00 | | 다툼없음 | | | | | 1,152.00 |
| | 544 | 탈황설비 석고저장건물 | 2,072.90 | 2,072.90 | | 다툼없음 | | | | | 2,072.9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 인정 면적(㎡) | |
| | 545 | 탈황설비 석고반출장 | 155.15 | 155.15 | | 다툼없음 | | | | | | 155.15 | |
| | 546 | 탈황설비 석고탈수동 | 1,440.00 | 1,440.00 | | 다툼없음 | | | | | | 1,440.00 | |
| | 547 | 탈황설비 수처리건물 | 512.00 | 512.00 | | 다툼없음 | | | | | | 512.00 | |
| | 548 | 탈황설비 주제어동 흡수탑재순환펌프동-1 (한전산업 129.33 임대, 한전기공 105 임대) | 2,303.67 | 2,303.67 | | 다툼없음 | | | | | | 2,303.67 | |
| | 549 | 탈황설비 주제어동 흡스탑재순환펌프동-2 | 2,538.00 | 2,538.00 | | 다툼없음 | | | | | | 2,538.00 | |
| | 550 | 탈황설비 폐수처리동 | 1,575.23 | 1,575.23 | | 다툼없음 | | | | | | 1,575.23 | |
| | 551 | 탈황설비 터터(TT)-01 | 107.39 | 107.39 | | 다툼없음 | | | | | | 107.39 | |
| | 552 | 탈황설비 터터(TT)-02 | 313.57 | 313.57 | | 다툼없음 | | | | | | 313.57 | |
| | 553 | 탈황설비 터터(TT)-03 | 156.81 | 156.81 | | 다툼없음 | | | | | | 156.81 | |
| | 554 | 탈황설비 터터(TT)-04 | 417.29 | 417.29 | | 다툼없음 | | | | | | 417.29 | |
| | 555 | 탈황설비 터터터(TTT)-01 | 595.92 | 595.92 | | 다툼없음 | | | | | | 595.92 | |
| | 556 | 탈황설비 엘브이(LV)-02 | 145.54 | 145.54 | | 다툼없음 | | | | | | 145.54 | |
| | 557 | 탈황설비 #3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 7.84 | |
| | 558 | 탈황설비 #4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 7.84 | |
| | 559 | 탈황설비 #5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 7.84 | |
| | 560 | 탈황설비 #6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 7.84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본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61 | 복합 주제어건물-1 | 4,427.79 | 4,427.79 | | 다툼없음 | | | | | 4,427.79 |
| | 562 | 복합 주제어건물-2 | 4,427.79 | 4,427.79 | | 다툼없음 | | | | | 4,427.79 |
| | 563 | 복합 #1 가스터빈건물-1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564 | 복합 #2 가스터빈건물-1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565 | 복합 #3 가스터빈건물-2 | 1,190.35 | 1,190.35 | | 다툼없음 | | | | | 1,190.35 |
| | 566 | 복합 #4 가스터빈건물-2 | 1,190.35 | 1,190.35 | | 다툼없음 | | | | | 1,190.35 |
| | 567 | 복합 #5 가스터빈건물-3 | 1,093.45 | 1,093.45 | | 다툼없음 | | | | | 1,093.45 |
| | 568 | 복합 #6 가스터빈건물-3 | 1,093.45 | 1,093.45 | | 다툼없음 | | | | | 1,093.45 |
| | 569 | 복합 #7 가스터빈건물-4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570 | 복합 #8 가스터빈건물-4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571 | 복합 #1 스팀터빈-1 | 9,387.02 | 9,387.02 | | 다툼없음 | | | | | 9,387.02 |
| | 572 | 복합 #2 스팀터빈-1 | 9,387.03 | 9,387.03 | | 다툼없음 | | | | | 9,387.03 |
| | 573 | 복합 #3 스팀터빈-2 | 9,387.02 | 9,387.02 | | 다툼없음 | | | | | 9,387.02 |
| | 574 | 복합 #4 스팀터빈-2 | 9,387.03 | 9,387.03 | | 다툼없음 | | | | | 9,387.03 |
| | 575 | 복합 #1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576 | 복합 #2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부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77 | 복합 #3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578 | 복합 #4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579 | 복합 #5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580 | 복합 #6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581 | 복합 #7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582 | 복합 #8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583 | 복합 공기압축기실및 비상발전기실 | 245.58 | 245.58 | | 다툼없음 | | | | | 245.58 |
| | 584 | 복합 종합창고 | 2,600.84 | 2,600.84 | | 다툼없음 | | | | | 2,600.84 |
| | 585 | 복합 유지창고 | 365.06 | 365.06 | | 다툼없음 | | | | | 365.06 |
| | 586 | 복합 염소주입실 | 252.58 | 252.58 | | 다툼없음 | | | | | 252.58 |
| | 587 | 복합 급수펌프실 | 76.78 | 76.78 | | 다툼없음 | | | | | 76.78 |
| | 588 | 복합 순수공급펌프실 | 92.81 | 92.81 | | 다툼없음 | | | | | 92.81 |
| | 589 | 복합 연료유공급펌프실 | 204.52 | 204.52 | | 다툼없음 | | | | | 204.52 |
| | 590 | 복합 해수취수펌프실 | 173.05 | 173.05 | | 다툼없음 | | | | | 173.05 |
| | 591 | 복합 #1,2 질소가스창고-1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 | 592 | 복합 #3,4 질소가스창고-2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 인정 면적(㎡) | |
| | 593 | 복합 #5,6 질소가스창고-3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 25.97 | |
| | 594 | 복합 #7,8 질소가스창고-4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 25.97 | |
| | 595 | 복합경비실 | 57.86 | 57.86 | | 다툼없음 | | | | | | 57.86 | |
| | 596 | 복합 망루-1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 12.99 | |
| | 597 | 복합 망루-2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 12.99 | |
| | 598 | 복합 망루-3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 12.99 | |
| | 599 | 복합 망루-4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 12.99 | |
| | 600 | 복합 망루-5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 12.99 | |
| | 601 | 콘테이너하우스 | 36.00 | 36.00 | | 다툼없음 | | | | | | 36.00 | |
| | 602 | 복합발전용 가스분석기실 | 17.50 | 17.50 | | 다툼없음 | | | | | | 17.50 | |
| | 603 | 분진측정실 | 32.00 | 32.00 | | 다툼없음 | | | | | | 32.00 | |
| | 604 | 망루 | 7.92 | 7.92 | | 다툼없음 | | | | | | 7.92 | |
| | 605 | 경비실 | 10.00 | 10.00 | | 다툼없음 | | | | | | 10.00 | |
| | 606 | 탈황 #3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 282.60 | |
| | 607 | 탈황 #3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 840.00 | |
| | 608 | 탈황 #4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 282.60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 609 | 탈황 #4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 | 840.00 |
| | 610 | 탈황 #5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 | 282.60 |
| | 611 | 탈황 #5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 | 840.00 |
| | 612 | 탈황 #6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 | 282.60 |
| | 613 | 탈황 #6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 | 840.00 |
| | 614 | 빙카 | 7.20 | 7.20 | | 다툼없음 | | | | | | | 7.20 |
| | 615 | 주산면 화평리 정수장 | 132.19 | 132.19 | | 다툼없음 | | | | | | | 132.19 |
| | 616 | 기타건물 | 5,777.66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원고가 신고절차 없이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건물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18호증 1내지3<br>을제36호증 1<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5,838.95에서 5,777.66로 면적 정정 | 컨테이너등(을제18호증2) 중 순번 25, 26 기재 건물 84.96㎡ 은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 나머지 건축물은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 인정 | 5,692.70 |
| 합계 | | | 3,781,034.53 | 478,409.59 | | | | - | - | | | | 1,110,961.9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참고(순번342번)

| 컨베이어설비명 | 피고 면적 | 오류 내용 | 인정 면적 | 차이 |
|---|---|---|---|---|
| BC43A/B의 A | 1,142.10 | 수평투영 오류 | 1,057.50 | 84.6 |
| BC4A/B | 827.51 | 상동 | 788.5 | 39.01 |
| BC22 | 397.59 | 상동 | 365.6 | 31.99 |
| BC23 | 391.5 | 상동 | 360 | 31.5 |
| BC12A/B의 A | 2,071.30 | 상동 | 1,770.23 | 301.07 |
| BC61 | 531.81 | 상동 | 467.4 | 64.41 |
| BC62 | 330.72 | 상동 | 300.3 | 30.42 |
| BC63 | 396.4 | 상동 | 328 | 68.4 |
| BC64 컨베이어 | 402.3 | 상동 | 346.5 | 55.8 |
| BC66A/B | 598.98 | 상동 | 475.7 | 123.28 |
| BC53A/B의 C | 988.22 | 상동 | 904.62 | 83.6 |
| BC40A/B의 A | 2,302.30 | 상동 | 1,995 | 307.3 |
| BC33A/B | 973.44 | 합계 오류 | 802.42 | 171.02 |
| BC32A/B | 775.96 | 합계 오류 | 664.48 | 111.48 |
| | | | 합계 | 1503.8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열람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4 20 연면적 산정표

| 구분 | 순번 |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 | 석회석부두 | 2,573.00 | 0.00 | 비과세대상 | 1. 평탄화 목적으로 토지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으로서 지번이 부여된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89).<br>2.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 산정시 포함되는 시설물은 수조, 저유소,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제한되는 것임(본건 부과처분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석회석부두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 갑가제7호증 | 본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산지방항만청으로부터 항만시설로 임차한 시설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 제2항)의 적용 시기가 2007.1.1이므로 동시설물은 2007년 귀속분부터 과세 제외 대상임.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을제3호증1: 항만시설 인수인계서<br>을제41호증: 항만시설 임대내역 | 선박에서 자재를 하역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항만시설로서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2,573.00 |
| | 2 | 물양장 | 6,558.00 | 0.00 | 비과세대상 | 1. 회사가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국유지-오포리 1158).<br>2. 물양장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 상동 | 상동 | 상동 | 하역한 자재 등을 적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야적장으로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6,558.00 |
| | 3 | 호 안 | 6,460.00 | 0.00 | 비과세대상 | 1. 인위적 가공없이 토지위에 돌을 엎어 놓은 것으로서 시설물아님.<br>2.호안은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위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음 | 상동 | 상동 | 상동 | 사업장 시설을 해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시설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6,460.00 |
| | 4 | 케이블터널 | 38,697.36 | 7,346.57 | 면적산출오류 | 1.원고가 제출한 자산현황집계표상 숫자는 케이블 면적이 아니라 길이임.<br>2. 도면을 기초로 산출한 케이블터널 면적은 기제출한 케이블터널 현황대로 7,346.57임 | 케이블터널현황(갑가제14호증)<br>공문(갑가제25호증) |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고 당초 56,981.5로 계산되었다가 착오 면적(17,684.14)을 제외하고 증액경정(2011.4월)시38,697.36으로 정정과세 하였고, 산출도면과 현황사진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 확인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음. | 을제25호증1:면적산출내역 및 집계표<br>을제25호증2내지4: 산출도면<br>을제25호증5내지220: 현황사진<br>을제29호증: 케이블터널도면<br>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면적 누락분<br>참고자료10: 복합배수케이블도면 | 을 제25호증의 1의 기재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면적을 인정함. | 38,697.36 |
| | 5 | 케이블보호철판 | 1.50 | 0.00 | 비과세대상 | 1.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 철판을 임시로 둘러둔 것임(정착구조물 아님)<br>2. 정착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임. | | 케이블보호를 위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로 과세대상에 아견이 없는 시설로 원고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을제25호증14: 현황사진<br>참고자료1: 대법원2000두1744<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정착 구조물로 보이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각재 | |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6 | EDB 맨홀 | 2.56 | 0.00 | 기과세 | 1.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br>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 갑가 제55호증 |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캐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캐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 담당자는 캐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br>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br>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br>*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 을제25호증35,36<br>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입증사진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7 | 케이블 트레이 | 110.00 | 0.00 | 면적중복 |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 제3호증의 3 제17면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산출 되어야 함. | 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br>을제25호증37 | 컨베이어벨트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연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8 | EDB 맨홀 | 26.94 | 0.00 | 기과세 | 1.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면적에 포함되어 기과세<br>2. 을 제25호증의 1에서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 명목으로 17,361.6㎡, '기력 1~6호기 앞" 명목으로 4,505㎡를 추가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위 '기력 1~6호기 케드도면 산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했던 1~6호기 EDB도면(갑가 제55호증)에 근거하여 관련 케이블 시설면적을 CAD 형식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피고가 다시 사진을 찍어 제출한 '1~6호기 앞'의 시설물 사진들은 상당 부분이 위 갑가 제55호증의 도면에 이미 표시된 부분임 | 갑가 제55호증 | 기력1~6호기 EDB상 케이블맨홀은 캐드도면상에서 산출할 수 없어(캐드도면상 산출불가능하다 하여 용역사에서 맨홀부분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전체면적에서 제외되었음. 당초 원고회사담당자는 케드도면상의 면적이 18,000㎡상회하는 것으로 답변하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용역해서 산출한 면적임.<br>원고회사답변면적: 18,000㎡상회,<br>피고용역산출면적: 17.361.6㎡<br>*원고산출면적보다 638여㎡줄어든 면적으로 산출(맨홀제외됨) | 을제25호증101내지 103<br>을제25호증128<br>을제43호증1내지3: 맨홀누락분사진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9 | 케이블시설 | 0.70 | 0.00 | 면적중복 | 1. 케이블 터널면적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과세<br>2. 케이블터널의 부속시설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 갑가제3호증 1내지3 | 케이블시설은 터널과 케이블로 구분되기에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산출되어야 함. | 을제25호증104<br>을제45호증: 을제25호증 104위치 입증사진 | 별도의 시설물이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0 | 케이블트레이및전선관 | 1,487.62 | 0.00 | 면적중복 | 1. 해당시설은 기과세된 컨베이어 벨트 아래 위치하여 컨베이어벨트 면적 산출과 중복됨<br>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 따라, 구조적인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시설물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음. | 갑가제3호증의 3 제17면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25호증37<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컨베이어벨트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연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근거 감재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각재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1 | 케이블 터널 345kV | 0.00 | 898.36 | 면적산출오류 | 피고가 345kV케이블 터널을 13078.36㎡으로 과세하였으나, 898.36㎡임 | | 피고가 면적 실측을 통하여 재산정한 결과임. | 을제25호증의 1내지 221<br>*2015.11.17 석명명령 제출 자료에 따른 당초 13,078.36에서 0로 면적정정<br>(순번목록 4 케이블터널내 면적중복) | | 0 |
| | 12 | 취수장케이블트레이 | 858.00 | 0.00 | 면적중복 |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br>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제3호증3 |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을제25호증15<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취수장과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면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3 | 취수장케이블트레이 | 433.20 | 0.00 | 면적중복 | 1. 해당시설은 전선부식을 막기 위해 케이블을 싸고 있는 관임. 또한 취수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br>2.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취수장 내에 위치한 것이므로 취수장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제3호증1 |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을제25호증208,209<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상동 | 0.00 |
| | 14 | CWP 케이블트레이 | 30.00 | 0.00 | 면적중복 | 해당시설은 CWP 내부에 위치하여 CWP면적 산출과 중복됨 | 갑가제3호증3, 갑가제15호증 | 동 시설은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부합하고, 독립적으로 별도 시설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각각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을제25호증84<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CWP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시설물로 연면적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나,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5 | 옹벽 1,2,3등 | 19,173.62 | 0.00 | 비과세대상 | 사업장경계, 비탈 경계, 도로경계턱으로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토지의 부합물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 | | 정착구조물의 사전적의미는 '엮어서 만든 물건'으로 지방세실무해설에서도 담장,옹벽 등을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음.<br>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 이며 또한, 원고 자산관리대장에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임. | 을제26호증80내지88,을제26호증89내지92,을제26호증94내지97,을제26호증101내지105,을제116,117 , 을제26호증116내지119,을제26호증27내지129<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3,698.07에서 19,173.62로 면적정정 | 사업장 시설이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담, 경계, 제방, 방파제 등의 시설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19,173.62 |
| | 16 | 옹벽24 | 1,040.00 | 0.00 | 비과세대상 | 사업장의 경계밖이며, 국가소유 구거의 옹벽임(영보리 741) | 갑가 제57호증, 갑가 제58호증 | 제방호안으로 공작물에 해당되어 안분계산대상임. 또한,을제47호증1,2의 현황사진과 같이 해당구거는 원고가 수문시설까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에 대해서만 산출함. (구거는 사업장면적에 미포함) 또한 동 시설은 원고가 사업장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어야 함. | 을제26호증106<br>을제47호증1,2: 수문시설현황사진<br>참고자료6: 지방세해설자료 |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7 | 옹벽25-27 | 3,194.12 | 0.00 | 비과세대상 | 비탄방지팬스의 기초로서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별도 시설물 아님 | | 동 시설은 발전연료인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과 석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 을제1호증4 9,10면: 원고법인장부<br>을제26호증107,108 |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의 외부 유출과 저탄장으로의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담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 3,194.12 |
| | 18 | 옹벽28-30 | 7,233.40 | 0.00 | 비과세대상 | 사업장 울타리 밖이며, 토지에 돌을 올려 덮어놓은 것임 | | 해안침식으로부터 원고사업장을 보호하는 호안시설로 바탈면에 시설한 공작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원고의 자산관리장부에서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는 시설물임 | 을제26호증109내지111<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자료 |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19 | 옹벽 31,32 | 13,185.00 | 0.00 | 비과세대상 | 충청남도가 소유 및 관리중인 제방(고정리 382, 송학리 996) | 갑가 제59호증, 갑가 제60호증 | 항만시설의 호안과 같은 시설로 공작물이며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 사용되는 시설물임. 또한 자산관리대장상에 원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을제1호증4 24면: 회처리제방이용내역<br>을제26호증112,113 | 이 목록 순번 3번 기재 호안과 같은 용도의 시설물로, 원고가 충청남도로부터 이용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을 제1호증의2),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함. | 13,185.00 |
| | 20 | 옹벽34-1,34-2,54~56 | 8,290.65 | 0.00 | 비과세대상 |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br>※ 침전조 : 탄과 섞인 빗물이 발전소 밖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탄을 침전시킴 | | 공작물인 저수조 호안으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임. 또한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구조물을 안분대상으로 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임. | 을제26호증114,을제26호증130 | 저탄장 침전조를 만들기 위해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이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8,290.65 |
| | 21 | 옹벽57,58 | 1,581.20 | 0.00 | 비과세대상 |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br>2. 우수 방류구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 | 석탄 등이 우수로 인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물로 원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원고가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정착구조물임. | 을제26호증131<br>참고자료: 대법원2000두1744 | 상동 | 1,581.20 |
| | 22 | 옹벽59~62 | 3,152.40 | 0.00 | 비과세대상 | 1. 저탄장 침전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시설물 아님<br>2. 회처리장에 쓰이는 물이 지나는 통로의 외벽으로서 별도 시설물 아님 | | 설계도면상에 return pond로 표기되어 있고, 회처리장은 원고사업장의 기간시설로 동 시설가동을 위해서 쓰이는 용수처리를 위한 시설로 원고의 사업장운영에 직접사용되는 정착구조물 임. | 을제26호증132<br>을제26호증133 | 상동 | 3,152.40 |
| | 23 | 옹벽63 | 27,280.00 | 0.00 | 비과세대상 | 국가소유 구거(영보리 741, 산36-2) | 갑가 제57,58호증 | 북부회처리장의 침식과 구거의 유속으로부터 회처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옹벽을 축조한 제방형 호안인 공작물임.<br>※구거면적 산출한 것이 아님. | 을제26호증134<br>을제47호증: 원고회사수문시설<br>을제47호증2: 수문출입구사진 | 원고가 점유, 사용하는 사업장 내의 시설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4 | 옹벽11 | 304.92 | 0.00 | 기과세 | 복합후문앞 배수로로서 배수로는 전체 기과세됨 | 갑가제3호증의3 1면, 갑가제3호증의2 1면 갑가제3호증의3 5면 | 폭 30.2m, 길어 42.35m의 시설물로 배수로로 기과세되지 않았음.<br>배수로 적용시, 1,278.97㎡에 달하나 배수로 면적으로 산출된 내역이 없는 상황임.<br>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급배수시설로 적용하지 못하고 시설물양옆 옹벽시설에 대해서만 적용 | 을제26호증93<br>을제60호증14: 외곽배수로 계통설명서 | 배수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으로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이 면적에는 배수로 면적과는 별도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 | 304.92 |
| | 25 | 옹벽17 | 23.46 | 0.00 | 기과세 | 옹벽이 아닌 케이블터널 시설임 | | 케이블터널시설과는 별도인 복합수조옆 공작물시설임. | 을제26호증98<br>을제46호증: 옹벽시설 사진 보완자료 | 사업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사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만든 옹벽에 해당하므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케이블터널 시설과 별도로 시공한 시설물로 보임. | 23.46 |
| | 26 | 옹벽64~66 | 3,570.00 | 0.00 | 기과세 | 우수배수로로 기과세됨 | | 원고주장 배수로는 구내도로변의 우수배수로와 저탄장내의 우수배수로 일부이며, 외곽배수로의 경우 폭 1.8m와 4.4m 및 1.5m로 기 과세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 없이 기과세 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것 임. | 을제26호증135,136 | 배수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돌망태 등을 쌓아 만든 제방으로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우수배수로 면적과는 별도로 계산된 것으로 보임. | 3,570.00 |
| | 27 | 2부두Air라인 | 11.50 | 0.00 | 비과세대상 | 공기배관은 2006년부터 비과세대상 | | 당초 원고가 공기배관으로서 2006년부터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한 시설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적용일이 2007.1.1이므로 2007년 귀속분부터 제외대상임. | 을제32호증5©<br>참고자료15: 법령적용 지방세실무해설 | 2006년 과세분까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 전부가 과세대상임. | 11.50 |
| | 28 | 스팀관 | 150.00 | 0.00 | 비과세대상 | 스팀관은 2006년부터 비과세대상 |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적용일이 2007.1.1이므로 2007년 귀속분부터 제외대상임. | 을제32호증67,68<br>참고자료15: 법령적용 지방세 실무해설 | 상동 | 150.00 |
| | 29 | 스팀관 | 819.00 | 0.00 | 비과세대상 | 상동 |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br>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br>건물외부의 시설물을 건물내부 시설물과 연결되어 있다며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는 것임.지방세법시행령 개정적용일이 2007.1.1이므로 2007년 귀속분부터 제외대상임. | 을제32호증23,24 | 상동 | 819.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치열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 위법 사유 기재 |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 30 | 법면 | 57,140.00 | 0.00 | 비과세대상 | 1. 법면은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br>산비탈은 토지이며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아님<br>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법면은 별도 시설물이 없는 단순 산비탈임 | 갑가제72호증 | 을제37호증5내지6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설계서상에 옹벽,반원흡관,블록시설을 하고 있어 단순 산비탈이라는 원고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동 시설은 빗물등에 의한 토사의 유출로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원고사업장에 직접사용되는 시설임. | 을제37호증2내지4: 계산면적<br>을제37호증5,6: 시설물시설내역<br>을제39호증1내지4: 옹벽,반원흡관 콘크리트 블록시설 현황 사진 | 법면 지상에 일정한 간격으로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고 흡관, 배관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 | 57,140.00 |
| | 31 | CWP 옆 구조물 | 6,045.20 | 0.00 | 비과세대상 | 1.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음.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님<br>2. CWP 옆은 대지 및 옹벽으로서 구조물이 아니며, 피고가 주장하는 면적은 당초 과세처분시 피고 스스로가 과세근거로 삼았던 면적보다도 증가한 것으로서 피고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 추가한 면적임. | 갑가제15호증, 갑가제3호증 1내지3, 갑가제26호증 | 원고가 사업장으로 직접사용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시설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구체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CWP옆 콘크리트 구조물과 취수장옆 구조물 및 옹벽시설과 기계장치 작업장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임. (을 제26호증1~137로 입증 완료) | 을제26호증1~137<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자료<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94,073.97에서 6,045.2로 면적 정정 | 시설물 보존과 사용을 위하여 타설하여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므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로서 연면적에 포함.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계장치와 별개의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을제15호증의 순번 17-19, 을제26호증의1) | 6,045.20 |
| | 32 | POND(연못) | 21,575.25 | 0.00 | 비과세대상 | 1. 피고가 주장하는 폰드는 저탄장 침전로로서 바닥도 흙이며, 가장자리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br>2.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POND는 법면에 돌망태를 올려 덮어놓은 것으로 과세대상 시설물 아님. | | 저탄장에서 비산하는 탄과 외부로 유출되는 탄 및 연탄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에 의한 이송 중 떨어지는 낙탄 등을 동 시설로 유도 침전시켜 처리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물을 가두기 위해 견고한 옹벽 등으로 축조한 일종의 수조형태의 옥외저장시설물임.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POND (연못)시설은 당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함.(사진자료 등을 통해 기입증 완료함)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br>을제26호증129내지133<br>을제34호증 | 바닥 자체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그 제방을 연면적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닥 면적 자체는 제외되어야 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근거 과세 | | | 원고 주장과 처분 위법 사유 개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3 | 공업용수저수지 | 115,153.00 | 0.00 | 비과세대상 | 피고가 주장하는 저수지는 인위적 시설물이 아닌 단순 저수지이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오프리 720참). 마을에서는 깊은골 저수지라 칭하고 있음. | | 원고의 전력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순수(원수)공급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축조한 옥외저장시설물로 송수관을 연결하여 전력생산시설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한 일종의 수조형태를 갖추고 있는 정착구조물임. 동시설과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과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사업장 연면적을 안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입법취지상 동시설은 당연히 과세면적에 포함되어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br>을제74호증1내지3 | 상동 | 0.00 |
| | 34 | 남부회처리장 | 1,360,366.00 | 0.00 | 비과세대상 |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br>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 | 유연탄 연소후 발생되는 탄재를 물과함께 섞어 이송관을 통하여 배출후 저장하는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슬러지 형태의 유해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탄재가 바다와 인근 농경지 및 마을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옹벽과 견고한 제방을 축조하여 시설한 인위적 정착구조물임. 또한 동시설은 원고가 발전소 설립 단계부터 회처리장 건설계획(을제75호증)을 수립하고 건설 준공한 원고의 사업장 중 기간시설이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기준은 법인소득 발생에 기여하는 인적설비인 종업원과 물적설비인 사업장 연면적으로 사업장 연면적은 법인소득발생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건물을 포함한 모든 정착물을 의미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대법원의 판단임. 동시설과 형태 및 이용적 측면에서 유사한 시설인 수력발전소의 댐시설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 참고자료 1 : 대법원선고2000두1744<br>참고자료6: 지방세실무해설<br>참고자료24: 서울고법99누8468<br>을제75호증 | 상동 | 0.00 |
| | 35 | 북부회처리장 | 1,072,596.00 | 0.00 | 비과세대상 | 1. 회처리장은 기존의 바다를 막아 공유수면상태에 제방을 쌓아 회를 쌓아두는 장소이며, 회처리장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이므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br>2. 회처리장을 옥외저장시설물이라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함. 해당 회처리장의 바닥과 옆면은 자연상태의 흙바닥, 흙제방으로서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 | | 상동 | 상동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기타 시설 | 다툼없는 기타시설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36 | 케이블 터널 154kV | 336.14 | 336.14 | | 다툼없음 | | |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37 | 항만시설(1부두) MT DOCK | 7,242.00 | 7,242.00 | | 다툼없음 | | | | | 7,242.00 |
| | 38 | ACESS ROAD | 1,322.00 | 1,322.00 | | 다툼없음 | | | | | 1,322.00 |
| | 39 | CAT WALK-1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40 | CAT WALK-2 | 78.00 | 78.00 | | 다툼없음 | | | | | 78.00 |
| | 41 | CAT WALK-3 | 40.00 | 40.00 | | 다툼없음 | | | | | 40.00 |
| | 42 | CAT WALK-4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43 | MD-1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 | 44 | MD-2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 | 45 | MD-3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 | 46 | MD-4 | 100.00 | 100.00 | | 다툼없음 | | | | | 100.00 |
| | 47 | 항만시설(2부두) MT DOCK | 7,574.00 | 7,574.00 | | 다툼없음 | | | | | 7,574.00 |
| | 48 | ACESS ROAD | 1,206.00 | 1,206.00 | | 다툼없음 | | | | | 1,206.00 |
| | 49 | CAT WALK-1 | 136.00 | 136.00 | | 다툼없음 | | | | | 136.00 |
| | 50 | CAT WALK-2 | 40.00 | 40.00 | | 다툼없음 | | | | | 40.00 |
| | 51 | CAT WALK-3 | 63.00 | 63.00 | | 다툼없음 | | | | | 63.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2 | CAT WALK-4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53 | MD-5 | 200.00 | 200.00 | | 다툼없음 | | | | | 200.00 |
| | 54 | MD-6 | 200.00 | 200.00 | | 다툼없음 | | | | | 200.00 |
| | 55 | MD-7 | 200.00 | 200.00 | | 다툼없음 | | | | | 200.00 |
| | 56 | 희이송관받침대 | 28,396.00 | 28,396.00 | | 다툼없음 | | | | | 28,396.00 |
| | 57 | 케이블터널 | 481.00 | 481.00 | | 다툼없음 | | |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58 | 케이블터널 | 214.00 | 214.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 | 59 | 케이블터널 | 1,089.00 | 1,089.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 | 60 | 케이블터널 | 1,797.00 | 1,797.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 | 61 | 케이블터널 | 1,130.00 | 1,130.00 | | 다툼없음 | | | | 상동 | 0.00 |
| | 62 | BC-1A/B | | | | 다툼없음 | | | 이 목록 순번 343번 기재 7, 8호기 컨베이어 설비에 중복되어 면적 삭제 | | |
| | 63 | BC-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4 | BC-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5 | BC-4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6 | BC-4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7 | BC-4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68 | BC-8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자료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69 | BC-9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0 | BC-22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1 | BC-23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2 | BC-1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3 | BC-61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4 | BC-62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5 | BC-63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6 | BC-64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7 | BC-66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8 | BC-11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79 | BC-51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0 | BC-5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1 | BC-5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2 | BC-40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3 | BC-36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4 | BC-37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5 | BC-33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각각 근거 각각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86 | BC-32A/B | | | | 다툼없음 | | | 상동 | | |
| | 87 | 구조물(북부남쪽제방) | 5,040.00 | | 불특정 |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이 안됨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1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회처리장을 유지하는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5,040.00 |
| | 88 | 구조물(북부동쪽제방) | 14,25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2 | 상동. 다만 면적은 피고 제출 증거에 따라 6,256㎡(= 8m × 782m) 인정함. | 6,256.00 |
| | 89 | 구조물(북부서쪽제방) | 8,635.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3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회처리장을 유지하는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8,635.00 |
| | 90 | 구조물(남부서쪽제방) | 4,99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4 | 상동 | 4,992.00 |
| | 91 | 구조물(남부동쪽제방) | 5,836.7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5 | 상동 | 5,836.71 |
| | 92 | 저탄장 | 138,252.80 | | 불특정 | 상동 | | 저탄장시설은 외국에서 수입한 유연탄을 부두에서 이송설비(컨베이어시설)을 통하여 이송 저장 후 기계장치를 이용 보일러에 탄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바닥에는 철재 빔시설을 하여 탄 저장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를 방지하였고 주위에는 견고한 옹벽으로 탄의 외부 유출 방지시설과 함께 유연탄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산탄 방지시설을 하는 등 동 시설은 원고의 전력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안분대상 면적에 포함됨은 다툼의 여지가 없음.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29~231, 1481p<br>을제83호증 6<br>*2015.11.17 석명명령자료 제출시, 변경면적 220,761㎡으로 제출했으나 면적착오이기에 당초면적으로 수정.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매립지 침하를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속을 채운 철재 파이프를 바닥 면에 매설하여 만든 저탄장시설로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138,252.8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93 | 남부회사장선착장 | 175.00 | | 불특정 | 상동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p | 시설물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175.00 |
| | 94 | 북부회사장교량 | 24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3p<br>을제83호증 7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교량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240.00 |
| | 95 | 공업용수제방 | 1,650.00 | | 불특정 | 상동 | | 사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 설계계산서 11-13P<br>을제83호증 8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제방으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1,650.00 |
| | 다툼없는 내부도로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96 | 해안도로<br>(기력1,2호기) | 24,000.00 | | |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 | 각종 기계장비의 이동과 운행, 종업원의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 원고가 사업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 되고, 또한 지방세실무 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을제64호증 1내지48<br>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포장도로는 차량 운행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24,000.00 |
| | 97 | 주도로<br>(기력1,2호기) | 8,5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8,560.00 |
| | 98 | 간선도로<br>(기력1,2호기) | 22,4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2,400.00 |
| | 99 | 보조간선도로<br>(기력1,2호기) | 2,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080.00 |
| | 100 | 주도로<br>(기력3,4호기) | 2,9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960.00 |
| | 101 | 간선도로<br>(기력3,4호기) | 3,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080.00 |
| | 102 | 보조간선도로<br>(기력3,4호기) | 5,4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5,48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근거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03 | 주도로 (기력5,6호기) | 2,9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960.00 |
| | 104 | 간선도로 (기력5,6호기) | 3,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080.00 |
| | 105 | 보조간선도로 (기력5,6호기) | 5,4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5,480.00 |
| | 106 | 내부도로 (복합 유수분리기 옆) | 104.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04.00 |
| | 107 | 내부도로 (복합 터빈건물 뒤) | 1,6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680.00 |
| | 108 | 내부도로 (복합 경유탱크 옆) | 3,878.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878.00 |
| | 109 | 내부도로 (복합 1호기) | 411.6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411.60 |
| | 110 |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앞) | 8,257.46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8,257.46 |
| | 111 | 내부도로 (복합발전소 뒤) | 421.84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421.84 |
| | 112 |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원프랜트입구) | 1,7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760.00 |
| | 113 | 내부도로 (복합원프랜트입구~취수장입구) | 2,8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880.00 |
| | 114 | 내부도로 (복합취수장입구~배수관로) | 4,0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4,000.00 |
| | 115 | 내부도로 (복합배수관로~후문앞) | 1,44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440.00 |
| | 116 | 내부도로 (복합후문앞~후문경비실) | 2,32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320.00 |
| | 117 | 내부도로 (복합후문입구~유수분리기옆) | 4,64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4,640.00 |
| | 118 | 내부도로 (본관입구~후문입구) | 5,6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5,600.00 |
| | 119 | 내부도로 (본관~식당입구) | 3,12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120.00 |
| | 120 | 내부도로 (구본관앞~우회도로) | 1,96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96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근거 감정 | |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감정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21 | 내부도로<br>(테니스장앞~횡단도로) | 1,6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680.00 |
| | 122 | 내부도로<br>(종합창고뒤~횡단도로) | 1,92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920.00 |
| | 123 | 내부도로<br>(종합창고~간선도로) | 1,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080.00 |
| | 다툼없는 주차장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124 | 주차장<br>(기력발전소 교육원) | 500.00 | | | 도로 위 콘크리트 타설된 것으로 시설물 아님 | | 주차장시설은 원고가 각종 기계장비의 주차와 종업원의 주차 등 원고의 사업운영에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구조물로 당연히 사업장 안분면적에 포함되고, 또한 지방세실무 해설에서도 안분면적 포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천 인제 양양군도 사업장 면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을제65호증 1내지23<br>참고자료 1: 대법원2000두1744판결<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포장된 주차장은 차량 주, 정차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인 시설물 등에 해당하여 연면적 산정에 포함함. | 500.00 |
| | 125 | 주차장<br>(기력발전소 구본관앞) | 1,2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200.00 |
| | 126 | 주차장<br>(기력발전소 구본관뒤) | 1,575.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575.00 |
| | 127 | 주차장<br>(기력발전소 종합창고앞) | 1,2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200.00 |
| | 128 | 주차장<br>(기력발전소 종합창고옆) | 87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870.00 |
| | 129 | 주차장<br>(기력발전소 식당앞) | 3,0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000.00 |
| | 130 | 주차장<br>(기력발전소 본관옆) | 1,0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000.00 |
| | 131 | 주차장<br>(기력발전소 본관앞) | 2,7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700.00 |
| | 132 | 주차장<br>(기력1호기 변압기옆) | 382.32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82.32 |
| | 133 | 주차장<br>(기력2호기옆) | 946.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946.00 |
| | 134 | 주차장<br>(기력3호기옆) | 1,08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08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35 | 주차장 (기력3호기변압기옆) | 156.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56.00 |
| | 136 | 주차장 (사원로앞) | 600.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600.00 |
| | 137 | 주차장 (기력6호기옆) | 1,477.0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477.00 |
| | 138 | 주차장 (복합발전소옆) | 875.96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875.96 |
| | 139 | 주차장 (복합 전력기술앞) | 134.64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34.64 |
| | 140 | 주차장 (복합 경유저장탱크옆) | 355.6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355.60 |
| | 141 | 주차장 (복합발전소옆) | 256.80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256.80 |
| | 142 | 주차장 (복합발전소앞) | 1,896.69 |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1,896.69 |
| | | **다툼없는 가스관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143 | N2저장조관련 가스관 | 2.04 | 2.04 | | 다툼없음 | | | | | 2.04 |
| | 144 | 가 스 관 | 504.51 | 504.51 | | 다툼없음 | | | | | 504.51 |
| | | **다툼없는 복개시설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145 | 복개시설(취수장다리) | 1,293.18 | 1,293.18 | | 다툼없음 | | | | | 1,293.18 |
| | 146 | 스팀배관맨홀 | 16.93 | 0.00 | 기과세 | 피고가 관련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는 을 제25호증의 33에서는 분명히 "케이블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 외에 을 제42호증에서도 정확히 어떤 시설물을 추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 기력2호기 연돌뒷편 및 기력1,2호기 저장탱크옆에 위치하고 있고 케이블 보관시설(맨홀)로 과세사실없음.(중복아님) | 을제25증33: 현황사진<br>을제42호증: 을제25호증33 보완사진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47 | 우수맨홀 | 8.05 | 0.00 | 기과세 | 갑가 제3호증의1 5면, 갑가 제3호증의2 1면,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각 우수배수관로(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 갑가제3호증의1내지3 | 중복되지 않은 맨홀임. | 을제25호증79,80, 을제25호증129<br>을제34호증6내지9<br>을제44호증3,4: 을제25호증79 보완사진<br>을제58호증1내지4: 원고주장오류입증자료 | 이 목록 순번 4번 기재 케이블터널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 제25호증의 5의 62, 63, 107번), 제외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근거 자료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급배수시설 | 148 | 우수맨홀 | 7.50 | 0.00 | 기과세 | 갑가 제3호증의3 1면에서 빗물배수로로 기과세함 | | 6호기 플라이애쉬펌프시설로 기계장치임. 중복사항이 아님. | 을제31호증30 | 기과세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7.50 |
| | 149 | 우수배수로 | 13,655.65 | 0.00 | 기과세 | 우수배수로로 기과세한 사안이며,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떤 시설물이 추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 갑가제56호증의3, 14, 17, 21, 22 | 우수배수로와 전혀 다른 엉뚱한 도면에 해당시설물을 표기후 중복주장. | 을제34호증1내지16<br>을제58호증1내지4: 갑가제56호증이 사실과 다른 주장임을 입증하는 현황사진. | 을 제34호증의 1 가재 목록 중 소화관로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면적으로 기과세되었다고 볼 증거 없음. | 13,655.65 |
| | | **다툼없는 급배수시설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150 |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 2,637.00 | 2,637.00 | | 다툼없음 | | | | | 2,637.00 |
| | 151 | 냉각수 배수관로 | 30.10 | 30.10 | | 다툼없음 | | | | | 30.10 |
| | 152 | STRUCTURE<br>(배수관로 말단구조물) | 327.58 | 327.58 | | 다툼없음 | | | | | 327.58 |
| | 153 | 배수관로 | 3,351.92 | 3,351.92 | | 다툼없음 | | | | | 3,351.92 |
| | 154 | 구내도로변 빗물 배수로 | 8,672.00 | 0.00 | | 급배수시설이므로 2006, 2007년부터는 비과세 | | 2006년도 귀속분 법인세할주민세 납세의무 확정일은 사업년도 종료일인 2006.12.31.이고,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제130조의5 제2항)은 2006.12.30. 개정되어 그적용 시기가 2007.1.1.이므로 동시설물은 2007년 귀속분부터 과세 제외 대상임. | 참고자료 | 2006년 과세분까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 전부가 과세대상임. | 8,672.00 |
| | 155 | EXIST SANTARY WATER<br>(오수관) | 301.45 | 301.45 | | 다툼없음 | | | | | 301.45 |
| | 156 | 냉각수배수관로<br>(집수정포함) | 8,254.53 | 8,254.53 | | 다툼없음 | | | | | 8,254.53 |
| | 157 | STUCTURE(배수관로말단구조물) | 495.32 | 495.32 | | 다툼없음 | | | | | 495.32 |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58 | 배수암거 | 2,869.32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4호증 11내지12 | 이 목록 순번 149번 기재 우수배수로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59 | 배수로(저탄장 앞,뒤) | 3,236.8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4호증 13내지14<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2,643.23에서 3,236.8로 면적 정정<br>(을제34호증 13: 1,694㎡,<br>을제34호증 14: 1,542.8㎡) | 이 목록 순번 149번 기재 우수배수로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00 |
| | 160 | 외곽배수로 | 47,72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br>을제83호증 9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47,720.00 |
| | 161 | BOXCUIYERT | 1,68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br>을제83호증 10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680.00 |
| | 162 | 배수로 | 1,948.1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26호증 93 | 옹벽11에 의해 형성된 배수로임. 다만, 피고가 이 목록 순번 24번(옹벽 11)에서 옹벽11 면적 304.92㎡를 포함한 배수로 전체 면적이 1,278.97㎡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차이 면적인 974.05㎡를 초과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한도에서 면적 인정함. | 974.05 |
| | 163 | HUME PIPE | 118.9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205,1455,1467,1468p<br>을제83호증 11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18.92 |
| | 164 | 흄관 | 2,52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423p<br>을제83호증 12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520.00 |
| | 165 | 1~6호기 연돌면적 | 3,350.16 | 0.00 | 비과세대상 | 연돌은 기계장치가 아니라 시설물이며,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2006.12.30법률개정)<br>※ 연돌 : 연소가스가 보일러에서 나와 대기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통로.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공작장치임. | 가력도면(갑가 제16호증),<br>복합도면(갑가 제27호증) | 지방세법상 기계장치는 『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 하는것으로, 연돌은 원고가 과거부터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해왔고 보조참가인(서천군)등에서도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상황임. | 을제8호증: 연돌설계도면<br>을제27호증1~12: 연돌내부기계장치 및 연돌평판 사진 등<br>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br>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장치안내서<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5,247.6에서 3,350.16로 면적 정정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2006년 과세분까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 전부가 과세대상임.<br>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돌의 지하 기초까지 포함하여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면적을 계산하면 면적 산출에 오류가 없음. | 3,350.16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근거 기재 | | | 원고 주장의 전부 위법 사유 기재 | |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66 |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 연돌 | 3,320.64 | 0.00 | 기과세, 비과세대상 | 1. 피고가 2009.11월 복합연돌로 과세하고, 2011.4월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연돌로 다시 과세함.<br>또한 보일러연돌은 보일러 건물의 일부이며, 별도의 시설이 아님. 가스연돌 또한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연돌은 기계장치 아님).<br>2. 을 제42호증을 보더라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되며, 갑가 제61호증을 통해 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1호증 |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원고는 건물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것이라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건축물과 유사한 구조물임에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미포함되어 연돌은 생산시설의 일부인 기계장치로 포함되어야 함. | 을제27호증7내지11<br>을제42호증: 건물과 분리된 연돌사진<br>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안내서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3,320.64 |
| | 167 | 예비변압기 | 224.00 | 0.00 | 비과세대상 | 1. 야적된 자재임.<br>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갑가 제69호증을 보면 해당 예비변압기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9호증 | 스위치야드등이 시설되어 있어 현재 사용중이거나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변압기임. 또한, 기계장치의 경우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콘크리트로 받침대를 시설하고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시설하고 있는 변압기를 보관만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는 상황임. | 을제31호증101<br>을제53호증: 스위치야드 시설사진 | 예비용으로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기계장치이므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224.00 |
| | 168 | 연소용공기유입구 | 761.76 | 0.00 | 비과세대상 | 1. 연소용 공기유입구로서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가스터빈건물의 일부로서 건물 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을 제49호증의 1 내지 3에서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5호증 |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갑가제65호증은 해당기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현황도임.원고는 건축물입구를 기계장치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임. 건축물 도면 확인없는 주장에 불과함. | 을제31호증80<br>을제49호증1내지3: 건물과 별도로 시설된 기계장치 지지대 등 현황사진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761.76 |
| | 169 |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 | 8,245.23 | 0.00 | 특정필요 | 피고가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이라는 명칭으로 과세한 건이나, 피고의 호증만 보아서는 면적산출 근거를 알 수 없음. 또한 유인통풍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팬(fan)임. | | 펌프시설 기력1호기 옆에 시설되어 있으며 유인통풍기는 이미 도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콘크리트 구조물은 오폐수처리장의 기계실 출입구임을 증빙한 바 있으나 원고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없이 과세물건이 확인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임. | 을제31호증16, 을제31호증84<br>을제33호증55<br>을제50호증: 유인통풍기 위치도면<br>을제51호증: 유인통풍기 현황사진<br>을제57호증1내지6: 콘크리트구조물 현황사진 |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로서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7, 8호기 유인통풍기 2,360.9㎡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5,884.33 |
| | 170 | 기계장치 | 18.94 | 0.00 | 비과세대상 | 원고소유 시설물 아님 | | 보령댐으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우해 주산면 화평리 가압장내의 기계장치며 가압장 관리인이 원고소유 기계장치라 함. | 을제31호증36<br>을제60호증7: 가압장 취수설비계통 설명서 |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171 | 송풍구 | 2.85 | 0.00 | 기과세 | 1. 7,8호기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2호증 | 을제31호증44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과 별개로 모터와 환풍장치가 시설된 기계장치임.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대로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44<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각각 기재 | | | | |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72 | 취수장내기계장치 | 21.84 | 0.00 | 기과세 | 1. 취수장으로 과세한 건임<br>2. 해당 시설은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br>따라서 취수장바닥면적과 별개로 시설된 레일등은 별개로 산출되어야 함. 중복되지 않음. | 을제31호증6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기계장치와 시설물은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21.84 |
| | 173 | HRSG | 644.00 | 30.00 | 면적산출오류 | 1. 1GT 30㎡는 인정. HRSG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br>2. 건물에 연결된 기계장치로서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6호증 | 보일러 건물과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81: 현황사진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644 |
| | 174 | 1,2호기 플라이애쉬사일로백필터 | 116.92 | 0.00 | 기과세 | 1. 비회저장조로 과세한 건임<br>2. 비회저장조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 | 갑가제67호증 | 플라이애쉬 사일로 상단에 위치한 기계장치는 여러대의 모터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터는 사일로와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의거 구조물에 부착된 시설물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95,96<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건축물 옥상에 위치한 기계장치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116.92 |
| | 175 | 증기배출구 | 745.82 | 0.00 | 비과세대상 | 1. 소음기이며, 복합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8호증 | 원고는 당초 해당시설물이 소음기가 아니라고 하다가 피고가 증빙을 통해 입증하자 또다시 건물외부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방세법에서 건물안의 시설물은 건물로 과세하고 건물외의 시설물은 각각 과세토록하고 있어 원고주장은 근거없음. | 을제31호증99,100<br>을제31호증102, 을제31호증104<br>을제52호증1내지4: 소음기 입증사진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745.82 |
| | 176 | 환풍구 | 168.48 | 0.00 | 비과세대상 | 1. 소음기이며,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 피고가 기계장치로 입증한 사진을 보면 해당시설물안에 기계장치가 시설되어 있고 전원장치등을 통해 구조물안의 기계장치가 가동되도록 시설된 장치임. 따라서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103,을제31호증105,<br>을제31호증10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br>다만 7, 8호기 부분 40.48㎡는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128 |
| | 177 | 내부공기배출구 | 328.56 | 0.00 | 비과세대상 | 1.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 모터와 배전반 스위치가 있는 건물과 별개의 기계장치임.<br>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106,107,10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328.56 |
| | **다툼없는 기계장치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178 | 취수펌프시설지역 | 1,392.93 | 1,392.93 | | 다툼없음 | | | | | 1,392.93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자료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79 | CWP STRUCTURE | 960.00 | 960.00 | | 다툼없음 | | | | | 960.00 |
| | 180 | CWP크레인 | 392.70 | 392.70 | | 다툼없음 | | | | | 392.70 |
| | 181 | SLP크레인 | 896.04 | 896.04 | | 다툼없음 | | | | | 896.04 |
| | 182 | SLP크레인 레일 | 15.20 | 15.20 | | 다툼없음 | | | | | 15.20 |
| | 183 | CWP 크레인 레일 | 65.80 | 65.80 | | 다툼없음 | | | | | 65.80 |
| | 184 | 복합연소용필터 | 39.25 | 39.25 | | 다툼없음 | | | | | 39.25 |
| | 185 | 복합연돌 | 158.50 | 158.50 | | 다툼없음 | | | | | 158.50 |
| | 186 | 복합주변압기 | 257.44 | 257.44 | | 다툼없음 | | | | | 257.44 |
| | 187 | 복합 HRSGSUMP | 33.00 | 33.00 | | 다툼없음 | | | | | 33.00 |
| | 188 | 복합 GT7.8 변압기 | 37.72 | 37.72 | | 다툼없음 | | | | | 37.72 |
| | 189 | 복합경유가압펌프 | 91.00 | 91.00 | | 다툼없음 | | | | | 91.00 |
| | 190 | 복합질소저감순수공급펌프 | 69.00 | 69.00 | | 다툼없음 | | | | | 69.00 |
| | 191 | 취수펌프시설 | 3,260.07 | 3,260.07 | | 다툼없음 | | | | | 3,260.07 |
| | 192 | CWP STRUCTURE | 2,652.00 | 2,652.00 | | 다툼없음 | | | | | 2,652.00 |
| | 193 | 석회석이송탑(TT01) | 33.00 | 33.00 | | 다툼없음 | | | | | 33.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기계장치 | 194 | 석회석이송탑(TT02) | 80.00 | 80.00 | | 다툼없음 | | | | | 80.00 |
| | 195 | 석회석이송탑(TT03) | 34.65 | 34.65 | | 다툼없음 | | | | | 34.65 |
| | 196 | 석회석이송탑(TT04) | 39.00 | 39.00 | | 다툼없음 | | | | | 39.00 |
| | 197 | 석회석이송설비(LP01) | 485.56 | 485.56 | | 다툼없음 | | | | | 485.56 |
| | 198 | 석회석이송설비(LP02) | 720.38 | 720.38 | | 다툼없음 | | | | | 720.38 |
| | 199 | 석회석이송설비(LP03) | 1,058.68 | 1,058.68 | | 다툼없음 | | | | | 1,058.68 |
| | 200 | 석회석이송설비(LP04) | 129.35 | 129.35 | | 다툼없음 | | | | | 129.35 |
| | 201 | 해수가압펌프 | 72.00 | 72.00 | | 다툼없음 | | | | | 72.00 |
| | 202 | 변압기 | 2,048.66 | 2,048.66 | | 다툼없음 | | | | | 2,048.66 |
| | 203 | 기동변압기 | 261.66 | 261.66 | | 다툼없음 | | | | | 261.66 |
| | 204 | 탈황기동변압기 | 7.79 | 7.79 | | 다툼없음 | | | | | 7.79 |
| | 205 | 탈황보조변압기 | 1,884.90 | 1,884.90 | | 다툼없음 | | | | | 1,884.90 |
| | 206 | CWP 크레인 레일 | 90.47 | 90.47 | | 다툼없음 | | | | | 90.47 |
| | 207 | 크레인 | 298.20 | 298.20 | | 다툼없음 | | | | | 298.20 |
| | 208 | 크레인 | 240.00 | 240.00 | | 다툼없음 | | | | | 24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09 | 상탄기 | 672.00 | 672.00 | | 다툼없음 | | | | | 672.00 |
| | 210 | 상탄기 | 448.00 | 448.00 | | 다툼없음 | | | | | 448.00 |
| | 211 | 석탄하역기 | 1,250.00 | 1,250.00 | | 다툼없음 | | | | | 1,250.00 |
| | 212 | 석탄하역기 | 1,136.00 | 1,136.00 | | 다툼없음 | | | | | 1,136.00 |
| | 213 | 상탄기레일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214 | 상탄기레일 | 339.20 | 339.20 | | 다툼없음 | | | | | 339.20 |
| | 215 | 석탄하역기레일 | 73.90 | 73.90 | | 다툼없음 | | | | | 73.90 |
| | 216 | 저탄장내컨베이어시설(S/R기초) | 22,539.00 | 22,539.00 | | 다툼없음 | | | | | 22,539.00 |
| | 217 | 고전압시설 | 177.12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1호증 81내지82 | 을제31호증의29의 영상과 같이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177.12 |
| | 218 | 가스장치 | 402.4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81내지82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402.48 |
| | 219 | 복합변압기 | 825.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의76, 제85호증 | 상동 | 825 |
| | 220 | DUST COLLECTOR SYSTEM(24기) | 586.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86, 을제86호증 | 상동 | 586.56 |
| | 221 | 기계장치 (플라이애쉬싸일로 위) | 89.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96 | 이 목록 순번 174번 기재 시설물의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22 | 수문 | 742.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90p, 을제83호증의13 | 피고 증거로 특정됨. 다만 면적은 740.6㎡(= 32.2m×23m) 인정 | 740.6 |
| | 223 | 복합HRSG | 3,19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4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196 |
| | 224 | HP Drum | 153.4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5 | 이 목록 순번 223번 기재 복합 HRSG의 부속장치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하지 않음. | 0 |
| | 225 | IP Drum | 68.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6 | 상동 | 0 |
| | 226 | LP Drum | 62.4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 제83호증의 17 | 상동 | 0 |
| | 227 | 저장지역연료유썸프 | 1.4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중유)13p, 을제83호증의 18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44 |
| | 228 | 중유서비스연료유썸프 | 4.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중유)15p |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29 | First stage<br>Mist Eliminnator | 671.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19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30 | Second stage<br>Mist Eliminnator | 1,007.2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20 | 상동 | 0 |
| | 231 | Booster Fan Innet Danper | 184.3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1 | 상동 | 0 |
| | 232 | Booster Fan Outlet Danper | 255.3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2 | 상동 | 0 |
| | 233 | Energency Danper | 130.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3 | 상동 | 0 |
| | 234 | Fgd Fan Outlet Danper | 141.1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4 | 상동 | 0 |
| | 235 | 가스히터 | 864.8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5 | 상동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36 | 여과수썸프 | 118.5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걸설지(탈황)301p, 을제83호증의26 | 상동 | 0 |
| | 237 | 계량대 | 3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걸설지(탈황)850p, 을제83호증의27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9 |
| | 238 | 전기집진기 | 10,37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p, 을제83호증의28 | 이 목록 순번 405, 413, 418 내지 420, 427 내지 429, 432, 433, 437, 438번 기재 전기집진기실 내지 집진기와 별도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인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39 | 가스절연발전소 | 1,20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78p, 을제83호증의29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204 |
| | 240 | 집진판(Element Size, Ass' Y Size) | 4,870.6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종합용역보고서87p, 을제83호증의30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41 | AIR PREHEATER INETDAMEER | 286.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종합용역보고서93p |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42 | Expansion Joint | 302.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종합용역보고서93p, 을제83호증의31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43 | 오폐수처리장기계실 | 205.5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57호증 1내지6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05.57 |
| | 244 | Scr탈질설비구조물 | 4,75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종합사업보고서 246,249p, 을제83호증의32 | 상동 | 4,752.00 |
| | 245 | 냉각수심층취수구 | 5,245.30 | 0.00 | 비과세대상 | - 수조가 아니라 급배수 시설에 해당함. 급배수 시설은 2006년부터 과세대상 아님 | | 냉각수심층취수구는 유입흡수구와 유입수로 및 집수조가 한 구조로 시설되어 있고 유입흡수구는 취수로보다 3m높게 시설하여 저장기능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원고는 설계서를 달리 설명하고 있음. 또한, 행자부심사결정에서도 화력발전소 취수로는 "큰통의 해수저장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 을제3호증2: 심층취수구설계도면<br>을제22호증1내지2: 설계도면 및 계통도<br>참고자료5: 냉각수이용방법<br>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br>참고자료14-1,14-2: 행자부심사결정서(99-212호,2001-97호)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배수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2006년 과세분까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 전부가 과세대상임. | 5,245.3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 246 | 복합발전 취수장옆배수조 | 162.64 | 0.00 | 비과세대상 | 피고가 복합발전 취수장 옆 배수로로 과세했으며, 본 시설은 급배수시설임(2006년부터 비과세대상) | | 해수펌프앞(SLP)앞 '집수조 및 취수로와 연결된 시설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정한 일시적 저장시설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원고는 아무런 증빙없이 취수장에서 넘치는 물을 바다로 흘러 보낸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집수조에 유입되는 해수의 역류방지를 위한 사이펀계통설명과 부합되지 않고 특히 바다로 흘러보낸다면서 배출되는 배출구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을제23호증1,2: 현황사진<br>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배수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2006년 과세분까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 전부가 과세대상임. | 162.64 |
| | 247 | 정화조 | 28.69 | 0.00 | 비과세대상 |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임 | | 단순저장기능인 정화조는 포함대상이며 또한 기계작동에 따라 정화하는 정화조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비과세대상아님. | 을제333호증56: 정화조조적반기계장치사진<br>을제33호증58: 단순정화조사진<br>을제59호증: 정화조 조적반기계장치사진 |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28.69 |
| | 248 | 저장조 | 241.40 | 0.00 | 불특정 | 특정이 필요함 | | 을제33호증2내지60에 대한 면적집계표는 을제33호증1로 계산하고 있음. 해당 저장조에 대한 면적이 중복되지 않음이 을제33호증1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증빙자료에서 중복된 것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증빙자료는 중복되었으나 면적은 중복되지않음(중복과세된 것이 아님) | 을제33호증1: 면적집계표<br>을제33호증57,60: 같은 저장조가 2기있어 각각 입증위해 별도로 증빙한 것이나 면적산출은 중복되지 않음.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241.40 |
| | **다툼없는 저장조.수조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 | 249 | 냉각수 취수장 직사각형 | 148.94 | 148.94 | | 다툼없음 | | | | | | | 148.94 |
| | 250 | 취수로 | 2,585.80 | 2,585.80 | | 다툼없음 | | | | | | | 2,585.80 |
| | 251 | 순수탱크 | 346.19 | 346.19 | | 다툼없음 | | | | | | | 346.19 |
| | 252 | 복합 일상폐수조 | 401.98 | 401.98 | | 다툼없음 | | | | | | | 401.98 |
| | 253 | 오수정화조 | 108.00 | 108.00 | | 다툼없음 | | | | | | | 108.00 |
| | 254 | 복합 함유폐수조 | 163.40 | 163.40 | | 다툼없음 | | | | | | | 163.4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광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근거 감정 | |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감정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55 | 냉각수 배수관로 1 | 273.01 | 0.00 | | 급배수 시설임 | | |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배수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2006년 과세분까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 전부가 과세대상임. | 273.01 |
| | 256 | 냉각수 배수관로 2 | 511.57 | 0.00 | | 급배수 시설임 | | | | 상동 | 511.57 |
| | 257 | 취수로 | 26,298.02 | 26,298.02 | | 다툼없음 | | | | | 26,298.02 |
| | 258 | 취수로 | 3,060.74 | 3,060.74 | | 다툼없음 | | | | | 3,060.74 |
| | 259 | 복수저장탱크 | 330.28 | 330.28 | | 다툼없음 | | | | | 330.28 |
| | 260 | 순수저장조 (DEMI WATER TANK) | 307.72 | 307.72 | | 다툼없음 | | | | | 307.72 |
| | 261 | 조절지 수조 | 304.00 | 304.00 | | 다툼없음 | | | | | 304.00 |
| | 262 | 가압장 수조 | 317.00 | 317.00 | | 다툼없음 | | | | | 317.00 |
| | 263 | 취수장 수조 | 50.00 | 50.00 | | 다툼없음 | | | | | 50.00 |
| | 264 | 원수탱크B | 2,147.20 | 2,147.20 | | 다툼없음 | | | | | 2,147.20 |
| | 265 | 원수탱크D | 6,358.50 | 6,358.50 | | 다툼없음 | | | | | 6,358.50 |
| | 266 | 재활용수조 | 48.00 | 48.00 | | 다툼없음 | | | | | 48.00 |
| | 267 | 염소저장조 | 14.12 | 14.12 | | 다툼없음 | | | | | 14.12 |
| | 268 | 복합염산탱크 | 2.83 | 2.83 | | 다툼없음 | | | | | 2.83 |
| | 269 | 염산저장탱크 | 33.46 | 33.46 | | 다툼없음 | | | | | 33.46 |
| | 270 | 가성소다저장탱크 | 80.44 | 80.44 | | 다툼없음 | | | | | 80.44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71 | 저회저장조 | 157.00 | 157.00 | | 다툼없음 | | | | | 157.00 |
| | 272 | 비회저장조 | 562.80 | 562.80 | | 다툼없음 | | | | | 562.80 |
| | 273 | 석고탈수탱크 | 54.00 | 54.00 | | 다툼없음 | | | | | 54.00 |
| | 274 | 석회석일일저장조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275 | 석회석슬러리탱크 | 46.50 | 46.50 | | 다툼없음 | | | | | 46.50 |
| | 276 | 석회석저장사일로 | 181.30 | 181.30 | | 다툼없음 | | | | | 181.30 |
| | 277 | 탈황비상저장탱크 | 165.00 | 165.00 | | 다툼없음 | | | | | 165.00 |
| | 278 | 석회석저장사일로 | 181.30 | 181.30 | | 다툼없음 | | | | | 181.30 |
| | 279 | 염기저장조 | 9.00 | 9.00 | | 다툼없음 | | | | | 9.00 |
| | 280 | 염기및산저장탱크 | 26.40 | 26.40 | | 다툼없음 | | | | | 26.40 |
| | 281 | 염기및산저장탱크 | 26.40 | 26.40 | | 다툼없음 | | | | | 26.40 |
| | 282 | 복합소포제주입탱크 | 5.66 | 5.66 | | 다툼없음 | | | | | 5.66 |
| | 283 | 취수로 | 13,775.00 | 0.00 | | 7,8호기는 2008년 취득 하였음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2006년도에 취득하였음.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37 |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 284 | 냉각수 배수로 집수정 | 3,362.00 | 0.00 | | 7,8호기는 2008년 취득 하였음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2006년도에 취득하였음.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37 | 상동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저장소,수조 | 285 | 냉각수 배수관로 (냉각수집수정) | 409.05 | 0.00 | | 급배수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18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배수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2006년 과세분까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 전부가 과세대상임. | 409.05 |
| | 286 | 취수장 | 5,081.23 | 0.00 | | 급배수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18 | 상동 | 5,081.23 |
| | 287 | 냉각수 취수장 사다리꼴 (냉각수취수장) | 549.89 | 0.00 | | 급배수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 2 | 상동 | 549.89 |
| | 288 | 수조 | 1,164.38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2015.01.22.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서 원고 스스로 다툼없는 시설로 인정한 면적임. | 원고 인정 다툼없는 시설물 면적 내역 을제76호증6 을제33호증 2내지8, 10~11, 20~23, 44, 52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164.38 |
| | 289 | 저장조 | 1,475.6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9,12~15,18~19,24~28, 30,38~39,45~46,48~49,51,53~54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475.55에서 1,475.61로 면적 정정 | 상동. 다만 7,8호기 저장조 703.3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을제38호증의38-39). | 772.29 |
| | 290 | 펌프실(2-1)(2-2) | 30.2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16~17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01.4에서 30.21로 면적 정정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0.21 |
| | 291 | 기력 LOSERVICE TANK | 276.3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47 | 상동 | 276.32 |
| | 292 | CPI유수분리기 | 48.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50 | 상동 | 48.76 |
| | 293 | 콘크리트구조물 | 13.8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55 | 이 목록 순번 169번 기재 시설물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 |
| | 294 | 원수탱크D(2기중 미과세1기) | 6,358.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53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63.58로 수정했으나 당초면적 6,358.5으로 정정(면적산출 오류)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중복 산정 여부 알 수 없음.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95 | 복합유수분리기 | 309.8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 상동 | 0 |
| | 296 | 복합오폐수집수지 | 397.0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 상동 | 0 |
| | 297 | 기력복합일시(일상)폐수조 | 2,640.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222,223,304p<br>을제83호증 33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640.50 |
| | 298 | 폐수집수조(abnormal,normal) | 40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406p<br>을제83호증 34 | 상동 | 400 |
| | 299 | 경유저장탱크 | 530.6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경유계통9p<br>을제83호증 35 | 상동 | 530.66 |
| | 300 | 원수저장탱크 | 2,098.0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소화설비(공업원수)7p<br>을제83호증 36 | 상동 | 2,098.08 |
| | 301 | 1차침전조 | 1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02 | 1차반응탱크 | 1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3 | 2차반응탱크 | 1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4 | 3차반응탱크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5 | 1차체류조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6 | 1차응집탱크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7 | 2차침전조 | 56.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08 | 2차체류조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09 | 2차응집탱크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0 | 3차침전조 | 56.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1 | 1차처리수조 | 62.7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2 | 압력여과기 | 3.7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3 | 활성탄여과기 | 12.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4 | 1차PH조정조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5 | 2차PH처리수조 | 4.9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6 | 불소흡착탑 | 6.2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7 | 2차PH조정조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8 | 방류수조 | 6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19 | 농축조 | 4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0 | 슬러지저장조 | 1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과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21 | 케이크호퍼 | 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2 | 세척수탱크 | 1.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3 | 황산알루미늄호퍼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4 | 탄산나트륨호퍼 | 2.5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5 | 용해주입탱크 | 5.3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6 | 호퍼공기저장탱크 | 0.8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7 | 용해탱크 | 0.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8 | 길레이트주입탱크 | 0.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29 | 폴리머용해탱크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0 | 폴리머주입탱크 | 4.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1 | 염산주입탱크 | 4.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2 | 염산가스실포트 | 0.1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3 | 수산화나트륨주입탱크 | 3.1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34 | 치아염산탱크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5 | 아황산용해탱크 | 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336 | MXINGTANK | 4.8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종합용역보고서112p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37 | 취수펌프장 | 37.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설계계산서11-13p<br>을제83호증 37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7.50 |
| | 338 | 용수저장탱크 | 1,017.3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설계계산서11-14p<br>을제83호증 38 | 상동 | 1,017.36 |
| 저유조 | 다툼없는 저유조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339 | 복합 DO Storage tank | 1,118.10 | 1,118.10 | | 다툼없음 | | | | | 1,118.10 |
| | 340 | Clean&Dirty Oil tank | 20.50 | 20.50 | | 다툼없음 | | | | | 20.50 |
| | 341 | LIGHTOILSERVICE 탱크<br>(1호기 서쪽) | 88.20 | 88.20 | | 다툼없음 | | | | | 88.20 |
| | 342 | LIGHTOILSERVICE 탱크<br>(2발 건너편) | 88.00 | 88.00 | | 다툼없음 | | | | | 88.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법원의 판단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공작물 | 343 | 7,8호기 컨베이어설비 | 23,670.36 | 0.00 | 비과세대상 | 본 시설은 2008년도에 취득한 시설물임 | | 시설물명에서 7,8호기 컨베이어설비라 한것은 1~8호기 컨베이어설비의 오류로 설계도면과 실측을 통하여 컨베이어 시설면적을 수평투영면적으로 재산정 한 결과 합계면적이 34,155.78㎡이며 발전소별 면적을 구분하면, 1~6호기: 23,670.56㎡, 7~8호기: 10,485.22㎡임. 원고가 당초 주장한 면적(17,111㎡)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작물축조 신고없이 불법으로 시설한 컨베이어 면적이 미산정됨. | 을제3호증3: 석탄취급설비계통도<br>을제24호증1: 면적집계표<br>을제24호증2내지59: 현황사진 및 면적산출내역<br>참고자료7: 행자부심사결정서 (2007-427) | 1-6호기 컨베이어 설비는 2004년 이전부터 사용되던 시설임. 하단컨베이어나 take-up 장치는 별개의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면적 합계 23,670.36㎡ 중 갑가제43, 44호증, 을제24호증의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면서 수평 길이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계를 잘못 한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343번)' 기재와 같고 잘못 추가된 면적 합계가 1,503.88㎡이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면적 22,166.48㎡만 인정한다. | 22,166.48 |
| | 344 | 채광창 | 280.50 | 0.00 | 비과세대상 | 건물의 부속시설임 | | 건축법상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는 높이 1m이상으로 해당시설물의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요건에 적합하여 별도의 면적산출 대상임. | 을제36호증7<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 |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280.5 |
| | 345 | 급수탱크관련송수관 및 경유배관 | 2,944.14 | 0.00 | 기과세 | 급수탱크 관련 송수관 및 경유배관은 2009.11월 기과세하고(복합송수관 및 송유관), 2011.4월 다시 과세한 물건임 | 갑가제3호증의1 3면 및 11면 | 급수탱크관련 송수관이 다수의 장소에 시설되어 있으나 송수관의 길이 및 위치에서 기과세된 송수관이 아님. 송수관 일부에 대해서 제출하고 피고가 추가로 송수관을 찾아 과세하자 증빙없이 중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 을제32호증6내지18 | 기과세된 증거가 없음 | 2,944.14 |
| | **다툼없는 송수관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346 | CWP~보일러건물 송수관 | 2,076.80 | 2,076.80 | | 다툼없음 | | | | | 2,076.80 |
| | 347 | SCW PIPE | 256.00 | 256.00 | | 다툼없음 | | | | | 256.00 |
| | 348 | 급수탱크관련송수관 | 691.75 | 691.75 | | 다툼없음 | | | | | 691.75 |
| | 349 | 순수공급펌프실송수관 | 19.18 | 19.18 | | 다툼없음 | | | | | 19.18 |
| | 350 | 급수펌프실관련송수관 | 835.00 | 835.00 | | 다툼없음 | | | | | 835.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및 입증자료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 내용 | 인정 면적(㎡) |
| 송구관 | 351 | 폐수 집수조관련송수관 | 298.20 | 298.20 | | 다툼없음 | | | | | | | 298.20 |
| | 352 | 오수정화조관련송수관 | 5.00 | 5.00 | | 다툼없음 | | | | | | | 5.00 |
| | 353 | 해수취수펌프실관련 송수관 | 5.00 | 5.00 | | 다툼없음 | | | | | | | 5.00 |
| | 354 |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 31.00 | 31.00 | | 다툼없음 | | | | | | | 31.00 |
| | 355 |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 389.00 | 389.00 | | 다툼없음 | | | | | | | 389.00 |
| | 356 | 취수장옆 HUME PIPE | 2.57 | 2.57 | | 다툼없음 | | | | | | | 2.57 |
| | 357 |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 1,106.09 | 1,106.09 | | 다툼없음 | | | | | | | 1,106.09 |
| | 358 | CWP 배관(CWP~보일러건물) | 768.00 | 768.00 | | 다툼없음 | | | | | | | 768.00 |
| | 359 | CWP PIPE(CWP~보일러건물) | 3,840.00 | 3,840.00 | | 다툼없음 | | | | | | | 3,840.00 |
| | 360 | 수처리 건물 관련 | 2.04 | 2.04 | | 다툼없음 | | | | | | | 2.04 |
| | 361 | 해수가압펌프 송수관 | 0.39 | 0.39 | | 다툼없음 | | | | | | | 0.39 |
| | 362 | 공업용수관로(보령댐~보령화력) | 15,750.00 | 15,750.00 | | 다툼없음 | | | | | | | 15,750.00 |
| | 363 | 냉각수 심층배수로 | 1,592.00 | 0.00 | |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고, 본 시설은 급배수 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2006년도 취득 하였으며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34 |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 | 0 |
| | 364 | CWP 취수관로 (CWP~보일러건물) | 2,295.52 | 0.00 | |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2006년도 취득함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 을제77호증34 내지 35 | 상동 | |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65 | 취수관로 | 902.00 | 0.00 | | 취수관로가 아니라 배수관로임. 급배수시설이므로 2006,2007은 비과세대상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송수관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4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급배수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2006년 과세분까지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 전부가 과세대상임. | 902.00 |
| | 366 | 옥외소화관 | 2,932.88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60호증 1내지14<br>을제61호증 1내지 11<br>1~2호기건설지 599p,복합건설지 392p<br>을제83호증 39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932.88 |
| | 367 | 공업용수도수관 | 150.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224p<br>매설(주교면 송학리에서 발전소 연장구간)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68 | 공업용수유공관 | 143.0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1283p<br>매설(주산면 화평리 웅천천에서 집수정구간) | 상동 | 0.00 |
| | 369 | 재순환수관 | 2,847.2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311p<br>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br>보고서2-15p<br>을제83호증 40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70 | 전처리배관<br>(강관,PEM 수도관) | 1,08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783p<br>을제83호증 41 | 상동 | 0.00 |
| | 371 | 애쉬라인 | 4,32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5-6호기종합용역보고서1-7p<br>을제83호증 42 | 시설물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다만 면적은 1,440㎡(= 0.3m×2,400m×2) | 1,440.00 |
| | 372 | 폐수배관 | 134.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폐수재이용설비공사설계서<br>*지하매설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73 | 회이송관련관 | 1,857.1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br>보고서2-13p(3~6호기)<br>을제83호증 43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857.17 |
| | 374 | 섬프펌프관련관 | 1.2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br>보고서2-16p<br>을제83호증 44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75 | 송수관<br>(취수펌프장과용수저장사이) | 15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1~4호기설계계산서 11-14p<br>*지하매설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76 | 광역분기구간(공업용수) | 1,588.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 Ⅳ 16-4p<br>*매설(주교면 주교리 가압장~송학고개) | 상동 | 0 |
| | 377 | 경유배관 | 792.00 | 0.00 | 비과세대상 |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 갑가 제80호증 | 원고는 해당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송유관으로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송유관에 호스장치를 시설한 후 드럼통을 통해 기름을 뽑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경유배관에는 기름보관이 가능토록 배관을 용접한 것으로 배관을 끊어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님. | 을제32호증2 |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 0 |
| | 378 | 1부두경유배관 | 4.95 | 0.00 | 비과세대상 |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 | 지방세법에서 정한 '직접사용'의 의미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법인 등에게 임차한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로 시설된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안된다를 가리는 것이 아님. | 을제32호증3B |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 0 |
| | 379 | 도관(회이송관) | 3,486.88 | 0.00 | 기과세 | 회이송관받침대로 과세한 면적에 포함됨 | 갑가제3호증의3 16면 | 회이송받침대는 트러스로 명칭되며 송유관 등은 각각 별개로 과세되어야 함.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시행일이 2007.1.1일이므로 2006년까지는 포함되어야 함. | 을제32호증53내지57<br>을제54호증1내지2: 트러스트설명서<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회이송관받침대와 별개의 시설물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 | 3,486.88 |
| | **다툼없는 송유관 및 도관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380 | 기름분리조관련송유관 | 9.00 | 9.00 | | 다툼없음 | | | | | 9.00 |
| | 381 | 경유저장탱크송유관 | 3.50 | 3.50 | | 다툼없음 | | | | | 3.50 |
| | 382 | 오일탱크관련 송유관 | 1.50 | 1.50 | | 다툼없음 | | | | | 1.5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송유관 및 도관 | 383 | 연료공급실송유관 | 41.20 | 41.20 | | 다툼없음 | | | | | 41.20 |
| | 384 | 오일탱크관련송유관 | 1.50 | 1.50 | | 다툼없음 | | | | | 1.50 |
| | 385 | LO SERVICE PUMP TO BOILER | 24.36 | 24.36 | | 다툼없음 | | | | | 24.36 |
| | 386 | LO SERVICE PUMP TO BOILER | 3.57 | 3.57 | | 다툼없음 | | | | | 3.57 |
| | 387 | LO SERVICE PUMP TO BOILER | 0.59 | 0.59 | | 다툼없음 | | | | | 0.59 |
| | 388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2.03 | 2.03 | | 다툼없음 | | | | | 2.03 |
| | 389 |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 2.00 | 2.00 | | 다툼없음 | | | | | 2.00 |
| | 390 |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 38.58 | 38.58 | | 다툼없음 | | | | | 38.58 |
| | 391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1.60 | 1.60 | | 다툼없음 | | | | | 1.60 |
| | 392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138.56 | 138.56 | | 다툼없음 | | | | | 138.56 |
| | 393 | LO SERVICE PUMP TO BOILER | 59.78 | 59.78 | | 다툼없음 | | | | | 59.78 |
| | 394 | LO SERVICE PUMP TO BOILER | 45.57 | 45.57 | | 다툼없음 | | | | | 45.57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근거 규정 :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95 | 도관시설 | 13,905.19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2호증 1, 3~5, 19~45, 48~49, 58~74, 76~83<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조면적 14,427.48에서 13,905.19로 면적 정정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다만 2부두air라인(을제32호증의5 'c') 11.5㎡는 이 목록 순번 제27번 기재 시설물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13,893.69 |
| | 396 | 중유이송배관 | 77.83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806p<br>*2013년 폐기시설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397 | 7,8호기 건물 및 시설물 | 21,024.50 | 0.00 | 비과세대상 | 7,8호기 건물 및 시설물은 2008년도 취득 시설임. | | 조세심판결정(조심2009지436)에서 발전소용 건축물의 경우 시운전을 개시하면 당해년도 사업장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사업장면적에 포함하도록 심판결정. 따라서, 7,8호기 최초 점화일이 2007.11.14일이므로 2007년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최초점화일 이전인 2006년도에 임시사용 등을 받은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6년에도 포함되어야 함. | 을제4호증1: 7호기수압시험일(2007.5.23)<br>을제4호증2: 7호기최초점화일(2007.11.30)<br>을제4호증3: 8호기수압시험일(2007.11.14) |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 398 | 콘크리트 대지 | 105.91 | 0.00 | 비과세대상 | 특정이 필요함. 콘크리트 대지는 비과세대상 | | 지하기계실의 지붕으로 건축물로 확인되어 당초'수조'에서 건축물로 정정함. | 을제56호증1내지3: 건축물 입증 및 지하1,2층 사진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05.91 |
| | 다툼없는 건물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399 | #1 보일러실 | 2,904.49 | 2,904.49 | | 다툼없음 | | | | | 2,904.49 |
| | 400 | #1 보조보일러제어실 | 212.15 | 212.15 | | 다툼없음 | | | | | 212.15 |
| | 401 | #1 비회제어실 | 47.00 | 47.00 | | 다툼없음 | | | | | 47.00 |
| | 402 | #1 사일로 전원실 | 52.00 | 52.00 | | 다툼없음 | | | | | 52.00 |
| | 403 | #1 외부화장실-2호기 뒤 | 7.28 | 7.28 | | 다툼없음 | | | | | 7.28 |
| | 404 | #1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 484.78 | 484.78 | | 다툼없음 | | | | | 484.7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05 | #1 전기집진기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06 | #1 터빈및주제어실 | 7,231.50 | 7,231.50 | | 다툼없음 | | | | | 7,231.50 |
| | 407 | #1,2 물처리실 | 1,260.80 | 1,260.80 | | 다툼없음 | | | | | 1,260.80 |
| | 408 | #1,2 샤워장 | 395.18 | 395.18 | | 다툼없음 | | | | | 395.18 |
| | 409 | #1,2 유지창고 | 350.00 | 350.00 | | 다툼없음 | | | | | 350.00 |
| | 410 | #2 보일러실 | 2,904.49 | 2,904.49 | | 다툼없음 | | | | | 2,904.49 |
| | 411 | #2 비회제어실 | 47.00 | 47.00 | | 다툼없음 | | | | | 47.00 |
| | 412 | #2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 484.78 | 484.78 | | 다툼없음 | | | | | 484.78 |
| | 413 | #2 전기집진기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14 | #2 터빈및주제어실 | 7,231.50 | 7,231.50 | | 다툼없음 | | | | | 7,231.50 |
| | 415 | #2 보조보일러전원실 | 102.48 | 102.48 | | 다툼없음 | | | | | 102.48 |
| | 416 | #3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17 | #3 서비스가스창고-1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418 | #3 전기집진기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19 | #3 집진기 NO-1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20 | #3 집진기 NO-2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21 | #3,4 질소가스창고 | 74.00 | 74.00 | | 다툼없음 | | | | | 74.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광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근거 감정 |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감정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22 | #3,4 터빈및주제어건물-1 | 26,945.48 | 26,945.48 | | 다툼없음 | | | | | 26,945.48 |
| | 423 | #3,4 연료조절펌프실 | 0.00 | 0.00 | | 다툼없음 | | | | | 0.00 |
| | 424 | #3~6 물처리건물 | 2,865.87 | 2,865.87 | | 다툼없음 | | | | | 2,865.87 |
| | 425 | #4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26 | #4 서비스가스창고-2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427 | #4 전기집진기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428 | #4 집진기 NO-3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29 | #4 집진기 NO-4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30 | #5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31 | #5 서비스가스창고-3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432 | #5 집진기 NO-5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33 | #5 집진기 NO-6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34 | #5,6 터빈및주제어건물-2 | 26,096.71 | 26,096.71 | | 다툼없음 | | | | | 26,096.71 |
| | 435 | #6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436 | #6 서비스가스창고-4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437 | #6 집진기 NO-7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438 | #6 집진기 NO-8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광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근거 감정 |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감정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39 | (산업폐기물)저장창고 | 141.12 | 141.12 | | 다툼없음 | | | | | 141.12 |
| | 440 | (종묘)배양장창고 | 96.00 | 96.00 | | 다툼없음 | | | | | 96.00 |
| | 441 | 가스창고-#2호기옆 | 24.00 | 24.00 | | 다툼없음 | | | | | 24.00 |
| | 442 | 가스창고-2화학부옆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43 | 가스창고-2화학부옆 | 7.92 | 7.92 | | 다툼없음 | | | | | 7.92 |
| | 444 | 가스창고-고압 | 150.00 | 150.00 | | 다툼없음 | | | | | 150.00 |
| | 445 | 간이초소 NO-1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46 | 간이초소 NO-2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47 | 간이초소 NO-3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48 | 간이초소 NO-4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449 | 경비실(구정문수위실) | 0.00 | 0.00 | | 다툼없음 | | | | | 0.00 |
| | 450 | 경비실(신축) | 351.25 | 351.25 | | 다툼없음 | | | | | 351.25 |
| | 451 | (구)종합사무실 | 4,500.59 | 4,500.59 | | 다툼없음 | | | | | 4,500.59 |
| | 452 | 기상관측소 | 7.29 | 7.29 | | 다툼없음 | | | | | 7.29 |
| | 453 | 누유방제자재보관창고 | 72.00 | 72.00 | | 다툼없음 | | | | | 72.00 |
| | 454 | 망루(신축) | 9.91 | 9.91 | | 다툼없음 | | | | | 9.91 |
| | 455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근거 자재 | |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자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56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57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58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59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60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61 | 망루1형 | 12.35 | 12.35 | | 다툼없음 | | | | | 12.35 |
| | 462 | 모의제어반 | 1,569.86 | 1,569.86 | | 다툼없음 | | | | | 1,569.86 |
| | 463 | 무기고 | 66.96 | 66.96 | | 다툼없음 | | | | | 66.96 |
| | 464 | 배양장 | 562.50 | 562.50 | | 다툼없음 | | | | | 562.50 |
| | 465 | 벙커 | 7.20 | 7.20 | | 다툼없음 | | | | | 7.20 |
| | 466 | 보조보일러약품주입실 | 18.56 | 18.56 | | 다툼없음 | | | | | 18.56 |
| | 467 | 복합#1 가스터빈건물-1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468 | 복합#1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69 | 복합#1 스팀터빈-1 | 9,387.02 | 9,387.02 | | 다툼없음 | | | | | 9,387.02 |
| | 470 | 복합#1,2 질소가스창고-1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 | 471 | 복합#2 가스터빈건물_1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472 | 복합#2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의 근거 자료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73 | 복합#2 스팀터빈-1 | 9,387.03 | 9,387.03 | | 다툼없음 | | | | | 9,387.03 |
| | 474 | 복합#3 가스터빈건물-2 | 1,190.35 | 1,190.35 | | 다툼없음 | | | | | 1,190.35 |
| | 475 | 복합#3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76 | 복합#3 스팀터빈-2 | 9,387.02 | 9,387.02 | | 다툼없음 | | | | | 9,387.02 |
| | 477 | 복합#3,4 질소가스창고-2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 | 478 | 복합#4 가스터빈건물-2 | 1,190.35 | 1,190.35 | | 다툼없음 | | | | | 1,190.35 |
| | 479 | 복합#4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80 | 복합#4 스팀터빈-2 | 9,387.03 | 9,387.03 | | 다툼없음 | | | | | 9,387.03 |
| | 481 | 복합#5 거스터빈건물-3 | 1,093.45 | 1,093.45 | | 다툼없음 | | | | | 1,093.45 |
| | 482 | 복합#5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83 | 복합#5,6 질소가스창고-3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 | 484 | 복합#6 가스터빈건물-3 | 1,093.45 | 1,093.45 | | 다툼없음 | | | | | 1,093.45 |
| | 485 | 복합#6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86 | 복합#7 가스터빈건물-4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487 | 복합#7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88 | 복합#7,8 질소가스창고-4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 | 489 | 복합#8 가스터빈건물-4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정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자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90 | 복합#8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91 | 복합 경비실 | 57.86 | 57.86 | | 다툼없음 | | | | | 57.86 |
| | 492 | 복합 공기압축기실 및비상발전기실 | 245.58 | 245.58 | | 다툼없음 | | | | | 245.58 |
| | 493 | 복합 급수펌프실 | 76.78 | 76.78 | | 다툼없음 | | | | | 76.78 |
| | 494 | 복합 망루-1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495 | 복합 망루-2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496 | 복합 망루-3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497 | 복합 망루-4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498 | 복합 망루-5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499 | 복합 순수공급펌프실 | 92.81 | 92.81 | | 다툼없음 | | | | | 92.81 |
| | 500 | 복합 연료유공급펌프실 | 204.52 | 204.52 | | 다툼없음 | | | | | 204.52 |
| | 501 | 복합 염소주입실 | 252.58 | 252.58 | | 다툼없음 | | | | | 252.58 |
| | 502 | 복합 유지창고 | 365.06 | 365.06 | | 다툼없음 | | | | | 365.06 |
| | 503 | 복합 종합창고 | 3,178.84 | 3,178.84 | | 다툼없음 | | | | | 3,178.84 |
| | 504 | 복합 주제어건물-1 | 4,427.79 | 4,427.79 | | 다툼없음 | | | | | 4,427.79 |
| | 505 | 복합 주제어건물-2 | 4,427.79 | 4,427.79 | | 다툼없음 | | | | | 4,427.79 |
| | 506 | 복합 해수취수펌프실 | 173.05 | 173.05 | | 다툼없음 | | | | | 173.05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정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및 입증자료 | | | 피고 주장 및 입증자료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건축물 | 507 | 복합발전용 가스분석기실 | 17.50 | 17.50 | | 다툼없음 | | | | | 17.50 |
| | 508 | 부두접안정보실 | 15.12 | 15.12 | | 다툼없음 | | | | | 15.12 |
| | 509 | 분석실가스저장고 | 17.64 | 17.64 | | 다툼없음 | | | | | 17.64 |
| | 510 | 산소저장창고 | 35.00 | 35.00 | | 다툼없음 | | | | | 35.00 |
| | 511 | 상탄살포제실 | 54.00 | 54.00 | | 다툼없음 | | | | | 54.00 |
| | 512 | 석탄분쇄 동력제어실 | 55.50 | 55.50 | | 다툼없음 | | | | | 55.50 |
| | 513 | 석탄분쇄 소화가스실 | 11.00 | 11.00 | | 다툼없음 | | | | | 11.00 |
| | 514 | 석탄분쇄실 1 | 802.75 | 802.75 | | 다툼없음 | | | | | 802.75 |
| | 515 | 석탄분쇄실 2 | 814.00 | 814.00 | | 다툼없음 | | | | | 814.00 |
| | 516 | 석탄하역건물 | 135.00 | 135.00 | | 다툼없음 | | | | | 135.00 |
| | 517 | 소각로 | 259.18 | 259.18 | | 다툼없음 | | | | | 259.18 |
| | 518 | 소화수및원수펌프실 | 380.25 | 380.25 | | 다툼없음 | | | | | 380.25 |
| | 519 | 송유및소화수펌프실 | 383.00 | 383.00 | | 다툼없음 | | | | | 383.00 |
| | 520 | 순환수보조펌프실 | 299.75 | 299.75 | | 다툼없음 | | | | | 299.75 |
| | 521 | 연료유공급펌프실 | 715.00 | 715.00 | | 다툼없음 | | | | | 715.00 |
| | 522 | 연료유펌프실-#1,2호기 | 724.72 | 724.72 | | 다툼없음 | | | | | 724.72 |
| | 523 | 염소주입실 | 622.16 | 622.16 | | 다툼없음 | | | | | 622.16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자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24 | 온배수양식동 | 504.00 | 504.00 | | 다툼없음 | | | | | 504.00 |
| | 525 | 온배수양식장펌프실 | 21.60 | 21.60 | | 다툼없음 | | | | | 21.60 |
| | 526 | 운탄설비 동력제어실 | 45.00 | 45.00 | | 다툼없음 | | | | | 45.00 |
| | 527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 5.30 | 5.30 | | 다툼없음 | | | | | 5.30 |
| | 528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1 | 7.93 | 7.93 | | 다툼없음 | | | | | 7.93 |
| | 529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2 | 7.15 | 7.15 | | 다툼없음 | | | | | 7.15 |
| | 530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3 | 6.37 | 6.37 | | 다툼없음 | | | | | 6.37 |
| | 531 | 응천 가압장 | 162.00 | 162.00 | | 다툼없음 | | | | | 162.00 |
| | 532 | 응천 사택 | 43.65 | 43.65 | | 다툼없음 | | | | | 43.65 |
| | 533 | 유류가압펌프실 | 336.00 | 336.00 | | 다툼없음 | | | | | 336.00 |
| | 534 | 유연탄작업관리실 | 694.02 | 694.02 | | 다툼없음 | | | | | 694.02 |
| | 535 | 유연탄하역조정실 | 320.00 | 320.00 | | 다툼없음 | | | | | 320.00 |
| | 536 | 입하탄시료채취실 | 287.10 | 287.10 | | 다툼없음 | | | | | 287.10 |
| | 537 | 정문경비실 | 64.04 | 64.04 | | 다툼없음 | | | | | 64.04 |
| | 538 | 정비고 | 611.00 | 611.00 | | 다툼없음 | | | | | 611.00 |
| | 539 | 조탄실 | 147.11 | 147.11 | | 다툼없음 | | | | | 147.11 |
| | 540 | 조탄실 | 253.52 | 253.52 | | 다툼없음 | | | | | 253.52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41 | 조탄실 1 | 140.00 | 140.00 | | 다툼없음 | | | | | 140.00 |
| | 542 | 조탄실 2 | 301.75 | 301.75 | | 다툼없음 | | | | | 301.75 |
| | 543 | 조탄실 3 | 414.40 | 414.40 | | 다툼없음 | | | | | 414.40 |
| | 544 | 조탄실 4 | 240.00 | 240.00 | | 다툼없음 | | | | | 240.00 |
| | 545 | 조탄실 5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546 | 조탄실 6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547 | 조탄실 NO-1 | 257.57 | 257.57 | | 다툼없음 | | | | | 257.57 |
| | 548 | 조탄실 NO-10 | 116.80 | 116.80 | | 다툼없음 | | | | | 116.80 |
| | 549 | 조탄실 NO-2 | 256.26 | 256.26 | | 다툼없음 | | | | | 256.26 |
| | 550 | 조탄실 NO-3 | 269.68 | 269.68 | | 다툼없음 | | | | | 269.68 |
| | 551 | 조탄실 NO-4 | 85.08 | 85.08 | | 다툼없음 | | | | | 85.08 |
| | 552 | 조탄실 NO-5 | 85.85 | 85.85 | | 다툼없음 | | | | | 85.85 |
| | 553 | 조탄실 NO-6 | 127.07 | 127.07 | | 다툼없음 | | | | | 127.07 |
| | 554 | 조탄실 NO-7 | 1,143.42 | 1,143.42 | | 다툼없음 | | | | | 1,143.42 |
| | 555 | 조탄실 NO-8 | 1,598.88 | 1,598.88 | | 다툼없음 | | | | | 1,598.88 |
| | 556 | 조탄실 NO-9 | 398.23 | 398.23 | | 다툼없음 | | | | | 398.23 |
| | 557 | 석당/강당 | 1,537.54 | 1,537.54 | | 다툼없음 | | | | | 1,537.54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근거 감재 | |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감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58 | (종합)사무실 | 6,900.23 | 6,900.23 | | 다툼없음 | | | | | 6,900.23 |
| | 559 | 종합창고 | 7,144.22 | 7,144.22 | | 다툼없음 | | | | | 7,144.22 |
| | 560 | 주산 사택 | 55.72 | 55.72 | | 다툼없음 | | | | | 55.72 |
| | 561 | 주산 취수장 | 161.00 | 161.00 | | 다툼없음 | | | | | 161.00 |
| | 562 | 질소가스저장실 | 34.76 | 34.76 | | 다툼없음 | | | | | 34.76 |
| | 563 | 초소1형 | 12.50 | 12.50 | | 다툼없음 | | | | | 12.50 |
| | 564 | 초소1형 | 12.50 | 12.50 | | 다툼없음 | | | | | 12.50 |
| | 565 | 초소2형 | 18.83 | 18.83 | | 다툼없음 | | | | | 18.83 |
| | 566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567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568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569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570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571 | 콘테이너하우스 | 36.00 | 36.00 | | 다툼없음 | | | | | 36.00 |
| | 572 | 탈황설비 #3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 | 573 | 탈황설비 #4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 | 574 | 탈황설비 #5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판단 근거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75 | 탈황설비 #6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 | 576 | 탈황설비 석고반출장 | 155.15 | 155.15 | | 다툼없음 | | | | | 155.15 |
| | 577 | 탈황설비 석고저장건물 | 2,072.90 | 2,072.90 | | 다툼없음 | | | | | 2,072.90 |
| | 578 | 탈황설비 석고탈수동 | 1,440.00 | 1,440.00 | | 다툼없음 | | | | | 1,440.00 |
| | 579 | 탈황설비 석회석슬러리 제조동 | 1,152.00 | 1,152.00 | | 다툼없음 | | | | | 1,152.00 |
| | 580 | 탈황설비 수처리건물 | 512.00 | 512.00 | | 다툼없음 | | | | | 512.00 |
| | 581 | 탈황설비 앨브이 (LV)-02 | 145.54 | 145.54 | | 다툼없음 | | | | | 145.54 |
| | 582 | 탈황설비 주제어동 흡수탑 재순환펌프동-1 | 2,538.00 | 2,538.00 | | 다툼없음 | | | | | 2,538.00 |
| | 583 | 탈황설비 주제어동 | 2,234.75 | 2,234.75 | | 다툼없음 | | | | | 2,234.75 |
| | 584 | 탈황설비 티티(TT)-01 | 107.39 | 107.39 | | 다툼없음 | | | | | 107.39 |
| | 585 | 탈황설비 티티(TT)-02 | 313.57 | 313.57 | | 다툼없음 | | | | | 313.57 |
| | 586 | 탈황설비 티티(TT)-03 | 156.81 | 156.81 | | 다툼없음 | | | | | 156.81 |
| | 587 | 탈황설비 티티(TT)-04 | 417.29 | 417.29 | | 다툼없음 | | | | | 417.29 |
| | 588 | 탈황설비 티티티(TTT)-01 | 595.92 | 595.92 | | 다툼없음 | | | | | 595.92 |
| | 589 | 탈황설비 폐수처리동 | 1,575.23 | 1,575.23 | | 다툼없음 | | | | | 1,575.23 |
| | 590 | 트랜스퍼타워 18 | 217.18 | 217.18 | | 다툼없음 | | | | | 217.18 |
| | 591 | 트랜스퍼타워 19 | 224.71 | 224.71 | | 다툼없음 | | | | | 224.71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근거 자재 | |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자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92 | 트랜스퍼타워 20 | 1,323.18 | 1,323.18 | | 다툼없음 | | | | | 1,323.18 |
| | 593 | 트랜스퍼타워 21 | 226.19 | 226.19 | | 다툼없음 | | | | | 226.19 |
| | 594 | 폐기물저장창고 | 230.67 | 230.67 | | 다툼없음 | | | | | 230.67 |
| | 595 | 폐수처리건물 | 546.83 | 546.83 | | 다툼없음 | | | | | 546.83 |
| | 596 | 폐수처리관리실 | 206.36 | 206.36 | | 다툼없음 | | | | | 206.36 |
| | 597 | 해수소화펌프실 | 25.39 | 25.39 | | 다툼없음 | | | | | 25.39 |
| | 598 | 해수인양펌프조작실 | 320.00 | 320.00 | | 다툼없음 | | | | | 320.00 |
| | 599 | 홍보관 | 340.20 | 340.20 | | 다툼없음 | | | | | 340.20 |
| | 600 | 홍보관 화장실 | 57.40 | 57.40 | | 다툼없음 | | | | | 57.40 |
| | 601 | 회처리순환수펌프실 | 95.20 | 95.20 | | 다툼없음 | | | | | 95.20 |
| | 602 | 회처리순환수펌프실 | 408.00 | 408.00 | | 다툼없음 | | | | | 408.00 |
| | 603 | 화처리전원실 | 67.51 | 67.51 | | 다툼없음 | | | | | 67.51 |
| | 604 | 회처리펌프제어실 | 23.80 | 23.80 | | 다툼없음 | | | | | 23.80 |
| | 605 | 후문경비실 | 54.98 | 54.98 | | 다툼없음 | | | | | 54.98 |
| | 606 | 석탄혀급실비 제어실 증축 | 0.00 | 0.00 | | 다툼없음 | | | | | 0.00 |
| | 607 | 오수처리펌프실 | 36.21 | 36.21 | | 다툼없음 | | | | | 36.21 |
| | 608 | 저탄장 살수펌프 건물 | 180.00 | 180.00 | | 다툼없음 | | | | | 18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609 | 석탄취급 전기실 및 정비원 후생건물 | 664.47 | 664.47 | | 다툼없음 | | | | | 664.47 |
| | 610 | 중수처리 건물 | 869.80 | 869.80 | | 다툼없음 | | | | | 869.80 |
| | 611 | 총질소 제거건물 | 659.20 | 659.20 | | 다툼없음 | | | | | 659.20 |
| | 612 | 방카 | 7.20 | 7.20 | | 다툼없음 | | | | | 7.20 |
| | 613 | 분진측정실 | 32.00 | 32.00 | | 다툼없음 | | | | | 32.00 |
| | 614 | 망루 | 7.92 | 7.92 | | 다툼없음 | | | | | 7.92 |
| | 615 | 경비실 | 10.00 | 10.00 | | 다툼없음 | | | | | 10.00 |
| | 616 | 탈황 #3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 | 617 | 탈황 #3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618 | 탈황 #4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 | 619 | 탈황 #4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620 | 탈황 #5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 | 621 | 탈황 #5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622 | 탈황 #6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 | 623 | 탈황 #6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624 | 주산면 화평리 정수장 | 132.19 | 132.19 | | 다툼없음 | | | | | 132.19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적부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625 | 기타건물 | 7,990.72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원고가 신고절차 없이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등 건물에 대하여 사실조사하여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18호증 1내지3<br>을제36호증 1<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5,838.95에서 5,777.66로 면적 정정 | 컨테이너등(을제18호증2) 중 순번 24-26 기재 건물 1,764.96㎡, 설비배관실 102.86㎡, 전기실 215.1㎡, 제어실 215.1㎡(각 을제18호증1) 합계 2,298.02㎡는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 나머지 건축물은 특정 인정 | 5,692.70 |
| 합계 | | | **3,822,010.57** | **451,327.05** | | | | | | | **1,107,675.94** |

*참고(순번343번)

| 컨베이어설비명 | 피고 면적 | 오류 내용 | 인정 면적 | 차이 |
|---|---|---|---|---|
| BC43A/B의 A | 1,142.10 | 수평투영 오류 | 1,057.50 | 84.6 |
| BC4A/B | 827.51 | 상동 | 788.5 | 39.01 |
| BC22 | 397.59 | 상동 | 365.6 | 31.99 |
| BC23 | 391.5 | 상동 | 360 | 31.5 |
| BC12A/B의 A | 2,071.30 | 상동 | 1,770.23 | 301.07 |
| BC61 | 531.81 | 상동 | 467.4 | 64.41 |
| BC62 | 330.72 | 상동 | 300.3 | 30.42 |
| BC63 | 396.4 | 상동 | 328 | 68.4 |
| BC64 컨베이어 | 402.3 | 상동 | 346.5 | 55.8 |
| BC66A/B | 598.98 | 상동 | 475.7 | 123.28 |
| BC53A/B의 C | 988.22 | 상동 | 904.62 | 83.6 |
| BC40A/B의 A | 2,302.30 | 상동 | 1,995 | 307.3 |
| BC33A/B | 973.44 | 합계 오류 | 802.42 | 171.02 |
| BC32A/B | 775.96 | 합계 오류 | 664.48 | 111.48 |
| | | | 합계 | 1503.8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23

별지5 20 ; 연관적 산정표

| 구분 | 순번 | 피고의 과세처분 근거 기재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 | 석회석부두 | | 0.00 | | | | 2007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 | | | |
| | 2 | 물양장 | | 0.00 | | | | 상동 | | | |
| | 3 | 호 안 | | 0.00 | | | | 상동 | | | |
| | 4 | 케이블터널 | | 0.00 | | | | 상동 | | | |
| | 5 | 케이블보호철판 | | 0.00 | | | | 상동 | | | |
| | 6 | EDB 맨홀 | | 0.00 | | | | 상동 | | | |
| | 7 | 케이블 트레이 | | 0.00 | | | | 상동 | | | |
| | 8 | EDB 맨홀 | | 0.00 | | | | 상동 | | | |
| | 9 | 케이블시설 | | 0.00 | | | | 상동 | | | |
| | 10 | 케이블트레이및전선관 | | 0.00 | | | | 상동 | | | |
| | 11 | 취수장케이블트레이 | | 0.00 | | | | 상동 | | | |
| | 12 | 취수장케이블트레이 | | 0.00 | | | | 상동 | | | |
| | 13 | CWP 케이블트레이 | | 0.00 | | | | 상동 | | | |
| | 14 | 옹벽 1,2,3 | | 0.00 | | | | 상동 | | | |
| | 15 | 옹벽24 | | 0.00 | | | | 상동 | | | |
| | 16 | 옹벽25-27 | | 0.00 | | | | 상동 | | | |
| | 17 | 옹벽28-30 | | 0.00 | | | | 상동 | |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이 기재 원고 주장의 취하 원인 사유 기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기타시설 | 18 | 옹벽 31,32 | | 0.00 | | | | 상동 | | | |
| | 19 | 옹벽34-1,34-2,54~56 | | 0.00 | | | | 상동 | | | |
| | 20 | 옹벽57,58 | | 0.00 | | | | 상동 | | | |
| | 21 | 옹벽59~62 | | 0.00 | | | | 상동 | | | |
| | 22 | 옹벽63 | | 0.00 | | | | 상동 | | | |
| | 23 | 옹벽11 | | 0.00 | | | | 상동 | | | |
| | 24 | 옹벽17 | | 0.00 | | | | 상동 | | | |
| | 25 | 옹벽64~66 | | 0.00 | | | | 상동 | | | |
| | 26 | 2부두Air라인 | | 0.00 | | | | 상동 | | | |
| | 27 | 스팀관 | | 0.00 | | | | 상동 | | | |
| | 28 | 스팀관 | | 0.00 | | | | 상동 | | | |
| | 29 | 법면 | | 0.00 | | | | 상동 | | | |
| | 30 | CWP 옆 구조물 | | 0.00 | | | | 상동 | | | |
| | 31 | POND(연못) | | 0.00 | | | | 상동 | | | |
| | 32 | 공업용수저수지 | | 0.00 | | | | 상동 | | | |
| | 33 | 남부회처리장 | | 0.00 | | | | 상동 | | | |
| | 34 | 북부회처리장 | | 0.00 | | | | 상동 | | | |
| | 35 | 다툼없는 면적 | | | | | | 상동 | |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기타시설 | 36 | 다툼없는 내부도로 | | | | | | 상동 | | | |
| | 37 | 다툼 없는 주차장 | | | | | | 상동 | | | |
| | 38 | 다툼 없는 가스관 | | | | | | 상동 | | | |
| | 39 | 다툼 없는 복개시설 | | | | | | 상동 | | | |
| 급배수시설 | 40 | 스팀배관맨홀 | | 0.00 | | | | 상동 | | | |
| | 41 | 우수맨홀 | | 0.00 | | | | 상동 | | | |
| | 42 | 우수맨홀 | | 0.00 | | | | 상동 | | | |
| | 43 | 우수배수로 | | 0.00 | | | | 상동 | | | |
| | 44 | 1~8호기 연돌면적 | 3,748.18 | 0.00 | 비과세대상 | 연돌은 기계장치가 아니라 시설물이며, 과세대상 시설물이 아님.(2006.12.30법률개정)<br>※ 연돌 : 연소가스가 보일러에서 나와 대기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통로.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공작장치임. | 기력도면(갑가 제16호증),<br>복합도면(갑가 제27호증) | 지방세법상 기계장치는 「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는것으로, 연돌은 원고가 과거부터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해왔고 보조참가인(서천군) 등에서도 기계장치로 안분계산하고 있는 상황임. | 을제8호증: 연돌설계도면<br>을제27호증1~12: 연돌내부기계장치 및 연돌평판 사진 등<br>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매뉴얼<br>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장치안내서<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8,957.22에서 3,748.18로 면적 정정 | 연돌은 기계장치인 보일러의 필수적인 부대설비임을 인정다만,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7, 8호기 연돌면적 부분 398.02㎡를 제외한 3,350.16㎡ 만 인정 | 3350.16 |
| | 45 |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연돌 | 3,320.64 | 0.00 | 기과세, 비과세대상 | 1. 피고가 2009.11월 복합연돌로 과세하고, 2011.4월 복합보일러 연돌 및 터빈연돌로 다시 과세함.<br>또한 보일러연돌은 보일러 건물의 일부이며, 별도의 시설이 아님. 가스연돌 또한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연돌은 기계장치 아님).<br>2. 을 제42호증을 보더라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되며, 갑가 제61호증을 통해 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1호증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독립적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br>원고는 건물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것이라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건축물과 유사한 구조물임에도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에 미포함되어 연돌은 생산시설의 일부인 기계장치로 포함되어야 함. | 을제27호증7내지11<br>을제42호증: 건물과 분리된 연돌 사진<br>참고자료17: 연돌배연감시안내서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3,320.64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이 기재 원고 주장의 최분 원법 사유 기재 출력일자 : 2017-08-23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피고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 내용 | | 인정 면적(㎡) | |
| | 46 | 예비변압기 | 224.00 | 0.00 | 비과세대상 | 1. 야적된 자재임.<br>2.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갑가 제69호증을 보면 해당 예비변압기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9호증 | 스위치야드등이 시설되어 있어 현재 사용중이거나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변압기임.또한, 기계장치의 경우 언제든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콘크리트로 받침대를 시설하고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시설하고 있는 변압기를 보관만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드릴 수 없는 상황임. | 을제31호증101<br>을제53호증: 스위치야드 시설사진 | | 예비용으로 사업 운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기계장치이므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 224.00 | |
| | 47 | 연소용공기유입구 | 761.76 | 0.00 | 비과세대상 | 1. 연소용 공기유입구로서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가스터빈건물의 일부로서 건물 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을 제49호증의 1 내지 3에서도 건물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갑가제65호증 |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면적이라 하고 있으나 갑가제65호증은 해당기계장치가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현황도임.원고는 건축물 입구를 기계장치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임. 건축물 도면 확인없는 주장에 불과함. | 을제31호증80<br>을제49호증1내지3: 건물과 별도로 시설된 기계장치 지지대 등 현황사진 |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 761.76 | |
| | 48 |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 | 8,245.23 | 0.00 | 특정필요 | 피고가 유인통풍기콘크리트구조물이라는 명칭으로 과세한 건이나, 피고의 호증만 보아서는 면적산출 근거를 알 수 없음. 또한 유인송풍기는 기계장치가 아닌 팬(fan)임. | | 펌프시설 기력1호기 옆에 시설되어 있으며 유인통풍기는 이미 도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콘크리트 구조물은 오폐수처리장의 기계실 출입구임을 증빙한 바 있으나 원고는 관련 증빙자료 확인없이 과세물건이 확인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임. | 을제31호증16, 을제31호증84<br>을제33호증55<br>을제50호증: 유인통풍기 위치도면<br>을제51호증: 유인통풍기 현황사진<br>을제57호증1내지6: 콘크리트구조물 현황사진 | | 구조물 13.82㎡(을제33호증의55)는 콘크리트 구축물로서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나머지는 기계장치로서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다만 7, 8호기 유인통풍기 2,360.9㎡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 5,870.51 | |
| | 49 | 기계장치 | 18.94 | 0.00 | 비과세대상 | 회사소유 시설물 아님 | | 보령댐으로부터 공업용수를 공급받기 우해 주산면 화평리 가압장내의 기계장치며 가압장 관리인이 원고소유 기계장치라 함. | 을제31호증36<br>을제60호증7: 가압장 취수설비계통 설명서 | | 원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 0 | |
| | 50 | 송풍구 | 2.85 | 0.00 | 기과세 | 1. 7,8호기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2호증 | 을제31호증44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건물과 별개로 모터와 환풍장치가 시설된 기계장치임.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대로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44<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 0 | |
| | 51 | 취수장내기계장치 | 21.84 | 0.00 | 기과세 | 1. 취수장으로 과세한 건임<br>2. 해당 시설은 취수장 내에 설치된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따라서 취수장바닥면적과 별개로 시설된 레일등은 별개로 산출되어야 함. 중복되지 않음. | 을제31호증6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 기계장치와 시설물은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 21.84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원고, 주장의 취지 및 사유 기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지 및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2 | HRSG | 644.00 | 30.00 | 면적산출오류 | 1. 1GT 30㎡는 인정. HRSG는 건물의 일부로 보아야 함.<br>2. 건물에 연결된 기계장치로서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6호증 | 보일러 건물과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제6조제4호에서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81: 현황사진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644 |
| | 53 | 1,2호기 플라이애쉬사일로 백필터 | 116.92 | 0.00 | 기과세 | 1. 비회저장조로 과세한 건임<br>2. 비회저장조와 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 | 갑가제67호증 | 플라이애쉬 사일로 상단에 위치한 기계장치는 여러대의 모터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터는 사일로와 별개로 시설되어 있어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의거 구조물에 부착된 시설물은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95,96<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건축물 옥상에 위치한 기계장치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116.92 |
| | 54 | 증기배출구 | 745.82 | 0.00 | 비과세대상 | 1. 소음기이며, 복합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갑가제68호증 | 원고는 당초 해당시설물이 소음기가 아니라고 하다가 피고가 증빙을 통해 입증하자 또다시 건물외부 기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방세법에서 건물안의 시설물은 건물로 과세하고 건물외의 시설물은 각각 과세토록하고 있어 원고주장은 근거없음. | 을제31호증99,100<br>을제31호증102, 을제31호증104<br>을제52호증1내지4: 소음기 입증사진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745.82 |
| | 55 | 환풍구 | 168.48 | 0.00 | 비과세대상 | 1. 소음기이며,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 피고가 기계장치로 입증한 사진을 보면 해당시설물안에 기계장치가 시설되어 있고 전원장치등을 통해 구조물안의 기계장치가 가동되도록 시설된 장치임. 따라서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103,을제31호증105,<br>을제31호증10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다만 7, 8호기 부분 40.48㎡는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128 |
| | 56 | 내부공기배출구 | 328.56 | 0.00 | 비과세대상 | 1. 기력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임<br>2. 건물안의 시설물이 일부 밖으로 나온 것일뿐 건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이 아님. | | 모터와 배전반 스위치가 있는 건물과 별개의 기계장치임. 지방세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어야 함. | 을제31호증106,107,108<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건축물 외부로 돌출된 기계장치로서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연면적을 산정함. | 328.56 |
| | 다툼없는 기계장치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57 | 취수펌프시설지역 | 1,392.93 | 1,392.93 | | 다툼없음 | | | | | 1,392.93 |
| | 58 | CWP STRUCTURE | 960.00 | 960.00 | | 다툼없음 | | | | | 96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9 | CWP크레인 | 392.70 | 392.70 | | 다툼없음 | | | | | 392.70 |
| | 60 | SLP크레인 | 896.04 | 896.04 | | 다툼없음 | | | | | 896.04 |
| | 61 | SLP크레인 레일 | 15.20 | 15.20 | | 다툼없음 | | | | | 15.20 |
| | 62 | CWP 크레인 레일 | 65.80 | 65.80 | | 다툼없음 | | | | | 65.80 |
| | 63 | 복합연소용필터 | 39.25 | 39.25 | | 다툼없음 | | | | | 39.25 |
| | 64 | 복합연돌 | 158.50 | 158.50 | | 다툼없음 | | | | | 158.50 |
| | 65 | 복합주변압기 | 257.44 | 257.44 | | 다툼없음 | | | | | 257.44 |
| | 66 | 복합 HRSGSUMP | 33.00 | 33.00 | | 다툼없음 | | | | | 33.00 |
| | 67 | 복합 GT7.8 변압기 | 37.72 | 37.72 | | 다툼없음 | | | | | 37.72 |
| | 68 | 복합경유가압펌프 | 91.00 | 91.00 | | 다툼없음 | | | | | 91.00 |
| | 69 | 복합질소저감순수공급펌프 | 69.00 | 69.00 | | 다툼없음 | | | | | 69.00 |
| | 70 | 취수펌프시설 | 3,260.07 | 3,260.07 | | 다툼없음 | | | | | 3,260.07 |
| | 71 | CWP STRUCTURE | 2,652.00 | 2,652.00 | | 다툼없음 | | | | | 2,652.00 |
| | 72 | 석회석이송탑(TT01) | 33.00 | 33.00 | | 다툼없음 | | | | | 33.00 |
| | 73 | 석회석이송탑(TT02) | 80.00 | 80.00 | | 다툼없음 | | | | | 80.00 |
| | 74 | 석회석이송탑(TT03) | 34.65 | 34.65 | | 다툼없음 | | | | | 34.65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75 | 석회석이송탑(TT04) | 39.00 | 39.00 | | 다툼없음 | | | | | 39.00 |
| | 76 | 석회석이송설비(LP01) | 485.56 | 485.56 | | 다툼없음 | | | | | 485.56 |
| | 77 | 석회석이송설비(LP02) | 720.38 | 720.38 | | 다툼없음 | | | | | 720.38 |
| | 78 | 석회석이송설비(LP03) | 1,058.68 | 1,058.68 | | 다툼없음 | | | | | 1,058.68 |
| | 79 | 석회석이송설비(LP04) | 129.35 | 129.35 | | 다툼없음 | | | | | 129.35 |
| | 80 | 해수가압펌프 | 72.00 | 72.00 | | 다툼없음 | | | | | 72.00 |
| | 81 | 변압기 | 2,048.66 | 2,048.66 | | 다툼없음 | | | | | 2,048.66 |
| | 82 | 기동변압기 | 261.66 | 261.66 | | 다툼없음 | | | | | 261.66 |
| | 83 | 탈황기동변압기 | 7.79 | 7.79 | | 다툼없음 | | | | | 7.79 |
| | 84 | 탈황보조변압기 | 1,884.90 | 1,884.90 | | 다툼없음 | | | | | 1,884.90 |
| | 85 | CWP 크레인 레일 | 90.47 | 90.47 | | 다툼없음 | | | | | 90.47 |
| | 86 | 크레인 | 298.20 | 298.20 | | 다툼없음 | | | | | 298.20 |
| | 87 | 크레인 | 240.00 | 240.00 | | 다툼없음 | | | | | 240.00 |
| | 88 | 상탄기 | 672.00 | 672.00 | | 다툼없음 | | | | | 672.00 |
| | 89 | 상탄기 | 448.00 | 448.00 | | 다툼없음 | | | | | 448.00 |
| | 90 | 석탄하역기 | 1,250.00 | 1,250.00 | | 다툼없음 | | | | | 1,250.00 |

대한민국법원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기계장치 | 91 | 석탄하역기 | 1,136.00 | 1,136.00 | | 다툼없음 | | | | | 1,136.00 |
| | 92 | 상탄기레일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93 | 상탄기레일 | 339.20 | 339.20 | | 다툼없음 | | | | | 339.20 |
| | 94 | 석탄하역기레일 | 73.90 | 73.90 | | 다툼없음 | | | | | 73.90 |
| | 95 | 저탄장내컨베이어시설(S/R 기초) | 22,539.00 | 22,539.00 | | 다툼없음 | | | | | 22,539.00 |
| | 96 | CWP 구조물 | 572.89 | 0.00 | |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2007년도 취득함 7,8호기의 최초점화일이2007.11.14. 이므로 최소한 2007년 이전에 모든시설이 완료 되어야함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36<br>을제4호증1: 7호기수압시험일(2007.5.23)<br>을제4호증2: 7호기최초점화일(2007.11.30)<br>을제4호증3: 8호기수압시험일(2007.11.14) |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 97 | CWP 구조물 | 572.89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98 | 변압기(주 변압기) | 861.25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99 | 변압기(소내 변압기) | 264.50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00 | 변압기(여자용 변압기) | 155.25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01 | 변압기(기동용 변압기) | 183.96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02 | 연돌 | 280.55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03 | 상탄기 | 448.00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04 | 상탄기 레일 | 170.56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득원인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05 | 저탄장내컨베이어(BC-73) | 5,071.00 | 0.00 | | 상동. S/R면적과 중복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06 | 저탄장내컨베이어(BC-74) | 5,071.00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07 | 석회석 이송설비 | 2,625.80 | 0.00 | |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08 | 석회석 이송설비 | 824.00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09 | 석회석 이송설비 | 75.10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10 | 석회석 이송설비 | 18.92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11 | 석회석 이송설비 | 32.98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12 | 석회석 이송설비 | 5.30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13 | 석회석 이송설비 | 58.50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114 | 고전압시설 | 177.12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1호증 81내지82 | 을제31호증의29의 영상과 같이 기계장치로 연면적 산정에 포함. | 177.12 |
| | 115 | 가스장치 | 402.4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81내지82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402.48 |
| | 116 | 복합변압기 | 825.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의76, 제85호증 | 상동 | 825 |
| | 117 | DUST COLLECTOR SYSTEM(24기) | 586.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86, 을제86호증 | 상동 | 586.56 |
| | 118 | 기계장치 (플라이애쉬싸일로 위) | 89.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96 | 이 목록 순번 53번 기재 면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함.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19 | 수문 | 742.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 건설지 90p, 을제83호증의13 |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이므로 제외함. | 0 |
| | 120 | 복합HRSG | 3,19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4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196 |
| | 121 | HP Drum | 153.4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5 | 이 목록 순번 120번 기재 복합HRSG의 부속장치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산정하지 않음. | 0 |
| | 122 | IP Drum | 68.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제83호증의16 | 상동 | 0 |
| | 123 | LP Drum | 62.4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618,619p, 을 제83호증의 17 | 상동 | 0 |
| | 124 | 저장지역연료유펌프 | 1.4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중유)13p, 을제83호증의18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44 |
| | 125 | 중유서비스연료유펌프 | 4.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중유)15p |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126 | First stage<br>Mist Eliminnator | 671.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19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127 | Second stage<br>Mist Eliminnator | 1,007.2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66p, 을제83호증의20 | 상동 | 0 |
| | 128 | Booster Fan Innet Danper | 184.3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1 | 상동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29 | Booster Fan Outlet Danper | 255.3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2 | 상동 | 0 |
| | 130 | Energency Danper | 130.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2p, 을제83호증의23 | 상동 | 0 |
| | 131 | Fgd Fan Outlet Danper | 141.1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4 | 상동 | 0 |
| | 132 | 가스히터 | 864.8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73p, 을제83호증의 25 | 상동 | 0 |
| | 133 | 여과수썸프 | 118.5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301p, 을제83호증의26 | 상동 | 0 |
| | 134 | 계량대 | 3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3~6호기걸설지(탈황)850p, 을제83호증의27 |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이거나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함. | 0 |
| | 135 | 전기집진기 | 10,37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p, 을제83호증의28 | 이 목록 순번 346, 354,0359 내지 361, 368 내지 370, 373, 374, 378, 379번 기재 전기집진기실 내지 집진기와 별도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인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136 | 가스절연발전소 | 1,20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5~6호기종합용역(기계분야)3-77,78p, 을제83호증의29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204 |
| | 137 | 집진판(Element Size, Ass' Y Size) | 5,983.5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87p, 을제83호증의30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138 | AIR PREHEATER INETDAMEER | 286.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139 | Expansion Joint | 302.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 종합용역보고서93p, 을제83호증의31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 또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취득원인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40 | 오폐수처리장기계실 | 205.5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57호증 1내지6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05.57 |
| | 141 | Scr탈질설비구조물 | 4,75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종합사업보고서<br>246,249p, 을제83호증의32 | 상동 | 4,752.00 |
| | 142 | 7.8호기송풍기 | 10.1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44 |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br>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 143 | 7.8호기펌프시설 | 7.1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46 | 상동 | 0 |
| | 144 | 7.8호기유인통풍기 | 2,360.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84 | 상동 | 0 |
| | 145 | 7,8호기345KV 옥외변전설비 | 3,50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1호증 97 | 상동 | 0 |
| | 146 | 공기압축기 | 20.3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 건설지295P<br>을제83호증 45 | 상동 | 0 |
| | 147 | control BLDG Water chilers | 15.4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 건설지306P<br>을제83호증 46 | 상동 | 0 |
| | 148 | Air handling unit | 127.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 건설지307P<br>을제83호증 47 | 상동 | 0 |
| | 149 | 촉매,촉매반응기 | 423.2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 건설지394P<br>을제83호증 48 | 상동 | 0 |
| | 150 | 저희 2ROll Crusher | 19.6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 건설지877P<br>을제83호증 49 | 상동 | 0 |
| | 151 | 공기예열기 | 2,228.4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용역보고서1-10P<br>을제83호증 50 | 상동 | 0 |
| | 152 | 연속식하역기 | 64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기기설치지침서(1)4-20P<br>을제83호증 51 | 상동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53 | 침전분리조1.2실 | 111.7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오수처리장준공도서<br>을제83호증 52 | 상동 | 0 |
| | 154 | 접촉폭기조1.2실 | 93.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오수처리장준공도서<br>을제83호증 53 | 상동 | 0 |
| | 155 | 7.8호기집진기 | 3,163.6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건설지 271,272P<br>을제83호증 54 | 상동 | 0 |
| | 156 | 냉각수심층취수구 | 5,245.30 | 0.00 | 비과세대상 | - 수조가 아니라 급배수 시설에 해당함. 급배수 시설은 2006년부터 과세대상 아님. 냉각수 심층취수구는 해수취스펌프 전방에 위치해 해수펌프로 들어오는 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서 바다속에 사각형의 터널로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물을 인위적으로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구조물(수조)가 아님. 급배수 시설에 해당함 | 갑가제8호증, 갑가제21호증의 1,2,3 | 냉각수심층취수구는 유입흡수구와 유입수로 및 집수조가 한 구조로 시설되어 있고 유입흡수구는 취수로보다 3m높게 시설하여 저장기능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원고는 설계서를 달리 설명하고 있음. 또한, 행자부심사결정에서도 화력발전소 취수로는 "큰통의 해수저장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음. | 을제3호증2: 심층취수구설계도면<br>을제22호증1내지2: 설계도면 및 계통도<br>참고자료5: 냉각수이용방법<br>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br>참고자료14-1,14-2: 행자부심사결정서<br>(99-212호,2001-97호) | 급배수시설이므로 제외함 | 0 |
| | 157 | 7,8호기냉각수배수관로(소수력댐 및 기계장치) | 4,555.58 | 0.00 | 비과세대상 | - 수조가 아님. 급배수 시설에 해당함(2006년부터 비과세대상)<br>- 본 시설은 2008년에 취득한 시설임 | | 7,8호기 냉각수 배수계통은 관로와 소수력발전댐 및 기계장치인 소수력터빈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원고는 관로시설만 있는것으로 주장.위 현황에 따라 관로는 급배수 시설로, 댐시설(기계장치포함)은 '수조"로 구분하여 면적산출함. | 을제29호증1,2: 소수력발전댐시설<br>참고자료12: 배수관로 현황사진 |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 158 | 복합발전 취수장옆배수조 | 162.64 | 0.00 | 비과세대상 | 피고가 복합발전 취수장 옆 배수로로 과세했으며, 본 시설은 급배수시설임(2006년부터 비과세대상), 해당 시설은 저장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수조가 아니라 배수로이며, 배출구도 존재함(갑가 제78호증의 1,2). 취수구를 통해 냉각용 해수를 취수한 후, 발전계통을 순환한 뒤에 물양장 옆에 위치한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배출함(이를 온배수라고 함) | 갑가제10호증, 갑가제23호증, 갑가제35호증, 갑가제78호증의 1,2 | 해수펌프앞(SLP)앞 '집수조 및 취수로와 연결된 시설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정한 일시적 저장시설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한, 원고는 아무런 증빙없이 취수장에서 넘치는 물을 바다로 흘러 보낸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집수조에 유입되는 해수의 역류방지를 위한 사이펀계통설명과 부합되지 않고 특히 바다로 흘러보낸다면서 배출되는 배출구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 을제23호증1,2: 현황사진<br>참고자료8: 지방세운용메뉴얼 | 수로에 해당할 뿐, 수조로 볼 수 없음.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59 | 정화조 | 28.69 | 0.00 | 비과세대상 | 정화조는 비과세대상임 | | 단순저장기능인 정화조는 포함대상이며 또한 기계작동에 따라 정화하는 정화조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비과세대상아님. | 을제33호증56: 정화조조적반기계장치사진<br>을제33호증58: 단순정화조사진<br>을제59호증: 정화조 조적반기계장치사진 | 저장조 또는 기계장치로서 면적 산정에 포함함. | 28.69 |
| | 다툼없는 저장조.수조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160 | 심층취수로 | 1,351.48 | 0.00 | | 급배수 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2 | 급배수시설이므로 제외함 | 0 |
| | 161 | 냉각수 취수장 사다리꼴 | 549.89 | 0.00 | | 급배수 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2 | 수조에 해당하므로 면적 산정에 포함함. | 549.89 |
| | 162 | 냉각수 취수장 직사각형 | 148.94 | 148.94 | | 다툼없음 | | | | | 5,245.30 |
| | 163 | 취수장 옆 배수로 | 162.64 | 0.00 | | 급배수 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2 | 수로에 해당할 뿐, 수조로 볼 수 없음. | 0 |
| | 164 | 취수로 | 2,585.80 | 2,585.80 | | 다툼없음 | | | | | 2,585.80 |
| | 165 | 순수탱크 | 346.19 | 346.19 | | 다툼없음 | | | | | 346.19 |
| | 166 | 복합 일상폐수조 | 401.98 | 401.98 | | 다툼없음 | | | | | 401.98 |
| | 167 | 오수정화조 | 108.00 | 108.00 | | 다툼없음 | | | | | 108.00 |
| | 168 | 복합 함유폐수조 | 163.40 | 163.40 | | 다툼없음 | | | | | 163.40 |
| | 169 | 냉각수 배수관로 1 | 273.01 | 0.00 | | 급배수 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2 내지 3 | 물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급배수 시설에 해당함.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70 | 냉각수 배수관로 2 | 511.57 | 0.00 | | 급배수 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2 내지 3 | 물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급배수 시설에 해당함. | 0 |
| | 171 | 염소저장조 | 14.12 | 14.12 | | 다툼없음 | | | | | 14.12 |
| | 172 | 복합염산탱크 | 2.83 | 2.83 | | 다툼없음 | | | | | 2.83 |
| | 173 | 복합소포제 주입탱크 | 5.66 | 5.66 | | 다툼없음 | | | | | 5.66 |
| | 174 | 염산저장탱크 | 33.46 | 33.46 | | 다툼없음 | | | | | 33.46 |
| | 175 | 가성소다저장탱크 | 80.44 | 80.44 | | 다툼없음 | | | | | 80.44 |
| | 176 | 저회저장조 | 157.00 | 157.00 | | 다툼없음 | | | | | 157.00 |
| | 177 | 비회저장조 | 562.80 | 562.80 | | 다툼없음 | | | | | 562.80 |
| | 178 | 석고탈수탱크 | 54.00 | 54.00 | | 다툼없음 | | | | | 54.00 |
| | 179 | 석회석일일저장조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180 | 석회석슬러리탱크 | 46.50 | 46.50 | | 다툼없음 | | | | | 46.50 |
| | 181 | 석회석저장사일로 | 181.30 | 181.30 | | 다툼없음 | | | | | 181.30 |
| | 182 | 탈황비상저장탱크 | 165.00 | 165.00 | | 다툼없음 | | | | | 165.00 |
| | 183 | 석회석저장사일로 | 181.30 | 181.30 | | 다툼없음 | | | | | 181.30 |
| | 184 | 염기저장조 | 9.00 | 9.00 | | 다툼없음 | | | | | 9.00 |
| | 185 | 염기및산저장탱크 | 26.40 | 26.40 | | 다툼없음 | | | | | 26.40 |
| | 186 | 염기및산저장탱크 | 26.40 | 26.40 | | 다툼없음 | | | | | 26.4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87 | 냉각수 배수관로 | 409.05 | 0.00 | | 급배수 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18 | 물을 일시 저장하는 기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급배수 시설에 해당함. | 0 |
| | 188 | 심층취수로입구<br>(냉각수취수펌프 유입흡수구) | 221.76 | 0.00 | | 급배수 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18 | 급배수시설이므로 제외함 | 0 |
| | 189 | 심층취수관로<br>(냉각수취수펌프 유입수로) | 3,672.06 | 0.00 | | 급배수 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18 | 급배수시설이므로 제외함 | 0 |
| | 190 | 취수장 | 5,081.23 | 0.00 | | 급배수 시설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수조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18 | 수조 면적 469.47㎡, 이 사건 취수장 구축물 1,934.54㎡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함. | 2,404.01 |
| | 191 | 취수로 | 26,298.02 | 26,298.02 | | 다툼없음 | | | | | 26,298.02 |
| | 192 | 취수로 | 3,060.74 | 3,060.74 | | 다툼없음 | | | | | 3,060.74 |
| | 193 | 복수저장탱크 | 330.28 | 330.28 | | 다툼없음 | | | | | 330.28 |
| | 194 | 순수저장조<br>(DEMI WATER TANK) | 307.72 | 307.72 | | 다툼없음 | | | | | 307.72 |
| | 195 | 조절지 수조 | 304.00 | 304.00 | | 다툼없음 | | | | | 304.00 |
| | 196 | 가압장 수조 | 317.00 | 317.00 | | 다툼없음 | | | | | 317.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및 입증자료 기재 | | | 원고, 주장의 취지 및 사유 기재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197 | 취수장 수조 | 50.00 | 50.00 | | 다툼없음 | | | | | 50.00 |
| | 198 | 원수탱크B | 2,147.20 | 2,147.20 | | 다툼없음 | | | | | 2,147.20 |
| | 199 | 원수탱크D | 6,358.50 | 6,358.50 | | 다툼없음 | | | | | 6,358.50 |
| | 200 | 재활용수조 | 48.00 | 48.00 | | 다툼없음 | | | | | 48.00 |
| | 201 | 취수로 | 13,775.00 | 0.00 | |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2007년도 취득함 7,8호기의 최초점화일이2007.11.14. 이므로 최소한 2007년 이전에 모든시설이 완료 되어야함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37<br>을제4호증1: 7호기수압시험일(2007.5.23)<br>을제4호증2: 7호기최초점화일(2007.11.30)<br>을제4호증3: 8호기수압시험일(2007.11.14) | 7, 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 202 | 냉각수 배수로 집수정 | 3,362.00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203 | 석고탈수공급탱크 | 234.54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204 | 7.8호기 순수저장탱크 | 277.45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205 | 7호기복수저장탱크 | 38.47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206 | 8호기복수저장탱크 | 38.47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저장소, 수조 | 207 | 비회저장조 | 282.91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208 | ASH WATER MACE UP TANK | 44.16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209 | ASH Tramsfer Tank | 50.24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210 | LIMESTONE STORAGE SILO(석회석 사일로) | 1,251.30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211 | LIMESTONE STORAGE SILO(석회석 사일로) | 1,251.30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212 | 수조 | 1,164.38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3호증1~8, 20~23, 44, 52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164.38 |
| | 213 | 저장조 | 1,475.6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br>1,9,12~15,18~19,24~28, 30,38~39,45~46,48~49,51,53~54<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475.55에서 1,475.61로 면적 정정 | 상동. 다만 7,8호기 저장조 703.3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을제38호증의38-39). | 772.29 |
| | 214 | 펌프실(2-1)(2-2) | 30.2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16~17<br>*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01.4에서 30.21로 면적 정정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0.21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득원인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15 | 기력 LOSERVICE TANK | 276.3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47 | 상동 | 276.32 |
| | 216 | CPI유수분리기 | 48.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50 | 상동 | 48.76 |
| | 217 | 콘크리트구조물 | 13.82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55 | 콘크리트 구조물은 시설물 제외함. | 0 |
| | 218 | 복합유수분리기 | 309.8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 상동 | 0 |
| | 219 | 복합오폐수집수지 | 397.0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1 | 상동 | 0 |
| | 220 | 폐수집수조 (abnormal,normal) | 40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406p<br>을제83호증 34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400 |
| | 221 | 경유저장탱크 | 530.6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소화설비경유계통9p<br>을제83호증 35 | 상동 | 530.66 |
| | 222 | 원수저장탱크 | 2,098.0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소화설비(공업원수)7p<br>을제83호증 36 | 상동 | 2,098.08 |
| | 223 | 1차침전조 | 1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시설물을 특정하거나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224 | 1차반응탱크 | 1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2,303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25 | 2차반응탱크 | 1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26 | 3차반응탱크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27 | 1차체류조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4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28 | 1차응집탱크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29 | 2차침전조 | 56.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30 | 2차체류조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31 | 2차응집탱크 | 9.6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32 | 3차침전조 | 56.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5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33 | 1차처리수조 | 62.7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34 | 압력여과기 | 3.7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35 | 활성탄여과기 | 12.5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36 | 1차PH조정조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37 | 2차PH처리수조 | 4.9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6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38 | 불소흡착탑 | 6.2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할 수 없습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 | | 원고 주장의 취지 및 원인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39 | 2차PH조정조 | 4.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40 | 방류수조 | 66.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41 | 농축조 | 42.2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7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42 | 슬러지저장조 | 1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43 | 케이크호퍼 | 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44 | 세척수탱크 | 1.7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45 | 황산알루미늄호퍼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46 | 탄산나트륨호퍼 | 2.5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8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47 | 용해주입탱크 | 5.3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48 | 호퍼공기저장탱크 | 0.8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49 | 용해탱크 | 0.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50 | 길레이트주입탱크 | 0.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09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51 | 폴리머용해탱크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52 | 폴리머주입탱크 | 4.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53 | 염산주입탱크 | 4.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54 | 염산가스실포트 | 0.1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55 | 수산화나트륨주입탱크 | 3.1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56 | 치아염산탱크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6호기건설지탈황 310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57 | 아황산용해탱크 | 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종합용역보고서112p<br>2015년 폐기시설(을제84호증) | 상동 | 0.00 |
| | 258 | MXINGTANK | 4.8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종합용역보고서112p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259 | 취수펌프장 | 37.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설계계산서11-13p<br>을제83호증 37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37.50 |
| | 260 | 용수저장탱크 | 29.6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4호기설계계산서11-14p<br>을제83호증 38 | 상동 | 1,017.36 |
| | 261 | 7.8호기수조 | 58.0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31, 32 |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 | 0 |
| | 262 | 7.8호기저장조 | 1,527.9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33내지41 | 7,8호기는 2009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및 입증자료 기재 | | | 원고 주장의 취분 원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63 | 지하저장조 | 105.91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46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105.91 |
| | 264 | 저장조(기력1~6호기) | 241.4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3호증60 | 상동 | 241.4 |
| | 265 | 7.8호기ASH AUX HOPPER | 19.2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건설지268,269p<br>을제83호증 55 | 7,8호기는 2009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 | 0 |
| | 266 | 7.8호기ASHWATER TANK | 44.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건설지270p<br>을제83호증 56 | 상동 | 0 |
| | 267 | 7.8호기압력여과기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건설지390p<br>을제83호증 57 | 상동 | 0 |
| | 268 | 7.8호기활성탄여과기 | 6.1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건설지391p<br>을제83호증 58 | 상동 | 0 |
| 저유조 | | 다툼없는 저유조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269 | 복합 DO Storage tank | 1,118.10 | 1,118.10 | | 다툼없음 | | | | | 1,118.10 |
| | 270 | Clean&Dirty Oil tank | 20.50 | 20.50 | | 다툼없음 | | | | | 20.50 |
| | 271 | LIGHTOILSERVICE 탱크 (1호기 서쪽) | 88.20 | 88.20 | | 다툼없음 | | | | | 88.20 |
| | 272 | LIGHTOILSERVICE 탱크 (2발 건너편) | 88.00 | 88.00 | | 다툼없음 | | | | | 88.00 |
| | 273 | 7.8호기TBN Main Lube oil 탱크 | 21.45 | | 불특정 | 피고 제출 증거로는 특정이 안됨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건설지905p<br>을제83호증 59 | 7,8호기는 2009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취득 원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74 | 7.8호기TBN Clean oil Storage | 31.42 | |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건설지905p<br>을제83호증 60 | 상동 | 0 |
| 공작물 | 275 | 7,8호기 컨베이어설비 | 34,155.78 | 0.00 | 비과세대상 | 본 시설은 2008년도에 취득한 시설물임 | | 시설물명에서 7,8호기 컨베이어 설비라 한것은 1~8호기 컨베이어설비의 오류로 설계도면과 실측을 통하여 컨베이어 시설면적을 수평투영면적으로 재산정 한 결과 합계면적이 34,155.78㎡이며 발전소별 면적을 구분하면, 1~6호기: 23,670.56㎡, 7~8호기: 10,485.22㎡임.<br>원고가 당초 주장한 면적(17,111㎡)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공작물축조신고없이 불법으로 시설한 컨베이어면적이 미산정됨. | 을제3호증3: 석탄취급설비계통도<br>을제24호증1: 면적집계표<br>을제24호증2내지59: 현황사진 및 면적산출내역<br>참고자료7: 행자부심사결정서(2007-427) | 1.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2. 1-6호기 컨베이어 설비는 2004년 이전부터 사용되던 기계장치임. 하단컨베이어나 take-up 장치는 별개이므로로 별도로 연면적 산정함.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면적 합계 23,670.36㎡ 중 갑가제43, 44호증, 을제24호증의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면서 수평 길이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거나 합계를 잘못 한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이 목록 아래 표 '*참고(순번275번)' 기재와 같이 잘못 추가된 면적 합계가 1,503.88㎡이므로 이를 공제한 면적 22,166.48㎡만 인정한다. | 22,166.48 |
| | 276 | 채광창 | 280.50 | 0.00 | 비과세대상 | 건물의 부속시설임 | | 건축법상 건축물 및 공작물의 범위는 높이 1m이상으로 해당 시설물의 경우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요건에 적합하여 별도의 면적산출 대상임. | 을제36호증7<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 |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 0 |
| | 다툼없는 공작물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277 | 채광창(건축물에서 이관 정정) | 280.5 | | |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6호증7<br>참고자료16:지방세해설자료 | 수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278 | 컨베이어설비(누락분추가) | 138.88 | | 불특정 | 피고측 증거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할 수 없음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많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피고 준비서면2011.08.22자 14면 |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279 | 급수탱크관련송수관 및 경유배관 | 2,944.14 | 0.00 | 기과세 | 급수탱크 관련 송수관 및 경유배관은 2009.11월 기과세하고(복합송수관 및 송유관), 2011.4월 다시 과세한 물건임 | 갑가제3호증의1 3면 및 11면 | 급수탱크관련 송수관이 다수의 장소에 시설되어 있으나 송수관의 길이 및 위치에서 기과세된 송수관이 아님. 송수관 일부에 대해서 제출하고 피고가 추가로 송수관을 찾아 과세하자 증빙없이 중복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 을제32호증6내지16 | 기과세된 증거가 없음 | 2,944.14 |
| | **다툼없는 송수관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 280 | CWP~보일러건물 송수관 | 2,076.80 | 2,076.80 | | 다툼없음 | | | | | 2,076.80 |
| | 281 | 취수관로 | 902.00 | 0.00 | | 취수관로가 아니라 배수관로임. 급배수시설이므로 2006, 2007은 비과세대상임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송수관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4 | 수조 등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제외함. | 0 |
| | 282 | 취수관로 | 3,351.92 | 0.00 | | 복합 급배수시설 배수관로로 과세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br>동시설은 송수관시설임.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4 | 상동 | 0 |
| | 283 | SCW PIPE | 256.00 | 256.00 | | 다툼없음 | | | | | 256.00 |
| | 284 | 급수탱크관련송수관 | 691.75 | 691.75 | | 다툼없음 | | | | | 691.75 |
| | 285 | 순수공급펌프실송수관 | 19.18 | 19.18 | | 다툼없음 | | | | | 19.18 |
| | 286 | 급수펌프실관련송수관 | 835.00 | 835.00 | | 다툼없음 | | | | | 835.00 |
| | 287 | 폐수 집수조관련송수관 | 298.20 | 298.20 | | 다툼없음 | | | | | 298.20 |
| | 288 | 오수정화조관련송수관 | 5.00 | 5.00 | | 다툼없음 | | | | | 5.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이 기재 원고, 주장의 취지 및 원용 사유 기재 출력일자 : 2017-08-23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송수관 | 289 | 해수취수펌프실관련 송수관 | 5.00 | 5.00 | | 다툼없음 | | | | | 5.00 |
| | 290 | EXIST SANTARY WATER (오수관) | 31.00 | 31.00 | | 다툼없음 | | | | | 31.00 |
| | 291 |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 389.00 | 389.00 | | 다툼없음 | | | | | 389.00 |
| | 292 | 취수장옆 HUME PIPE | 2.57 | 2.57 | | 다툼없음 | | | | | 2.57 |
| | 293 |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 1,106.09 | 1,106.09 | | 다툼없음 | | | | | 1,106.09 |
| | 294 | CWP 배관(CWP~보일러건물) | 768.00 | 768.00 | | 다툼없음 | | | | | 768.00 |
| | 295 | CWP PIPE(CWP~보일러건물) | 3,840.00 | 3,840.00 | | 다툼없음 | | | | | 3,840.00 |
| | 296 | 수처리 건물 관련 | 2.04 | 2.04 | | 다툼없음 | | | | | 2.04 |
| | 297 | 해수가압펌프 송수관 | 0.39 | 0.39 | | 다툼없음 | | | | | 0.39 |
| | 298 | 공업용수관로(보령댐~보령화력) | 15,750.00 | 15,750.00 | | 다툼없음 | | | | | 15,750.00 |
| | 299 | WASTE WATER PIPE LINE(폐수관) | 1,050.55 | 0.00 | |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과세대상시설물 현황 내역"에 근거한 과세처분임. 동시설은 2007년도 취득함 7,8호기의 최초점화일이2007.11.14. 이므로 최소한 2007년 이전에 모든시설이 완료 되어야함 | 원고 제공 과세대상 시설물 현황 내역<br>을제77호증 34 내지 35<br>을제4호증1: 7호기수압시험일 (2007.5.23)<br>을제4호증2: 7호기최초점화일 (2007.11.30)<br>을제4호증3: 8호기수압시험일 (2007.11.14) |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 300 | 냉각수 심층배수로 | 1,592.00 | 0.00 | | 상동. 본 시설은 급배수 시설임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301 | CWP 취수관로 (CWP~보일러건물) | 2,295.52 | 0.00 | | 7,8호기는 2008년 취득하였음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 | 302 | FIRE WATERLINE:소화관로 (UNDERGROUND) | 1,155.05 | 0.00 | | 상동 | | 상동 | 상동 | 상동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 | | 원고, 주장의 처분 원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03 | 옥외소화관 | 2,932.88 | | 불특정 |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이 안됨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60호증 1내지14<br>을제61호증 1내지 11<br>1~2호기건설지 599p,복합건설지 392p<br>을제83호증 39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 2,932.88 |
| | 304 | 공업용수도수관 | 150.9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224p<br>매설(주교면 송학리에서 발전소 연장구간)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05 | 공업용수유공관 | 143.05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1283p<br>매설(주산면 화평리 웅천천에서 집수정구간) | 상동 | 0.00 |
| | 306 | 재순환수관 | 2,847.2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0호증 1내지14<br>1~2호기건설지 311p<br>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5p<br>을제83호증 40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07 | 전처리배관 (강관,PEM 수도관) | 1,089.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br>복합건설지 783p<br>을제83호증 41 | 상동 | 0.00 |
| | 308 | 애쉬라인 | 4,320.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5-6호기종합용역보고서1-7p<br>을제83호증 42 | 송수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함. | 0.00 |
| | 309 | 폐수배관 | 134.5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폐수재이용설비공사설계서<br>*지하매설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10 | 회이송관련관 | 2,600.27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3p(3~6호기)<br>을제83호증 43 | 송수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함(회를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임) | 0.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11 | 섬프펌프관련관 | 1.2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1~6호기남부회처리장설비용역 보고서2-16p<br>을제83호증 44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12 | 송수관<br>(취수펌프장과용수저장사이) | 152.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2호증 1내지64<br>31~4호기설계계산서 11-14p<br>*지하매설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00 |
| | 313 | 광역분기구간(공업용수) | 1,588.00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 IV 16-4p<br>*매설(주교면 주교리 가압장~송학고개) | 상동 | 0 |
| | 314 | CWP 옆 송수관 | 865.34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피고준비서면 2012.5.10참조<br>2014.04.17자 피고 준비서면 11면 |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315 | 소화관로 | 2,850.69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34호증1~16 | 상동 | 0 |
| | 316 | 송수관(변압기지역) | 54.68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 건설지 1172P<br>*매설(주교면 주교리 가압장~송학고개) |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 317 | 송수관(Fire Pump →Boiler Bldg) | 114.46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3호증 1내지19<br>7,8호기 설계계산서1-5-19<br>*매설(주교면 주교리 가압장~송학고개) | 상동 | 0 |
| | 318 | 경유배관 | 792.00 | 0.00 | 비과세대상 |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 | 원고는 해당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송유관으로 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송유관에 호스장치를 시설한 후 드럼통을 통해 기름을 뽑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사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경유배관에는 기름보관이 가능토록 배관을 용접한 것으로 배관을 끊어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님. | 을제32호증2 |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 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취득 원인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송유관 및 도관 | 319 | 1부두경유배관 | 4.95 | 0.00 | 비과세대상 | 부분철거로 인하여 사용안함 | | 지방세법에서 정한 '직접사용'의 의미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타법인 등에게 임차한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로 시설된 시설물이 부분적으로 사용된다,안된다를 가리는 것이 아님. | 을제32호증3B |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함. | 0 |
| | 320 | 도관(회이송관) | 3,486.88 | 0.00 | 기과세 | 회이송관받침대로 과세한 면적에 포함됨 | | 회이송받침대는 트러스로 명칭되며 송유관 등은 각각 별개로 과세되어야 함.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이 2007.1.1일이므로 2006년까지는 포함되어야 함. | 을제32호증53내지57<br>을제54호증1내지2: 트러스트설명서<br>참고자료16: 지방세해설자료집 | 송수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함(회를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임) | 0.00 |
| | | **다툼없는 송유관 및 도관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 321 | 기름분리조관련송유관 | 9.00 | 9.00 | | 다툼없음 | | | | | 9.00 |
| | 322 | 경유저장탱크송유관 | 3.50 | 3.50 | | 다툼없음 | | | | | 3.50 |
| | 323 | 오일탱크관련 송유관 | 1.50 | 1.50 | | 다툼없음 | | | | | 1.50 |
| | 324 | 연료공급실송유관 | 41.20 | 41.20 | | 다툼없음 | | | | | 41.20 |
| | 325 | 오일탱크관련송유관 | 1.50 | 1.50 | | 다툼없음 | | | | | 1.50 |
| | 326 | LO SERVICE PUMP TO BOILER | 24.36 | 24.36 | | 다툼없음 | | | | | 24.36 |
| | 327 | LO SERVICE PUMP TO BOILER | 3.57 | 3.57 | | 다툼없음 | | | | | 3.57 |
| | 328 | LO SERVICE PUMP TO BOILER | 0.59 | 0.59 | | 다툼없음 | | | | | 0.59 |
| | 329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2.03 | 2.03 | | 다툼없음 | | | | | 2.03 |
| | 330 |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 2.00 | 2.00 | | 다툼없음 | | | | | 2.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31 | LO SERVICE TANK TO SERVICE PUMP | 38.58 | 38.58 | | 다툼없음 | | | | | 38.58 |
| | 332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1.60 | 1.60 | | 다툼없음 | | | | | 1.60 |
| | 333 | LO SERVICE PUMP TO SERVICE TANK | 138.56 | 138.56 | | 다툼없음 | | | | | 138.56 |
| | 334 | LO SERVICE PUMP TO BOILER | 59.78 | 59.78 | | 다툼없음 | | | | | 59.78 |
| | 335 | LO SERVICE PUMP TO BOILER | 45.57 | 45.57 | | 다툼없음 | | | | | 45.57 |
| | 336 | 도관시설 | 15,147.19 | | 불특정 | 피고측 입증자료로는 어느 시설물인지 특정이 안됨 | | 피고가 그동안 준비서면을 통해서 수차례 입증 완료 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자료를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특정이 않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음.(右기 을호증으로 입증 완료) | 을제32호증 1, 3~5, 19~49, 58~74, 76~84 *법원 석명명령 준비서면(2015.11.17)에 따른 당초면적 15,669.48에서 15,147.19로 면적정정 | 피고 제출 증거로 특정됨. 다만 2부두air라인(을제32호증의5 'c') 11.5㎡는 송유관, 송수관에 해당하지 않고, 7,8호기 도관1,242㎡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13,893.69 |
| | 337 | 중유이송배관 | 77.83 | | 불특정 | 상동 | | 상동 | 을제61호증 1내지11 복합건설지 806p *2013년 폐기시설 | 시설물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함. | 0 |
| | 338 | 7,8호기 건물 및 시설물 | 48,986.40 | 0.00 | 비과세대상 | 7,8호기 건물 및 시설물은 2008년도 취득 시설임. | | 조세심판결정(조심2009지436)에서 발전소용 건축물의 경우 시운전을 개시하면 당해년도 사업장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사업장면적에 포함하도록 심판결정. 따라서, 7,8호기 최초점화일이 2007.11.14일이므로 2007년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최초점화일 이전인 2006년도에 임시사용 등을 받은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2006년에도 포함되어야 함. | 을제4호증1: 7호기수압시험일 (2007.5.23) 을ㄹ제4호증2: 7호기최초점화일 (2007.11.30) 을제4호증3: 8호기수압시험일 (2007.11.14) |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 339 | 콘크리트대지 | 105.91 | 0.00 | 비과세대상 | 특정이 필요함. 콘크리트 대지는 비과세대상 | | 지하기계실의 지붕으로 건축물로 확인되어 당초'수조'에서 건축물로 정정함. | 을제56호증1내지3: 건축물 입증 및 지하1,2층 사진 을제33호증 46 | 피고 제출 증거로 건축물로 특정됨. | 105.91 |
| | 다툼없는 건물 면적 특정내역 | | | | | | | | | |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40 | #1 보일러실 | 2,904.49 | 2,904.49 | | 다툼없음 | | | | | 2,904.49 |
| | 341 | #1 보조보일러제어실 | 212.15 | 212.15 | | 다툼없음 | | | | | 212.15 |
| | 342 | #1 비회제어실 | 47.00 | 47.00 | | 다툼없음 | | | | | 47.00 |
| | 343 | #1 사일로 전원실 | 52.00 | 52.00 | | 다툼없음 | | | | | 52.00 |
| | 344 | #1 외부화장실-2호기 뒤 | 7.28 | 7.28 | | 다툼없음 | | | | | 7.28 |
| | 345 | #1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 484.78 | 484.78 | | 다툼없음 | | | | | 484.78 |
| | 346 | #1 전기집진기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347 | #1 터빈및주제어실 | 7,231.50 | 7,231.50 | | 다툼없음 | | | | | 7,231.50 |
| | 348 | #1,2 물처리실 | 1,260.80 | 1,260.80 | | 다툼없음 | | | | | 1,260.80 |
| | 349 | #1,2 샤워장 | 395.18 | 395.18 | | 다툼없음 | | | | | 395.18 |
| | 350 | #1,2 유지창고 | 350.00 | 350.00 | | 다툼없음 | | | | | 350.00 |
| | 351 | #2 보일러실 | 2,904.49 | 2,904.49 | | 다툼없음 | | | | | 2,904.49 |
| | 352 | #2 비회제어실 | 47.00 | 47.00 | | 다툼없음 | | | | | 47.00 |
| | 353 | #2 전기집진기스위치 기어조정실 | 484.78 | 484.78 | | 다툼없음 | | | | | 484.78 |
| | 354 | #2 전기집진기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355 | #2 터빈및주제어실 | 7,231.50 | 7,231.50 | | 다툼없음 | | | | | 7,231.5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56 | #2 보조보일러전원실 | 102.48 | 102.48 | | 다툼없음 | | | | | 102.48 |
| | 357 | #3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358 | #3 서비스가스창고-1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359 | #3 전기집진기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360 | #3 집진기 NO-1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361 | #3 집진기 NO-2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362 | #3,4 질소가스창고 | 74.00 | 74.00 | | 다툼없음 | | | | | 74.00 |
| | 363 | #3,4 터빈및주제어건물-1 | 26,945.48 | 26,945.48 | | 다툼없음 | | | | | 26,945.48 |
| | 364 | #3,4 연료조질펌프실 | 0.00 | 0.00 | | 다툼없음 | | | | | 0.00 |
| | 365 | #3~6 물처리건물 | 2,865.87 | 2,865.87 | | 다툼없음 | | | | | 2,865.87 |
| | 366 | #4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367 | #4 서비스가스창고-2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368 | #4 전기집진기실 | 1,550.50 | 1,550.50 | | 다툼없음 | | | | | 1,550.50 |
| | 369 | #4 집진기 NO-3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370 | #4 집진기 NO-4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371 | #5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72 | #5 서비스가스창고-3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373 | #5 집진기 NO-5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374 | #5 집진기 NO-6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375 | #5,6 터빈및주제어건물-2 | 26,096.71 | 26,096.71 | | 다툼없음 | | | | | 26,096.71 |
| | 376 | #6 보일러건물 | 6,986.20 | 6,986.20 | | 다툼없음 | | | | | 6,986.20 |
| | 377 | #6 서비스가스창고-4 | 28.00 | 28.00 | | 다툼없음 | | | | | 28.00 |
| | 378 | #6 집진기 NO-7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379 | #6 집진기 NO-8 | 1,344.90 | 1,344.90 | | 다툼없음 | | | | | 1,344.90 |
| | 380 | (산업폐기물)저장창고 | 141.12 | 141.12 | | 다툼없음 | | | | | 141.12 |
| | 381 | (종묘)배양장창고 | 96.00 | 96.00 | | 다툼없음 | | | | | 96.00 |
| | 382 | 가스창고-#2호기옆 | 24.00 | 24.00 | | 다툼없음 | | | | | 24.00 |
| | 383 | 가스창고-2화학부옆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384 | 가스창고-2화학부옆 | 7.92 | 7.92 | | 다툼없음 | | | | | 7.92 |
| | 385 | 가스창고-고압 | 150.00 | 150.00 | | 다툼없음 | | | | | 150.00 |
| | 386 | 간이초소 NO-1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387 | 간이초소 NO-2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388 | 간이초소 NO-3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389 | 간이초소 NO-4 | 5.76 | 5.76 | | 다툼없음 | | | | | 5.76 |
| | 390 | 경비실(구정문수위실) | 0.00 | 0.00 | | 다툼없음 | | | | | 0.00 |
| | 391 | 경비실(신축) | 351.25 | 351.25 | | 다툼없음 | | | | | 351.25 |
| | 392 | (구)종합사무실 | 4,500.59 | 4,500.59 | | 다툼없음 | | | | | 4,500.59 |
| | 393 | 기상관측소 | 7.29 | 7.29 | | 다툼없음 | | | | | 7.29 |
| | 394 | 누유방제자재보관창고 | 72.00 | 72.00 | | 다툼없음 | | | | | 72.00 |
| | 395 | 망루(신축) | 9.91 | 9.91 | | 다툼없음 | | | | | 9.91 |
| | 396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397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398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399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00 | 망루1형 | 12.79 | 12.79 | | 다툼없음 | | | | | 12.79 |
| | 401 | 망루1형 | 12.35 | 12.35 | | 다툼없음 | | | | | 12.35 |
| | 402 | 모의제어반 | 1,569.86 | 1,569.86 | | 다툼없음 | | | | | 1,569.86 |
| | 403 | 무기고 | 66.96 | 66.96 | | 다툼없음 | | | | | 66.96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04 | 배양장 | 562.50 | 562.50 | | 다툼없음 | | | | | 562.50 |
| | 405 | 벙커 | 7.20 | 7.20 | | 다툼없음 | | | | | 7.20 |
| | 406 | 보조보일러약품주입실 | 18.56 | 18.56 | | 다툼없음 | | | | | 18.56 |
| | 407 | 복합#1 가스터빈건물-1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408 | 복합#1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09 | 복합#1 스팀터빈-1 | 9,387.02 | 9,387.02 | | 다툼없음 | | | | | 9,387.02 |
| | 410 | 복합#1,2 질소가스창고-1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 | 411 | 복합#2 가스터빈건물_1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412 | 복합#2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13 | 복합#2 스팀터빈-1 | 9,387.03 | 9,387.03 | | 다툼없음 | | | | | 9,387.03 |
| | 414 | 복합#3 가스터빈건물-2 | 1,190.35 | 1,190.35 | | 다툼없음 | | | | | 1,190.35 |
| | 415 | 복합#3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16 | 복합#3 스팀터빈-2 | 9,387.02 | 9,387.02 | | 다툼없음 | | | | | 9,387.02 |
| | 417 | 복합#3,4 질소가스창고-2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 | 418 | 복합#4 가스터빈건물-2 | 1,190.35 | 1,190.35 | | 다툼없음 | | | | | 1,190.35 |
| | 419 | 복합#4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할 수 없습니다. 열람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20 | 복합#4 스팀터빈-2 | 9,387.03 | 9,387.03 | | 다툼없음 | | | | | 9,387.03 |
| | 421 | 복합#5 거스터빈건물-3 | 1,093.45 | 1,093.45 | | 다툼없음 | | | | | 1,093.45 |
| | 422 | 복합#5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23 | 복합#5,6 질소가스창고-3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 | 424 | 복합#6 가스터빈건물-3 | 1,093.45 | 1,093.45 | | 다툼없음 | | | | | 1,093.45 |
| | 425 | 복합#6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26 | 복합#7 가스터빈건물-4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427 | 복합#7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28 | 복합#7,8 질소가스창고-4 | 25.97 | 25.97 | | 다툼없음 | | | | | 25.97 |
| | 429 | 복합#8 가스터빈건물-4 | 1,212.20 | 1,212.20 | | 다툼없음 | | | | | 1,212.20 |
| | 430 | 복합#8 보일러건물 | 998.51 | 998.51 | | 다툼없음 | | | | | 998.51 |
| | 431 | 복합 경비실 | 57.86 | 57.86 | | 다툼없음 | | | | | 57.86 |
| | 432 | 복합 공기압축기실 및 비상발전기실 | 245.58 | 245.58 | | 다툼없음 | | | | | 245.58 |
| | 433 | 복합 급수펌프실 | 76.78 | 76.78 | | 다툼없음 | | | | | 76.78 |
| | 434 | 복합 망루-1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435 | 복합 망루-2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건축물 | 436 | 복합 말루-3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437 | 복합 망루-4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438 | 복합 망루-5 | 12.99 | 12.99 | | 다툼없음 | | | | | 12.99 |
| | 439 | 복합 순수공급펌프실 | 92.81 | 92.81 | | 다툼없음 | | | | | 92.81 |
| | 440 | 복합 연료유공급펌프실 | 204.52 | 204.52 | | 다툼없음 | | | | | 204.52 |
| | 441 | 복합 염소주입실 | 252.58 | 252.58 | | 다툼없음 | | | | | 252.58 |
| | 442 | 복합 유지창고 | 365.06 | 365.06 | | 다툼없음 | | | | | 365.06 |
| | 443 | 복합 종합창고 | 3,096.34 | 3,096.34 | | 다툼없음 | | | | | 3,096.34 |
| | 444 | 복합 주제어건물-1 | 4,427.79 | 4,427.79 | | 다툼없음 | | | | | 4,427.79 |
| | 445 | 복합 주제어건물-2 | 4,427.79 | 4,427.79 | | 다툼없음 | | | | | 4,427.79 |
| | 446 | 복합 해수취수펌프실 | 173.05 | 173.05 | | 다툼없음 | | | | | 173.05 |
| | 447 | 복합발전용 가스분석기실 | 17.50 | 17.50 | | 다툼없음 | | | | | 17.50 |
| | 448 | 부두접안정보실 | 15.12 | 15.12 | | 다툼없음 | | | | | 15.12 |
| | 449 | 분석실가스저장고 | 17.64 | 17.64 | | 다툼없음 | | | | | 17.64 |
| | 450 | 산소저장창고 | 35.00 | 35.00 | | 다툼없음 | | | | | 35.00 |
| | 451 | 상탄살포제실 | 54.00 | 54.00 | | 다툼없음 | | | | | 54.0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52 | 석탄분쇄 동력제어실 | 55.50 | 55.50 | | 다툼없음 | | | | | 55.50 |
| | 453 | 석탄분쇄 소화가스실 | 11.00 | 11.00 | | 다툼없음 | | | | | 11.00 |
| | 454 | 석탄분쇄실 1 | 802.75 | 802.75 | | 다툼없음 | | | | | 802.75 |
| | 455 | 석탄분쇄실 2 | 814.00 | 814.00 | | 다툼없음 | | | | | 814.00 |
| | 456 | 석탄하역건물 | 198.09 | 198.09 | | 다툼없음 | | | | | 198.09 |
| | 457 | 소각로 | 259.18 | 259.18 | | 다툼없음 | | | | | 259.18 |
| | 458 | 소화수및원수펌프실 | 380.25 | 380.25 | | 다툼없음 | | | | | 380.25 |
| | 459 | 송유및소화수펌프실 | 383.00 | 383.00 | | 다툼없음 | | | | | 383.00 |
| | 460 | 순환수보조펌프실 | 299.75 | 299.75 | | 다툼없음 | | | | | 299.75 |
| | 461 | 연료유공급펌프실 | 715.00 | 715.00 | | 다툼없음 | | | | | 715.00 |
| | 462 | 연료유펌프실-#1,2호기 | 724.72 | 724.72 | | 다툼없음 | | | | | 724.72 |
| | 463 | 염소주입실 | 622.16 | 622.16 | | 다툼없음 | | | | | 622.16 |
| | 464 | 온배수양식동 | 504.00 | 504.00 | | 다툼없음 | | | | | 504.00 |
| | 465 | 온배수양식장펌프실 | 21.60 | 21.60 | | 다툼없음 | | | | | 21.60 |
| | 466 | 운탄설비 동력제어실 | 45.00 | 45.00 | | 다툼없음 | | | | | 45.00 |
| | 467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 5.30 | 5.30 | | 다툼없음 | | | | | 5.3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68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1 | 7.93 | 7.93 | | 다툼없음 | | | | | 7.93 |
| | 469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2 | 7.15 | 7.15 | | 다툼없음 | | | | | 7.15 |
| | 470 | 운탄설비 소화가스실 3 | 6.37 | 6.37 | | 다툼없음 | | | | | 6.37 |
| | 471 | 웅천 가압장 | 162.00 | 162.00 | | 다툼없음 | | | | | 162.00 |
| | 472 | 웅천 사택 | 43.65 | 43.65 | | 다툼없음 | | | | | 43.65 |
| | 473 | 유류가압펌프실 | 336.00 | 336.00 | | 다툼없음 | | | | | 336.00 |
| | 474 | 유연탄작업관리실 | 1,227.08 | 1,227.08 | | 다툼없음 | | | | | 1,227.08 |
| | 475 | 유연탄하역조정실 | 320.00 | 320.00 | | 다툼없음 | | | | | 320.00 |
| | 476 | 입하탄시료채취실 | 287.10 | 287.10 | | 다툼없음 | | | | | 287.10 |
| | 477 | 정문경비실 | 64.04 | 64.04 | | 다툼없음 | | | | | 64.04 |
| | 478 | 정비고 | 611.00 | 611.00 | | 다툼없음 | | | | | 611.00 |
| | 479 | 조탄실 | 147.11 | 147.11 | | 다툼없음 | | | | | 147.11 |
| | 480 | 조탄실 | 253.52 | 253.52 | | 다툼없음 | | | | | 253.52 |
| | 481 | 조탄실 1 | 140.00 | 140.00 | | 다툼없음 | | | | | 140.00 |
| | 482 | 조탄실 2 | 301.75 | 301.75 | | 다툼없음 | | | | | 301.75 |
| | 483 | 조탄실 3 | 414.40 | 414.40 | | 다툼없음 | | | | | 414.4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할 수 없습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484 | 조탄실 4 | 240.00 | 240.00 | | 다툼없음 | | | | | 240.00 |
| | 485 | 조탄실 5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486 | 조탄실 6 | 160.00 | 160.00 | | 다툼없음 | | | | | 160.00 |
| | 487 | 조탄실 NO-1 | 257.57 | 257.57 | | 다툼없음 | | | | | 257.57 |
| | 488 | 조탄실 NO-10 | 116.80 | 116.80 | | 다툼없음 | | | | | 116.80 |
| | 489 | 조탄실 NO-2 | 256.26 | 256.26 | | 다툼없음 | | | | | 256.26 |
| | 490 | 조탄실 NO-3 | 269.68 | 269.68 | | 다툼없음 | | | | | 269.68 |
| | 491 | 조탄실 NO-4 | 85.08 | 85.08 | | 다툼없음 | | | | | 85.08 |
| | 492 | 조탄실 NO-5 | 85.85 | 85.85 | | 다툼없음 | | | | | 85.85 |
| | 493 | 조탄실 NO-6 | 127.07 | 127.07 | | 다툼없음 | | | | | 127.07 |
| | 494 | 조탄실 NO-7 | 1,143.42 | 1,143.42 | | 다툼없음 | | | | | 1,143.42 |
| | 495 | 조탄실 NO-8 | 1,598.88 | 1,598.88 | | 다툼없음 | | | | | 1,598.88 |
| | 496 | 조탄실 NO-9 | 398.23 | 398.23 | | 다툼없음 | | | | | 398.23 |
| | 497 | 식당/강당 | 1,537.54 | 1,537.54 | | 다툼없음 | | | | | 1,537.54 |
| | 498 | (종합)사무실 | 6,900.23 | 6,900.23 | | 다툼없음 | | | | | 6,900.23 |
| | 499 | 종합창고 | 7,144.22 | 7,144.22 | | 다툼없음 | | | | | 7,144.22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00 | 주산 사택 | 55.72 | 55.72 | | 다툼없음 | | | | | 55.72 |
| | 501 | 주산 취수장 | 161.00 | 161.00 | | 다툼없음 | | | | | 161.00 |
| | 502 | 질소가스저장실 | 34.76 | 34.76 | | 다툼없음 | | | | | 34.76 |
| | 503 | 초소1형 | 12.50 | 12.50 | | 다툼없음 | | | | | 12.50 |
| | 504 | 초소1형 | 12.50 | 12.50 | | 다툼없음 | | | | | 12.50 |
| | 505 | 초소2형 | 18.83 | 18.83 | | 다툼없음 | | | | | 18.83 |
| | 506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507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508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509 | 초소2형 | 4.00 | 4.00 | | 다툼없음 | | | | | 4.00 |
| | 510 | 콘테이너하우스 | 36.00 | 36.00 | | 다툼없음 | | | | | 36.00 |
| | 511 | 탈황설비 #3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 | 512 | 탈황설비 #4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 | 513 | 탈황설비 #5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 | 514 | 탈황설비 #6 흡수탑엘리베이터 | 7.84 | 7.84 | | 다툼없음 | | | | | 7.84 |
| | 515 | 탈황설비 석고반출장 | 155.15 | 155.15 | | 다툼없음 | | | | | 155.15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기재 |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16 | 탈황설비 석고저장건물 | 2,072.90 | 2,072.90 | | 다툼없음 | | | | | 2,072.90 |
| | 517 | 탈황설비 석고탈수동 | 1,440.00 | 1,440.00 | | 다툼없음 | | | | | 1,440.00 |
| | 518 | 탈황설비 석회석슬러리 제조동 | 1,152.00 | 1,152.00 | | 다툼없음 | | | | | 1,152.00 |
| | 519 | 탈황설비 수처리건물 | 512.00 | 512.00 | | 다툼없음 | | | | | 512.00 |
| | 520 | 탈황설비 엘브이 (LV)-02 | 145.54 | 145.54 | | 다툼없음 | | | | | 145.54 |
| | 521 | 탈황설비 주제어동 흡수탑 재순환펌프동-1 | 2,538.00 | 2,538.00 | | 다툼없음 | | | | | 2,538.00 |
| | 522 | 탈황설비 주제어동 흡수탑 재순환펌프동-2 | 2,234.75 | 2,234.75 | | 다툼없음 | | | | | 2,234.75 |
| | 523 | 탈황설비 티티(TT)-01 | 107.39 | 107.39 | | 다툼없음 | | | | | 107.39 |
| | 524 | 탈황설비 티티(TT)-02 | 313.57 | 313.57 | | 다툼없음 | | | | | 313.57 |
| | 525 | 탈황설비 티티(TT)-03 | 156.81 | 156.81 | | 다툼없음 | | | | | 156.81 |
| | 526 | 탈황설비 티티(TT)-04 | 417.29 | 417.29 | | 다툼없음 | | | | | 417.29 |
| | 527 | 탈황설비 티티티(TTT)-01 | 595.92 | 595.92 | | 다툼없음 | | | | | 595.92 |
| | 528 | 탈황설비 폐수처리동 | 1,575.23 | 1,575.23 | | 다툼없음 | | | | | 1,575.23 |
| | 529 | 트랜스퍼타워 18 | 217.18 | 217.18 | | 다툼없음 | | | | | 217.18 |
| | 530 | 트랜스퍼타워 19 | 224.71 | 224.71 | | 다툼없음 | | | | | 224.71 |
| | 531 | 트랜스퍼타워 20 | 1,323.18 | 1,323.18 | | 다툼없음 | | | | | 1,323.18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32 | 트랜스퍼타워 21 | 226.19 | 226.19 | | 다툼없음 | | | | | 226.19 |
| | 533 | 폐기물저장창고 | 230.67 | 230.67 | | 다툼없음 | | | | | 230.67 |
| | 534 | 폐수처리건물 | 546.83 | 546.83 | | 다툼없음 | | | | | 546.83 |
| | 535 | 폐수처리관리실 | 206.36 | 206.36 | | 다툼없음 | | | | | 206.36 |
| | 536 | 해수소화펌프실 | 25.39 | 25.39 | | 다툼없음 | | | | | 25.39 |
| | 537 | 해수인양펌프조작실 | 320.00 | 320.00 | | 다툼없음 | | | | | 320.00 |
| | 538 | 홍보관 | 340.20 | 340.20 | | 다툼없음 | | | | | 340.20 |
| | 539 | 홍보관 화장실 | 57.40 | 57.40 | | 다툼없음 | | | | | 57.40 |
| | 540 | 회처리순환수펌프실 | 95.20 | 95.20 | | 다툼없음 | | | | | 95.20 |
| | 541 | 회처리순환수펌프실 | 408.00 | 408.00 | | 다툼없음 | | | | | 408.00 |
| | 542 | 화처리전원실 | 67.51 | 67.51 | | 다툼없음 | | | | | 67.51 |
| | 543 | 회처리펌프제어실 | 23.80 | 23.80 | | 다툼없음 | | | | | 23.80 |
| | 544 | 후문경비실 | 54.98 | 54.98 | | 다툼없음 | | | | | 54.98 |
| | 545 | 석탄취급설비 제어실 증축 | 0.00 | 0.00 | | 다툼없음 | | | | | 0.00 |
| | 546 | 오수처리펌프실 | 36.21 | 36.21 | | 다툼없음 | | | | | 36.21 |
| | 547 | 저탄장 살수펌프 건물 | 193.09 | 193.09 | | 다툼없음 | | | | | 193.09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 및 입증자료 기재 | |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48 | 석탄취급 전기실 및 정비원 후생건물 | 664.47 | 664.47 | | 다툼없음 | | | | | 664.47 |
| | 549 | 중수처리 건물 | 666.35 | 666.35 | | 다툼없음 | | | | | 666.35 |
| | 550 | 층질소 제거건물 | 456.73 | 456.73 | | 다툼없음 | | | | | 456.73 |
| | 551 | 방카 | 7.20 | 7.20 | | 다툼없음 | | | | | 7.20 |
| | 552 | 분진측정실 | 32.00 | 32.00 | | 다툼없음 | | | | | 32.00 |
| | 553 | 망루 | 7.92 | 7.92 | | 다툼없음 | | | | | 7.92 |
| | 554 | 경비실 | 10.00 | 10.00 | | 다툼없음 | | | | | 10.00 |
| | 555 | 탈질설비운전원사무실 | 54.00 | 54.00 | | 다툼없음 | | | | | 54.00 |
| | 556 | 자재보관창고 | 1,680.00 | 1,680.00 | | 다툼없음 | | | | | 1,680.00 |
| | 557 | 수처리건물 | 2,603.99 | 2,603.99 | | 다툼없음 | | | | | 2,603.99 |
| | 558 | 암모니아저장소 | 825.75 | 825.75 | | 다툼없음 | | | | | 825.75 |
| | 559 | 탈황 #3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 | 560 | 탈황 #3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561 | 탈황 #4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 | 562 | 탈황 #4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563 | 탈황 #5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력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 | 564 | 탈황 #5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565 | 탈황 #6 흡수탑 | 282.60 | 282.60 | | 다툼없음 | | | | | 282.60 |
| | 566 | 탈황 #6 DUCT | 840.00 | 840.00 | | 다툼없음 | | | | | 840.00 |
| | 567 | 주산면 화평리 정수장 | 132.19 | 132.19 | | 다툼없음 | | | | | 132.19 |
| 송전철탑 | 568 | 송전철탑 | 11,770.00 | 0.00 | 비과세대상 | 송전철탑은 7,8호기 건설하면서 2008년 취득한 시설임. | 갑가제13호증 | 송전철탑은 임시사용승인일이나 시험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심사결정된 바 있는 한편, 조세심판결정에서도 '발전소용 건축물의 경우 시운전을 개시하면 당해년도 사업장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심판결정함. 따라서, 해당 송전철탑 사용시기를 구분해 보면 2007년도 사업장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br>*임시사용승인일: 2007.12.29<br>*가압시험일: 2007.12.28 | 참고자료2: 대법원2009도5350판례<br>참고자료9: 행정자치부심사결정서(2007-160호)<br>참고자료13: 조세심판결정서(2009지436)<br>을제28호증: 가압시험보고서<br>을제63호증제5내지10: 송전철탑 공사개요 및 면적산출 내역<br>*2015.7.18일자 법원 석명명령제출상 558번을 568번으로 정정 | 7,8호기는 2008년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제외함 | 0 |
| 합계 | | | **660,228.07** | **378,528.12** | | | | | | | **462,205.42** |

본 별지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작일자 : 2017-08-23

| 구분 | 순번 | 시설물명 | 피고의 실제 과세기준면적(㎡) | 원고, 보조참가인 주장면적(㎡) | 원고 주장의 처분 위법 사유 기재 | | | 원고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기재 | | 법원의 판단 | |
|---|---|---|---|---|---|---|---|---|---|---|---|
| | | | | | 주장 이유 및 입증자료 | | | | | | |
| | | | | | 원고, 보조참가인 | | | 피고 | | | |
| | | | | | 쟁점 | 주장 | 입증자료 | 주장 | 입증자료 | 내용 | 인정 면적(㎡) |

*참고(순번275번)

| 컨베이어설비명 | 피고 면적 | 오류 내용 | 인정 면적 | 차이 |
|---|---|---|---|---|
| BC43A/B의 A | 1,142.10 | 수평투영 오류 | 1,057.50 | 84.6 |
| BC4A/B | 827.51 | 상동 | 788.5 | 39.01 |
| BC22 | 397.59 | 상동 | 365.6 | 31.99 |
| BC23 | 391.5 | 상동 | 360 | 31.5 |
| BC12A/B의 A | 2,071.30 | 상동 | 1,770.23 | 301.07 |
| BC61 | 531.81 | 상동 | 467.4 | 64.41 |
| BC62 | 330.72 | 상동 | 300.3 | 30.42 |
| BC63 | 396.4 | 상동 | 328 | 68.4 |
| BC64 컨베이어 | 402.3 | 상동 | 346.5 | 55.8 |
| BC66A/B | 598.98 | 상동 | 475.7 | 123.28 |
| BC53A/B의 C | 988.22 | 상동 | 904.62 | 83.6 |
| BC40A/B의 A | 2,302.30 | 상동 | 1,995 | 307.3 |
| BC33A/B | 973.44 | 합계 오류 | 802.42 | 171.02 |
| BC32A/B | 775.96 | 합계 오류 | 664.48 | 111.48 |
| | | | 합계 | 1503.88 |